

수원시 무장애도시 추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The Establishment of Mid- and Long-Term Basic Plan to Promote a Barrier-Free City

한연주

연구진

연구책임자 한연주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송화성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영안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정수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김경아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김용희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 2019 수원시정연구원

발행인 최병대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우편번호) 16429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http://www.suwon.re.kr>

인쇄 2019년 9월 25일

발행 2019년 9월 25일

ISBN 979-11-89160-84-5 (93330)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한연주. 2019. 「수원시 무장애도시 추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비매품

국문요약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은 지역의 통합적 돌봄 및 자립을 위한 지역기반형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중심적 도시에 대한 지향점의 대안으로 무장애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원시는 이미 선도적으로 수원시민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노인친화도시 등을 조성하면서 지역사회 여건을 변화시키는데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3개 친화도시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정책 등이 제한적이어서 장애친화도시(즉, 무장애도시)를 조성하자는 지역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을 포함한 시민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고 불편함을 겪지 않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무장애도시 추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무장애도시의 개념을 ‘모든 시민이 불편함 없이 평등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도시’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으며, 도시환경과 관련된 기본적 영역으로 ‘시설물 접근·편의시설 장애’, ‘교통·이동 장애’, ‘의사소통·정보장애’, ‘차별인식’과 같이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4개의 영역에 맞춰 사례, 법률 및 조례, 수원시 여건 분석과 더불어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수원시에서 무장애도시 환경조성을 위해 시행해야 할 기본계획의 비전으로 “모든 시민이 불편함 없이 평등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도시, 수원”을 설정하였으며, 추진방향은 ‘참여 및 소통’, ‘공감’, ‘제도의 내실화’와 같이 3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불편함 없이 권리를 인정받으며 이용할 수 있는 환경기반의 확대(시설물 접근·편의시설 장애)’, ‘원하는 곳을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는 환경기반의 확대(교통·이동장애)’, ‘공감하고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기반의 확대(의사소통·정보 장애)’, ‘평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권리의식 제고(차별인식)’, ‘무장애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및 체계 구축(제도개선)’이라는 정책목표와 32개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무장애, 시설물 접근·편의시설 장애, 교통·이동 장애, 차별인식 장애, 의사소통 장애

차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제2장 무장애도시의 개념 및 영역	5
제1절 무장애도시의 개념 및 대상, 영역	7
1. 무장애도시의 개념	7
2. 무장애도시의 대상	8
3. 무장애도시의 영역	8
제2절 무장애 도시 유사개념	12
1. 아동친화도시	12
2. 여성친화도시	13
3. 고령친화도시	14
제3장 무장애도시 관련 법률 및 사례 분석	17
제1절 무장애도시 관련 법률 및 조례	19
1. 무장애도시 관련 법률 및 규칙	19
2. 무장애도시 관련 조례	24
제2절 국내·외 사례	34
1. 해외 사례	34
2. 국내 사례	42
제4장 수원시 무장애도시 관련 실태 및 욕구조사	59
제1절 장애인 대상 설문조사	61
1. 조사개요	61
2. 분석결과	62

제2절 수원시민 대상 설문조사	74
1. 조사개요	74
2. 분석결과	75
제3절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89
1. 조사개요	89
2. 분석결과	91
제5장 무장애도시 조성 관련 수원시 여건분석	97
제1절 수원시 인구 및 장애인 현황	99
1. 수원시 인구	99
2. 수원시 장애인 현황	100
제2절 무장애도시 관련 수원시 여건 분석	104
1. 수원시 무장애 관련 조례 분석	104
2. 수원시 무장애 관련 정책 분석	107
3. 수원시 무장애 관련 영역별 현황 분석	112
제3절 무장애도시 조성 관련 수원시 SWOT 분석	125
1. SWOT 분석	125
2. SWOT 분석 전략	129
제6장 수원시 무장애도시 추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2020~2023)	131
제1절 비전 및 추진방향	133
제2절 추진 체계	134
제3절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	135
1. 시설물 접근·편의시설 장애 해소를 위한 정책	139
2. 교통·이동 장애 해소를 위한 정책	147
3. 의사소통·정보 장애 해소를 위한 정책	162
4. 차별인식 해소를 위한 정책	169
5. 무장애 환경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정책	174
참고문헌	181

표 차례

〈표 2-1〉 아동친화도시에서 아동의 권리	13
〈표 2-2〉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비교	16
〈표 3-1〉 무장애도시 관련 법률	22
〈표 3-2〉 무장애도시 관련 경기도 조례	25
〈표 3-3〉 진주시 무장애도시 실무·인증위원회 및 읍면동위원회 기능	26
〈표 3-4〉 진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27
〈표 3-5〉 광주광역시 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28
〈표 3-6〉 대구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29
〈표 3-7〉 여주시 무장애도시 실무·인증위원회 및 읍면동위원회 기능	30
〈표 3-8〉 여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31
〈표 3-9〉 무장애 도시 조성 관련 지자체 조례 비교(진주시, 광주광역시 북구, 여주시, 대구광역시)	32
〈표 3-10〉 사이타마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35
〈표 3-11〉 무장애도시 조성 분야별 중장기 사업계획	50
〈표 3-12〉 진주시 무장애도시 주요 추진 연혁	51
〈표 3-13〉 노원구 장애인 친화 도시 계획	54
〈표 3-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친화도시 민·관 추진위원회 구성 계획	55
〈표 3-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과 담당업무 및 인력현황(2019.5.1.)	56
〈표 3-16〉 광주광역시 북구 시내버스 무장애정류장 설치사업 추진 내용	57
〈표 4-1〉 장애유형별 표본할당_장애인	61
〈표 4-2〉 설문지 문항 구성_장애인	62
〈표 4-3〉 응답자의 일반특성 및 장애유형_장애인	63
〈표 4-4〉 한달 평균 외출빈도(2018년 기준)_장애인	64
〈표 4-5〉 외출하지 않는 주된 이유_장애인	64
〈표 4-6〉 이동시 어려운 정도_장애인	65
〈표 4-7〉 이동시 겪는 주된 어려움_장애인	65
〈표 4-8〉 이동 관련 수원시 여건 정도_장애인	66
〈표 4-9〉 이동편의를 위한 지원 도입 우선순위_장애인	67
〈표 4-10〉 타인의 도움 없는 의사소통 가능 정도_장애인	67

〈표 4-11〉 의사소통 어려움 직면시 대처방안_장애인	68
〈표 4-12〉 수원시 내 의사소통과 관련된 경험 관련 응답_장애인	69
〈표 4-13〉 수원시 관련 정보 습득 방법_장애인	69
〈표 4-14〉 의사소통 관련 수원시 여건 정도_장애인	70
〈표 4-15〉 의사소통을 위한 지원 도입 우선순위_장애인	70
〈표 4-16〉 장애 인식관련 교육(장애 인식 및 인권교육) 경험_장애인	71
〈표 4-17〉 수원시 기반시설 이용의 불편함 경험_장애인	72
〈표 4-18〉 수원시 내 차별경험 유무_장애인	73
〈표 4-19〉 타 지역과 비교한 수원시 거주 만족도_장애인	73
〈표 4-20〉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_장애인	74
〈표 4-21〉 설문문항 구성_수원시민	75
〈표 4-22〉 일반인 응답자의 일반특성_수원시민	76
〈표 4-23〉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1순위, 2순위)_수원시민	77
〈표 4-24〉 한 달 평균 외출 빈도(2018년 기준)_수원시민	77
〈표 4-25〉 외출하지 않는 주된 이유_수원시민	78
〈표 4-26〉 이동 시 어려운 정도_수원시민	78
〈표 4-27〉 이동 시 겪는 주된 어려움_수원시민	79
〈표 4-28〉 이동 관련 수원시 여건 체감 정도_수원시민	79
〈표 4-29〉 이동편의와 관련하여 수원시에 필요한 지원 도입 우선순위_수원시민	80
〈표 4-30〉 수원시 내 의사소통과 관련된 경험 관련 응답_수원시민	81
〈표 4-31〉 수원시 관련 정보 습득 수단_수원시민	81
〈표 4-32〉 의사소통 관련 수원시 여건 체감 정도_수원시민	82
〈표 4-33〉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수원시에 필요한 지원 도입 우선순위_수원시민	82
〈표 4-34〉 장애인과의 직접 접촉 경험 정도_수원시민	83
〈표 4-35〉 본인의 가족이 장애인과의 교육 시 찬성 여부_수원시민	84
〈표 4-36〉 장애인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예상 순위_수원시민	84
〈표 4-37〉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의 필요성 정도_수원시민	85
〈표 4-38〉 장애 인식 관련 교육 경험 관련 문항_수원시민	86
〈표 4-39〉 타 지역과 비교한 수원시 거주 만족도_수원시민	86
〈표 4-40〉 현재 수원시의 무장애 도시에 대한 체감도_수원시민	87
〈표 4-41〉 수원시 내 차별경험 유무_수원시민	87

〈표 4-42〉 수원시 기반시설 이용 불편함 경험_수원시민	88
〈표 4-43〉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_수원시민과 장애인 비교	89
〈표 4-44〉 표본할당_공무원	90
〈표 4-45〉 설문문항 구성 내용_공무원	90
〈표 4-46〉 응답자의 일반특성_공무원	91
〈표 4-47〉 장애인 관련 근무경험_공무원	92
〈표 4-48〉 장애 인식개선 교육 필요성 인지정도_공무원	92
〈표 4-49〉 장애 인식 관련 교육 유무_공무원	93
〈표 4-50〉 장애 인식 관련 교육 경험 시기_공무원	93
〈표 4-51〉 장애관련 과목 수강 관련 문항_공무원	93
〈표 4-52〉 장애인 관련 자원봉사 경험 유무_공무원	94
〈표 4-53〉 직무 관련 장애인 만남 정도_공무원	94
〈표 4-54〉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_공무원	95
〈표 5-1〉 수원시 구별 인구현황(2014~2018)	99
〈표 5-2〉 전국 및 경기도 31개 지자체 장애인 현황(2014~2018)	101
〈표 5-3〉 수원시 장애인의 장애유형 추이(2014~2018)	102
〈표 5-4〉 수원시 장애인의 장애유형의 장애등급 현황(2018.12)	103
〈표 5-5〉 수원시 장애인의 장애등급 증감률(2014~2018)	103
〈표 5-6〉 무장애 도시 관련 수원시 조례	106
〈표 5-7〉 수원시 무장애 관련 정책	109
〈표 5-8〉 수원시 특별교통 추이(2014~2019)	112
〈표 5-9〉 수원시 특별교통수단 관련 개요	113
〈표 5-10〉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관련 수원시 조례	113
〈표 5-11〉 전국, 경기도, 수원시 저상버스 도입률(2014~2018)	114
〈표 5-12〉 수원시 장애인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 현황(2019.06.01.)	115
〈표 5-13〉 수원시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116
〈표 5-14〉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사항	117
〈표 5-15〉 수원지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건수(2014~2018)	118
〈표 5-16〉 수원지역 장애인보장구 수리 현황(2014~2018)	119
〈표 5-17〉 편의시설 설치율 및 적정 설치율 산정방법 및 내용	120
〈표 5-18〉 경기도, 수원시 편의시설 설치율 및 적정 설치율(2008~2018)	120

〈표 5-19〉 수원 시민의정부 10대 사업	121
〈표 5-20〉 수원시 행정동별 청각/언어 장애인용 화상전화기 보유 현황	122
〈표 5-21〉 장애 인식개선 교육 수행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 정도	124
〈표 5-22〉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수원시 정책 1순위·2순위	124
〈표 5-23〉 수원시 무장애도시 환경조성 관련 SWOT 분석	129
〈표 6-1〉 수원시 무장애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2020~2023)	137
〈표 6-2〉 시설물 접근·편의시설 장애 해소를 위한 정책	139
〈표 6-3〉 교통·이동 장애 해소를 위한 정책	147
〈표 6-4〉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근거 및 내용	160
〈표 6-5〉 의사소통·정보의 장애 해소를 위한 정책	162
〈표 6-6〉 차별인식 장애 해소를 위한 정책	169
〈표 6-7〉 무장애 환경개선을 위한 제도적 정책	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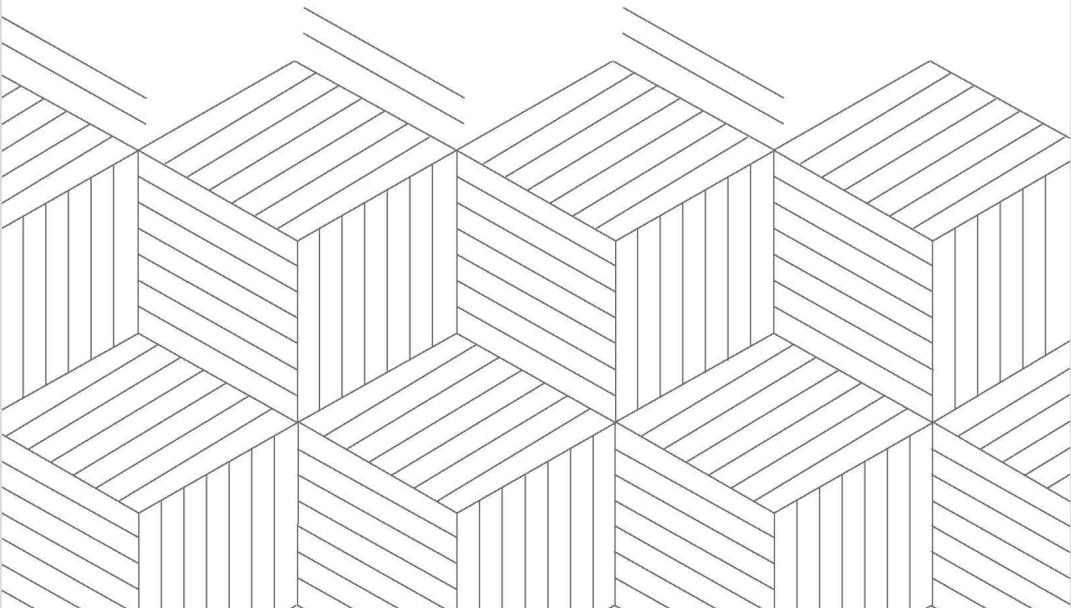
그 림 차 례

〈그림 1-1〉 연구의 수행체계	4
〈그림 2-1〉 무장애도시 관련 영역	10
〈그림 2-2〉 무장애도시 관련 영역별 현황	10
〈그림 2-3〉 본 연구의 무장애도시 영역	12
〈그림 2-4〉 여성친화도시의 비전, 가치, 목표, 추진과제	14
〈그림 2-5〉 고령친화도시 가이드 8대 영역	15
〈그림 3-1〉 사이타마 복지마을 만들기 적합증	35
〈그림 3-2〉 일본 빅아이	36
〈그림 3-3〉 영국 런던, London Plan	41
〈그림 3-4〉 시설물 접근·편의시설 장애_가족 화장실	42
〈그림 3-5〉 교통·이동 장애_무장애 버스 정류소	43
〈그림 3-6〉 교통·이동의 장애_지역별 다인승 장애인 버스	44
〈그림 3-7〉 의사소통의 장애_마포구 AAC ZONE	45
〈그림 3-8〉 의사소통의 장애_은행 화상 수화상담 및 장애유형별 수사 매뉴얼	45
〈그림 3-9〉 차별인식_배리어프리 영화 체험	46
〈그림 3-10〉 차별인식_찾아가는 장애체험 교육	47
〈그림 3-11〉 차별인식_장애인 역할 재난체험교육	47
〈그림 3-12〉 진주시 무장애도시 만들기 비전	48
〈그림 3-13〉 진주시 무장애도시 조성 추진전략	49
〈그림 3-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친화도시 담당부서	56
〈그림 3-15〉 광주광역시 북구 무장애도시 환경만들기 캠페인	57
〈그림 3-16〉 광주광역시 북구 무장애도시 담당부서	58
〈그림 4-1〉 외출하지 않는 주된 이유(1순위, 2순위)_장애인	64
〈그림 4-2〉 이동시 겪는 주된 어려움(1순위, 2순위)_장애인	66
〈그림 4-3〉 이동편의를 위한 지원 도입 우선순위_장애인	67
〈그림 4-4〉 의사소통을 위한 지원 도입 우선순위_장애인	71
〈그림 4-5〉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_장애인	74
〈그림 4-6〉 이동시 겪는 주된 어려움_수원시민	79

〈그림 4-7〉 이동편의와 관련하여 수원시에 필요한 지원 도입 우선순위_수원시민	80
〈그림 4-8〉 수원시 관련 정보 습득 수단_수원시민	81
〈그림 4-9〉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수원시에 필요한 지원 도입 우선순위_수원시민	83
〈그림 4-10〉 장애인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예상 순위_수원시민	85
〈그림 4-11〉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_수원시민과 장애인 비교	89
〈그림 4-12〉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_공무원	95
〈그림 5-1〉 수원시 구별 인구 증감률(2014~2018)	99
〈그림 5-2〉 전국, 경기도, 수원시 장애인 증감률	100
〈그림 5-3〉 경기도 시군 장애인 현황(2018.12)	100
〈그림 5-4〉 수원시 장애인 장애유형별 증감률(2014, 2018)	102
〈그림 5-5〉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유형	112
〈그림 5-6〉 전국, 경기도, 수원시 저상버스 도입률(2015~2018)	114
〈그림 5-7〉 수원시 장애인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현황(2019.09.15.)	116
〈그림 5-8〉 수원지역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건수(2014~2018)	118
〈그림 5-9〉 수원지역 장애인보장구 수리 현황(2014~2018)	119
〈그림 5-10〉 수원시 양지말어린이공원 무장애통합놀이터	122
〈그림 5-11〉 수원지역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사례	123
〈그림 5-12〉 접근가능한 제주관광 이지제주	126
〈그림 5-13〉 무장애로 즐기는 대구관광 홈페이지	127
〈그림 5-14〉 서울 자락길(무장애숲길)	128
〈그림 6-1〉 수원시 무장애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2020~2023)의 비전 및 추진방향	133
〈그림 6-2〉 수원시 무장애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2020~2023)의 협력체계	134
〈그림 6-3〉 수원시 무장애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2020~2023)의 민간 추진체계	134
〈그림 6-4〉 수원시 무장애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2020~2023) 정책개발 회의	135
〈그림 6-5〉 수원시 무장애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2020~2023)의 비전 및 정책목표	136
〈그림 6-6〉 수원시 장애 인식개선교육 협의회(안)	171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인간중심적 도시에 대한 지향점의 대안으로 무장애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20세기 후반 장애인, 아동 등의 인권이 강조되면서 차별없는 인권적 삶을 지향하기 위한 인간중심적 도시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무장애도시가 강조되고 있음(배용호, 2006)
 - 인간중심적이라는 것은 장애인, 노인 등의 소외계층이 도시에서 경험하는 차별을 도와주는 배려의 관점이 아니라 같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에서 당당히 누릴 권리의 주체로 인정해주는 관점을 의미함
- 수원시는 타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이라는 슬로건처럼 휴먼시티, 사람 중심의 정책적 방향을 설계하는 다양한 시도를 함
 - 수원시는 2010년 여성친화도시를 시작으로 아동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를 인증받은 유일한 지자체이자, 인권영향평가 등 인권적 관점을 지향하는 도시임
- 수원시는 3개 인증친화도시와 같이 선도적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차별없는 환경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영역에서는 장애인친화도시, 무장애도시를 위한 환경조성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그러나 무장애도시에 대한 개념 또한 명확하지 않으며 현재 무장애와 관련된 영역은 유니버설 디자인, 무장애 관광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시행되고 있음
 - 현재 무장애도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는 상황이며, 본래 무장애의 개념은 barrier free라는 개념을 우리말로 옮긴 것으로 장애물이 없는 의미로 해석되며, 이 용어는 건축학에서 장애인과 노인 등도 이용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accessible이라는 의미로 사용됨(배용호, 2006)
 - 장애의 개념이 점차 확대되어 최근에는 장애(barrier)의 대상이 장애인 뿐 아니라 어린이, 영유아 부모, 노인 등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이들이 교육, 건강, 여가·문화 등 삶의 제반영역에서 다양하게 경험하는 장애까지 포함된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음
- 또한 현재 수원시의 무장애도시와 관련된 정책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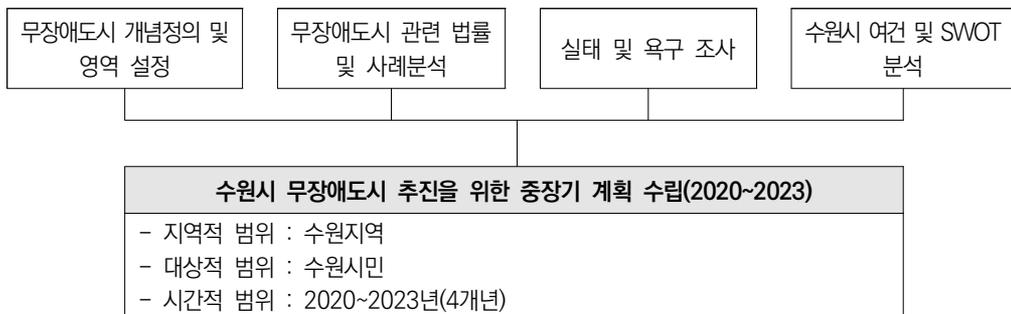
에 대한 물리적인 장벽을 없애는 barrier Free(무장애)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무장애도시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물리적 환경조성 뿐만 아니라 비물리적 환경조성과 관련된 다양한 관점과 영역에서의 접근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무장애도시의 개념을 ‘모든 시민이 불편함 없이 평등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도시’로 조작적 정의를 하여, 무장애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영역별 중장기 계획(2020~2023년)을 제안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함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의 목적은 수원지역을 무장애도시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수행한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무장애도시의 개념과 영역을 정의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념정의와 무장애도시 영역을 설정함
 - 둘째, 무장애도시와 관련된 법률 및 사례를 분석함
 - 셋째, 무장애도시 조성과 관련된 수원시민들의 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장애인, 수원시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넷째, 무장애도시 조성과 관련된 수원지역의 여건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장기 계획을 위한 SWOT 분석을 실시함
 - 다섯째, 앞서 분석한 내용을 종합하여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될 무장애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도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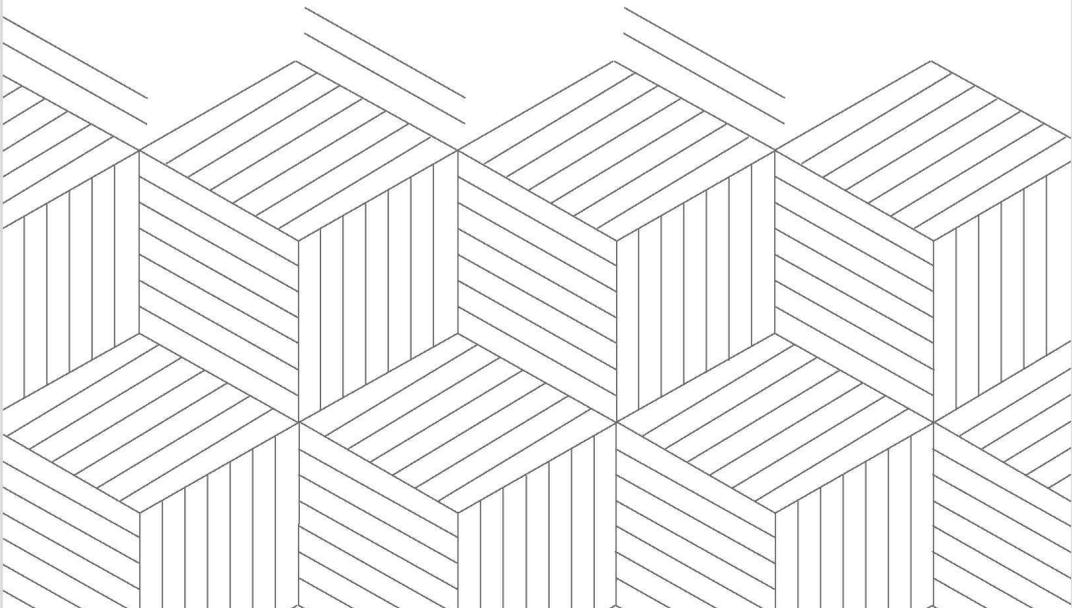
〈그림 1-1〉 연구의 수행체계



제2장

무장애도시의 개념 및 영역

제1절 무장애도시의 개념 및 대상, 영역
제2절 무장애도시 유사개념



제2장 무장애도시의 개념 및 영역

제1절 무장애도시의 개념 및 대상, 영역

1. 무장애도시의 개념

- ‘무장애’란 배리어프리(barrier-free)의 다른 표현으로, 장애를 경험하게 하는 장벽을 없애는 것을 의미함
 - 장애(障礙)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사물의 진행을 가로막아 거치적거리게 하거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함. 또는 그런 일”(네이버 국어사전)을 의미하며, 이는 장애(障礙)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겪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의미함
 - 무(無)장애라 함은 장애가 없는 것, 충분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나 그런 일이 없는 것을 의미함
 - 무장애라는 개념은 본래 배리어프리(barrier-free)의 다른 표현으로 “고령자 및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인 장애물이나 심리적인 장벽을 없애기 위해 실시된 운동 및 시책”을 의미함(위키백과)
 - 배리어프리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포함한 사회구성원 모두가 편리하며 생활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1974년 6월 UN 장애인 생활환경 전문가 협회에 의해 장벽없는 건축설계(barrier free design)라는 보고서가 알려지면서 건축이나 도시설계에서 한정된 분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제도적·법률적 장벽, 주택, 도로, 편견 등까지 확대되어 일본, 스웨덴, 미국 등으로 확대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변민수·남용현, 2007)
- 본 연구에서는 무장애도시의 개념을 ‘모든 시민이 불편함없이 평등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도시’로 조작적 정의를 함
 - 무장애도시란 장애가 있어도 충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도시,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 도시를 의미함
 - 무장애도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없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참여의 기회를 누리며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통합적인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임(변민수·남용현, 2007)

2. 무장애도시의 대상

- 무장애도시의 1차적 협의의 대상은 장애인이 주요 대상이었음
 - 초기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는 장애를 ICD(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와 ICIDH(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y, and handicaps) 분류법을 통해 사회 환경에 대한 고려보다는 질병으로 인한 개인적 기능의 상실과 사회적 불리를 포함한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함
 - WHO에서는 장애를 신체적 손상 또는 능력의 저하로 인한 정상적 사회참여 및 생활상의 총체적 장애로써 손상 또는 능력장애의 결과, 특정인에게 나타나는 사회적 불리 또는 불이익으로 정의함
 - 국내에서도 장애를 겪는 주 집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의미하는 장애인이 무장애도시의 일차적 협의의 대상임
- 그러나 최근에는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은 장애인 뿐 아니라 영역별로 신체 및 환경적인 여건으로 인해 장애를 경험하는 고령자, 임산부 등까지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됨
 - WHO의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2001)에서는 장애를 개인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에게 모두 영향을 받는 개념으로 설명함
 -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적 요소와 개인적 요소에 의해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이 모두 포함되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등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대상으로 정의함
- 이에 따라 수원이라는 도시에서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은 장애인 뿐 아니라 다양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무장애도시의 대상을 장애인을 비롯한 수원시민으로 설정함

3. 무장애도시의 영역

- 무장애도시의 영역을 정의하기 위해 개인이나 도시환경적인 영역에서 장애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분석함
 -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장애(barriers)를 물리적 영역에 국한시키지 않고 개인과

- 환경적 요인까지 포함하여 장애를 유발하는 영역을 규정함(WHO, 2001, 222)
- 접근할 수 없는 물리적 환경(a physical environment that is inaccessible)
 - 관련 지원 기술(보조, 적응 및 재활 장치)의 부족(lack of relevant assistive technology)
 -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negative attitudes of people towards disability)
 - 존재하지 않거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건강 상태를 가진 모든 사람의 참여를 방해하는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services, systems and policies that are either nonexistent or that hinder the involvement of all people with a health condition in all areas of life)
-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서비스 접근성의 장벽요인을 5가지로 규정함(「Accessibility for Ontarians with Disabilities Act」, 2005)
 -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동 및 인식, 이해의 부족으로 인한 태도의 장벽
 - 불공정한 차별과 개인이 사회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정책 및 절차
 - 장애인에게 장애를 조성하는 건축물 및 물리적 장애
 - 정보 및 의사소통의 장애
 - 사용자가 접근할 수 없는 장치의 장애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는 장애인의 기능수행을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7개의 장애유형을 규정함(「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National Center on Birth Defects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Division of Human Development and Disability」, 2019)
 - 가장 기본적인 다른 장애를 유발하는 태도의 장애(attitudinal barriers)
 -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의사소통의 장애(communication barriers)
 - 이동성 및 접근성을 방해하는 물리적 장애(physical barriers)
 -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법 및 규정의 정책적 장애(policy barriers)
 -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프로그램의 장애(programmatic barriers)
 - 사회적 장애(social barriers)
 - 독립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적절한 교통수단의 장애(transportation barriers)
- 장애를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들 중 도시환경과 관련된 영역은 교통 및 이동·편의시설, 의사소통, 제도개선, 시설물 접근, 주거환경, 관광, 여가, 인식개선 등으로 도출됨
- 무장애도시 영역을 물리적 영역과 비물리적 영역으로 구분하면, 물리적 영역은 교통

및 이동, 편의시설, 시설물 접근, 주거환경, 관광 등, 비물리적 영역은 의사소통 및 제도개선, 여가, 인식개선 등으로 분류됨

〈그림 2-1〉 무장애도시 관련 영역



〈그림 2-2〉 무장애도시 관련 영역별 현황



(교통 및 이동) 인천국제공항 교통약자 우대출구

(편의시설) 양평군 보건소 남자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그림 2-2〉 무장애도시 관련 영역별 현황



자료 1 : <http://m.news.zum.com/articles/4273895520171114.22006005809>

2 : <https://ilovepig.khan.kr/199>

3 :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63784322155C094&s_code=C0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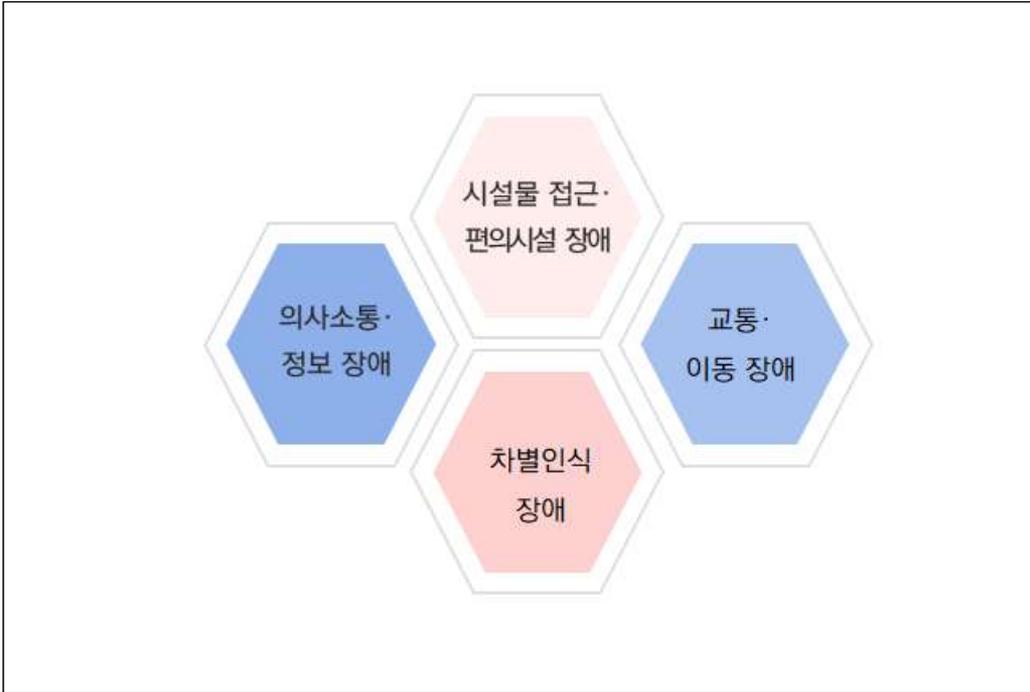
4 : <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21>

5 : 보령시청

6 : <http://m.hkd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0813>

- 본 연구에서는 무장애도시 조성과 관련된 1차적 연구이기 때문에 다양한 무장애도시 영역 중 필수 영역인 4개 영역을 무장애도시의 기본 영역으로 설정함
 - 물리적 영역은 '시설물 접근·편의시설 장애', '교통·이동 장애'로 설정하였으며 비 물리적 영역은 '차별인식'과 '의사소통·정보 장애'로 설정함
 - 무장애 관광 등의 확대된 영역은 2차 계획에서 단계적으로 반영할 예정임

〈그림 2-3〉 본 연구의 무장애도시 영역



제2절 무장애 도시 유사개념

1. 아동친화도시

-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참여를 바탕으로 아동의 권리와 삶의 질 보장, 욕구의 충족 등과 동시에 아동이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지역사회 기반과 서비스를 갖춘 지역사회를 의미함(박금식, 2014; 유희정 외, 2017; 홍승애, 2012)
 - 아동의 권리는 기본적으로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4대 기본권에 기반함
 - 권리는 종교·성별·능력 등 아동의 특성과는 상관없이 성장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교육, 깨끗한 환경, 공정한 기회 등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등과 같이 구체적인 아동의 권리를 포함함(남승연 외, 2016; 박금식, 2014)

〈표 2-1〉 아동친화도시에서 아동의 권리

아동의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중요한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 아동과 관련된 지역사회 일에 의견도 맘껏 표현합니다. • 가정과 지역사회의 일에 앞장서는 멋진 활동가입니다. • 의료와 교육서비스를 누리는 것은 기본입니다. • 어딜 가나 깨끗한 물을 마시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착취와 폭력,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습니다. • 거리를 다닐 때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 자유롭게 친구들을 만나서 즐겁게 놀입니다. • 숲과 공원 같은 녹색공간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 맑은 공기를 마시며, 깨끗한 환경에서 삽니다. • 문화행사나 사회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국적이나 인종, 성별이 다르거나 소득수준이 낮다고 차별받지 않습니다. • 장애를 가진 아동도 똑같이 존중받습니다.

자료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https://www.unicef.or.kr/>)

- 아동친화도시에서 정의한 아동은 18세 미만이며,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일·놀이·여가, 지역사회 유대 관계, 안전과 보호, 건강과 사회서비스, 교육자원, 주거환경과 같이 총 6개 영역으로 구성하도록 함(유희정 외, 2017)
- 아동친화도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인증받으며, 유효한 인증 기간은 3년임
- 국내에서는 2013년 성북구를 시작으로 현재는 66개 시군구가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31개 시군구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음(유니세프한국위원회 홈페이지)

2. 여성친화도시

- 여성친화도시란 남성을 배제한 여성만을 위한 도시를 조성하자는 것이 아닌,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등한 참여와 혜택의 분배를 보장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성별 차이가 없도록 하는 지역”을 의미함(여성가족부, 2009; 2017)
 -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가 궁극적으로는 모든 주민에게도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함(조명희, 공미혜, 2014)
- 여성친화도시란 여성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형평성, 참여, 활동, 소통 이라는 4가지 핵심 가치를 설정함
- 목표는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라는 목표에 따라 제도개선, 고용,

환경조성, 여성안전, 지역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여성가족부, 2017)

〈그림 2-4〉 여성친화도시의 비전, 가치, 목표, 추진과제

비전	살의 질을 살피는 지역정책,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				
가치	형평성	참여	돌봄	소통	
목표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추진과제	모든 부서에서 성평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여성의 취·창업 활성화 여성고용안정을 위한 지역사회 책무성 확대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역환경조성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역량 강화	양성평등 고용환경 조성 돌봄에 대한 지역 사회 책임 강화	지역사회 여성활동 확산 모든분야의 여성 대표성 증진을 위한 조치

자료 : 여성가족부(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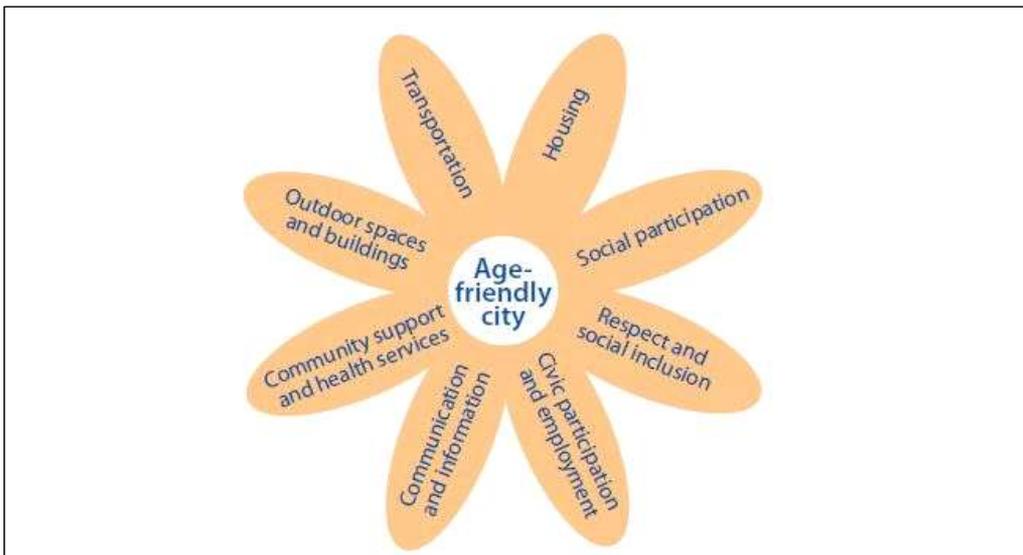
-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은 여성가족부의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한 번 지정 받으면 5년간 유효함(여성가족부, 2017)
 - 2009년 전라북도 익산시가 전국 최로의 여성친화도시로 인증받음

3. 고령친화도시

-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도시화 추세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7년부터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lobal Network of Age-Friendly Cities&Communities, GNAFCC)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고령친화도시란 노인만을 위한 도시조성이 아닌 “노인을 포함한 모든 세대가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노인세대가 존경받으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부분이 결합된 환경”을 의미함(정순돌, 윤희수, 2014)
- WHO(2007)는 활기찬 노년(active ageing)과 정든 곳에서 나이 들어감(aging in place)등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함
 - 활기찬 노년(active ageing)이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강, 참여, 안전을 위한 기회를 최적화하는 과정’을 의미함(WHO, 2007)

- WHO(World Health Organization)는 「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2007)를 통하여 도시의 구조, 환경, 서비스 및 활성 노화의 결정요인을 고려한 고령친화 가이드 8대 영역을 선정하였으며 해당 영역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고령자들로 하여금 도시의 환경 및 서비스 이용에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함
 - 도시의 물리적 환경의 주요특징인 ‘외부환경 및 시설(outdoor spaces and buildings)’, ‘교통수단 편리성(transportation)’, ‘주거환경 안전성(housing)’영역은 개인의 이동성과 상해·범죄로부터의 안전, 건강 행동 및 사회적 참여에 강한 영향을 미침
 - ‘인적 자원의 활용(civic participation and employment)’, ‘여가 및 사회활동(social participation)’, ‘존중 및 사회통합(respect and social inclusion)’은 사회 참여와 정신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과 문화의 다른 측면을 반영함
 - ‘의사소통 및 정보(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건강 및 지역돌봄(community support and health services)’ 영역은 사회 환경과 보건 및 사회 서비스 결정자를 모두 포함한 영역임

〈그림 2-5〉 고령친화도시 가이드 8대 영역



자료 : WHO(2007). 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

- 고령친화도시는 WHO로부터 인증되며 2010년 뉴욕시가 첫 회원이 된 이래 2018년 7월 기준으로 전 세계 38개국, 600개 도시가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함
- 국내에서는 2013년 서울시를 최초로 2015년 전라북도 정읍시, 2016년 경기도 수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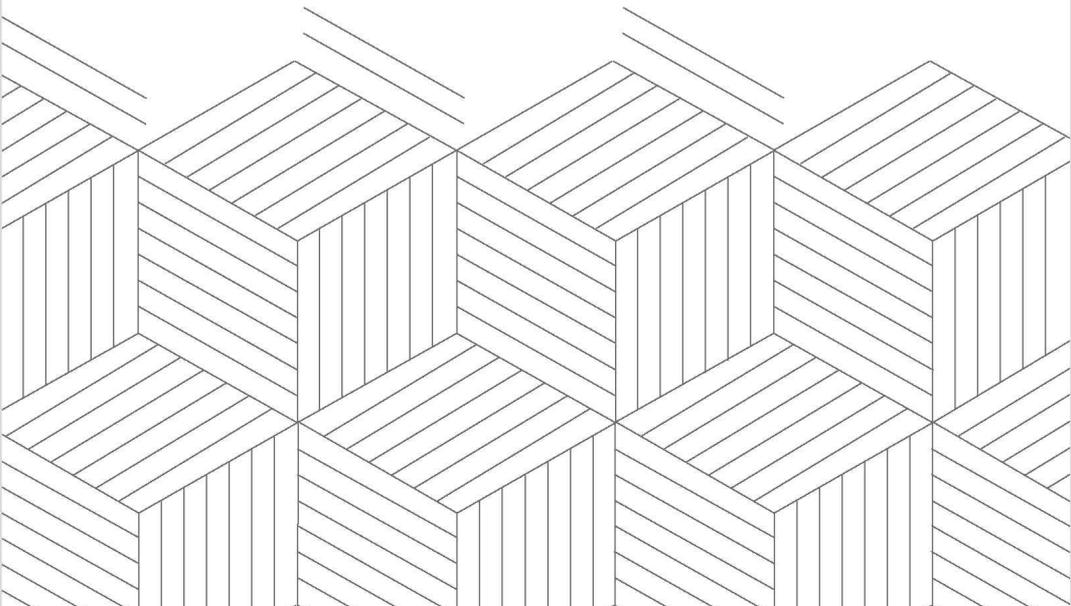
와 부산광역시, 2017년 제주도와 광주광역시 동구, 2018년 서울시 강북구까지 총 7개 도시가 가입함

〈표 2-2〉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비교

구분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정의	아동의 참여를 바탕으로 아동의 권리와 삶의 질 등의 보장, 육구의 충족 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사회 기반과 서비스를 갖춘 지역사회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등한 참여와 혜택의 분배를 보장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성별 차이가 없도록 하는 지역	노인을 포함한 모든 세대가 활동 어려움이 없도록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노인세대가 존경받으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부분이 결합된 환경
대상	18세 미만	전대상	전대상
인증	유니세프	여성이족부	WHO
시기	2013년 서울시 성북구 국내 최초 인증	2009년부터 인증 시작	2013년 서울시 국내 최초 인증
핵심 가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형평성, 참여, 활동, 소통	활기찬 노년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놀이·여가 - 지역사회 유대 관계 - 안전과 보호 - 건강과 사회서비스 - 교육자원 - 주거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개선 - 고용 - 환경조성 - 여성안전 - 지역사회개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친화시설 - 교통편의 환경 - 주거편의 환경 - 지역사회활동참여 - 사회적 존중 및 포용 - 고령자원활용 및 일자리 지원 - 의사소통 및 정보 - 지역복지 및 보건

제3장 무장애도시 관련 법률 및 사례 분석

제1절 무장애도시 관련 법률 및 조례
제2절 국내·외 사례



제3장 무장애도시 관련 법률 및 사례 분석

제1절 무장애도시 관련 법률 및 조례

1. 무장애도시 관련 법률 및 규칙

1) 시설물 접근·편의시설 장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997년 4월 10일 제정됨
 - 본 법률에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 및 시설 이용, 정보 접근 등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사회참여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법률에서는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및 설치기준, 편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장애인·노인 등의 활동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이 2015년 12월 29일 제정됨
 - 장애인·노인 등이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사용하여 완전한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설정함
 - 법률에서는 장애인과 치매 및 뇌혈관성 질환을 지닌 노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5년마다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보조기기 지원 및 연구개발·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위해 2010년 7월 9일 규칙을 제정함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근거로 함

- 개별시설과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지역을 대상으로 함
- 규칙에서는 인증기관의 지정 및 의무, 인증심사,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2) 교통·이동의 장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이들의 사회참여를 도모하고자 2005년 1월 27일 제정됨
- 법에서 정의하는 교통약자라 함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의미함
- 법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5년 단위 계획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대한 내용과 함께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및 설치와 보행 우선구역 지정,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등의 사항을 규정함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2012년 2월 22일 제정됨
- 법률에서는 보행자길 및 보행환경에 대한 내용을 정의하고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를 입은 사람 등을 비롯한 모든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 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함

3) 차별인식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2007년 4월 10일 제정됨
- 본 법률에서는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을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장애 여성 및 장애아동 등으로 나누어 세부사항을 규정함

- 법률에서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함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2014년 5월 20일 법률이 제정됨
 - 법률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복지지원 및 서비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1981년 6월 5일 제정됨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에 대한 예방과 편의시설, 사회적 인식개선 등이 포함된 기본정책의 강구와 복지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을 장애인복지의 기본 이념으로 삼아 장애인의 권리와 권익보호, 차별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1995년 12월 30일 제정됨
 -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등이 포함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과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표 3-1〉 무장애도시 관련 법률

장애 영역	법률명	제정일	목적	대상	내용
시설물 접근 · 편의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97.04.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편의시설설치의 기본원칙, 접근권,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5.12.29.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	기본계획 수립, 보조기기 교부, 중앙·지역보조기기센터 설치·운영, 보조기기 관련 전문인력, 보조기기 연구개발 및 활성화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에 관한 규칙	10.07.0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5항, 제10조의3제2항, 제10조의6제2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인증기관의 지정 및 의무, 인증심사,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교통 · 이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05.01.27.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교통약자의 정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이동편의시설설치기준 및 설치 등, 보행우선구역지정, 장애인용승강기설치 등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12.02.22.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전 대상	보행권 보장,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등

장애 영역	법률명	제정일	목적	대상	내용
차별인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07.04.10.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함	장애인	차별금지,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4.05.20.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의 권리, 자기결정권의 보장,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복지서비스의 신청, 조기진단 및 개입 등
	장애인복지법	81.06.05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장애인	장애인의 권리, 중증장애인의 보호,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편의시설, 사회적 인식개선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95.12.30.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 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정신질환자	국가계획의 수립,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주 1 : 「심신장애자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은 본래 「심신장애자복지법」 1989.12.30. 전부 개정되면서 법명이 개정됨

2 : 「정신보건법」은 2016년 5월 29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

3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노인 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의미함

2. 무장애도시 관련 조례

1) 경기도

(1) 시설물 접근·편의시설 장애

- 「경기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 경기도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2012년 5월 11일 제정됨
 - 본 조례에서는 장애인 관람석의 최저 수 및 설치, 이동편의 시설 확충,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배정 등에 대한 재정적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 경기도 지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2015년 4월 8일 제정됨
 - 본 조례에서는 공공시설 적용 범위와 청각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자막 시스템 및 수화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여 원거리 관람에서도 관람이 용이하도록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
 - 도지사 및 기관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서 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함

- 「경기도 체육시설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지원 조례」
 - 경기도 내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2018년 1월 4일 제정됨
 - 본 조례에서는 예산 및 보조금 지원 대상과 절차, '경기도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교통·이동 장애

- 「경기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2013년 5월 1일 제정됨

-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활성화시켜야 함과 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감시체계 확립을 위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지킴이 센터의 설치·기능 및 운영비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표 3-2〉 무장애도시 관련 경기도 조례

장애 영역	조례명	제정일	목적	대상	내용
시설물 접근·편의시설	경기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12.05.11.	경기도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하고자 함	장애인	최적관람석의설치,이동 편의시설확충,장애인보호차의관람석,도비의보조,민간운영시설의권장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15.04.08.	경기도 지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 시킴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장애인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자막시스템 및 수화통역 전용스크린 설치, 직접 방송 송출시 수화 및 한글자막 포함하여 제작 등
	경기도 체육시설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지원 조례	18.01.04.	경기도내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체육환경 개선하고자 함	장애인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지원계획 수립, 설치 비용 지원 등
교통·이동	경기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13.05.0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장애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홍보·교육,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감시체계 확립을 위한 지킴이센터 설치 등

2) 「진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 경상남도 진주시는 2012년 4대 복지시책 중 하나로 ‘모두가 편안한 무장애 도시’를 선포함
- 무장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2013년 11월 8일 「진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함
 - 조례에서는 5년 단위 진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과 세부 사항, 그리고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함
 - 공공시설의 무장애(barrier free)시설의 확충, 민간시설의 무장애 시설 개선 인센티브 제공,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 주거약자의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시민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항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함
 - 시행규칙에서는 실무·인증위원회, 읍·면·동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 등 규정함
 - 실무·인증위원회는 무장애 시설 인증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신청기관과 현지 확인 및 인증 심의에 관한 사항, 인증 유형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며 실무·인증위원장은 복지여성국장으로 임기는 재직 기간으로 규정함
 - 읍·면·동별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무장애 도시 시책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읍면동 위원회’를 두며,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행정동의 장애인업무 담당자가 담당함
 - 읍면동 위원회는 1) 읍·면·동별 지역특성을 반영한 무장애 도시 시책 개발 추진, 2) 무장애시설 확충을 위해 지역의 시설물 개·보수 및 지원, 3) 무장애시설 확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의 관한 사항을 수행함

〈표 3-3〉 진주시 무장애도시 실무·인증위원회 및 읍면동위원회 기능

구분	무장애도시 실무·인증위원회	진주시 무장애도시 읍·면·동위원회
기능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위원회로부터 검토 지시를 받은 사항 3. 무장애(Barrier Free)시설 인증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4. 무장애(Barrier Free)시설 인증 신청기관 현지 확인 및 인증 심의에 관한 사항 5. 무장애(Barrier Free)시설 인증 유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실무·인증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 읍·면·동별 지역특성을 반영한 무장애 도시 시책 개발 추진 2. 무장애시설 확충을 위해 지역의 시설물 개·보수 및 지원

구분	무장애도시 실무·인증위원회	진주시 무장애도시 읍·면·동위원회
구성	<p>① 실무·인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실무·인증위원장은 복지여성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전문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무장애도시 조성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 	<p>① 읍·면·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은 해당 읍·면·동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특성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전문적 식견을 갖추고 있는 사람 2. 무장애도시 조성에 관심이 많은 사람
임기	<p>① 실무·인증위원장 및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p>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간사	실무·인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p>읍·면·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읍·면 : 장애인업무담당 2. 동 : 주무

자료 : 진주시 무장애도시 조성조례 시행규칙

〈표 3-4〉 진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구분	내용	
조례명	진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제정일	2013.11.08.	
개 념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	
대 상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을 포함한 모든 시민	
내 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대상)
	제2장 무장애 도시 조성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계획수립), 제6조(상징물), 제7조(무장애 시설 인증), 제8조(무장애 도시 조성 지원), 제9조(실적평가)
	제3장 위원회	제10조(설치), 제11조(구성), 제12조(직무), 제13조(임기),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5조(기능), 제16조(회의), 제17조(수당)
	제4장 보칙	제18조(시상), 제19조(시행규칙)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3) 「광주광역시 복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 광주광역시 복구는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접근·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9년 2월 12일 「광주광역시 복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함
- 조례에서 정의하는 무장애 도시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뿐 아니라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로 진주시와 동일하게 정의함
- 조례의 대상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을 포함한 모든 구민이며, 조례는 목적(제1조), 기본계획의 수립(제7조), 위원회(제13조~제18조) 등을 규정함
 -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속적인 관리·확산을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와 정책 추진의 실현성을 위한 구민 모니터링 및 구민 제안제도 활용,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홍보와 정보제공을 구청장 책무로 명시함
 - 무장애 도시 조성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과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을 통한 정보 수집,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규정함
 -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주 광역시 복구 무장애 도시 조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무장애 도시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하며 기본계획 수립·변경시 고시해야함을 명시함

〈표 3-5〉 광주광역시 복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구분	내용
조례명	광주광역시 복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제정일	2019.02.12.
개 념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
대 상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을 포함한 모든 구민
내 용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6조(구민의 책무),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구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9조(학술기관 등과의 협력), 제10조(인재 육성), 제11조(활성화 구역의 지정), 제12조(사업지원), 제13조(위원회의 설치),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7조(회의 등),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9조(회의록의 공개), 제20조(수당 등), 제21조(운영세칙), 제22조(구민참여), 제23조(사업평가), 제24조(시행규칙)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4) 「대구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는 지역사회 돌봄에 필요한 환경개선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 5월 20일 「대구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본 조례에서는 장애인친화를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장애인친화도시라 정의함
- 조례의 주요 대상은 장애인이며, 조례에서는 목적(제1조), 정의(제2조),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계획 및 조성 기준(제4~6조), 협의체 설치·운영(제11조) 등을 규정함
 - 장애인 친화도는 장애인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친화를 이룬 정도를 의미함
 - 장애인 친화 영향평가는 대구광역시의 소속기관 및 시·군·구의 정책수립·시행 등이 장애인친화도에 미치는 조사·예측·평가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의미함
 -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각 구·군이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함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함
 - 장애인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의 안전성·편리성·접근성, 교통수단의 이용 편리성, 여가 및 사회활동의 접근성, 자아실현성, 의료서비스 접근성, 차별 인식 개선 등의 요소를 포함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수립해야 함을 명시함
 -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지원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함
 -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함
 -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해 장애인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표 3-6〉 대구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구분	내용
조례명	대구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일	2019.05.20.
개 념	장애인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
대 상	장애인
내 용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평가), 제8조(전문인력), 제9조(재정지원), 제10조(협력 체계구축), 제11조(협의체 설치·운영), 제12조(교육·홍보), 제13조(포상), 제14조(시행규칙)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5) 「여수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 전라남도 여수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개별시설을 접근·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여수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를 2019년 4월 16일 제정함
- 본 조례에서는 무장애 도시를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 라고 규정함
- 조례의 대상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과 같은 모든 시민이며, 조례는 목적(제1조), 기본계획 수립(제5조), 무장애 시설 인증(제7조), 위원회(제9조~제16조) 등의 내용을 규정함
 - 조례에서는 여수시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무장애 도시 조성 시행계획을 수립해야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시행해야 함을 명시함
 - 시행계획은 무장애 도시 조성목표 및 추진방침, 무장애 시설 조성 및 확충계획, 추진사업 목록, 무장애도시 조성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시민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계획, 그 밖에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등이 포함되어야함
 -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여수시 무장애 도시 추진 위원회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수시 무장애도시 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을 규정함
 - 무장애도시 실무·인증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서 무장애 도시 조성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무장애 도시 조성의 주요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무장애 시설 인증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거나 자문함
 - 여수시 무장애도시 실무위원회와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표 3-7〉 여수시 무장애도시 실무·인증위원회 및 읍면동위원회 기능

구분	여수시 무장애 도시 추진위원회
기능	1. 무장애 도시 조성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무장애 도시 조성의 주요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무장애 도시 조성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무장애 시설 인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분	여수시 무장애 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같은 항 제1호 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복지·도시계획·건축·토목·조경·교통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그 밖에 유관기관 및 단체의 대표 등 무장애 도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임기	① 실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각각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자료 : 여수시 무장애도시 조성조례 시행규칙

〈표 3-8〉 여수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구분	내용
조례명	여수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제정일	2019.04.16.
개 념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접근·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도시
대 상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 모든 시민
내 용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대상),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계획수립), 제6조(실태조사), 제7조(무장애 시설 인증), 제8조(실적평가), 제9조(위원회 설치), 제10조(구성 등), 제11조(기능정),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4조(회의),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6조(수당 등), 제17조(포상), 제18조(시행규칙)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표 3-9〉 무장애 도시 조성 관련 지자체 조례 비교(진주시, 광주광역시 북구, 여주시, 대구광역시)

구분		경상남도 진주시	광주광역시 북구	여주시	대구광역시
조례명		「진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여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대구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일		2013.11.08.	2019.02.12.	2019.04.16.	2019.05.20.
개념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개별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		장애인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	
대상		전 대상		장애인	
적용대상 및 범위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도로, 교통수단, 여객시설	-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도로,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시기반시설, 교통수단, 여가 및 사회활동, 의료서비스 등
기본 계획 수립	주기	5년		1년	5년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무장애 도시 조성목표 및 추진방침 2. 공공부문의 무장애시설 확충계획 3. 민간부문의 무장애시설 확충계획 4. 주거약자의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계획 5. 시민인식개선 및 홍보계획 6.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무장애 도시 조성목표 및 추진방침 2. 무장애 시설 조성 및 확충계획 3. 추진 사업 목록 4. 무장애도시 조성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5. 시민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계획 6. 그 밖에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장애인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자원조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
위원	위원회명	진주시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	광주광역시 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위원회	여주시 무장애도시 추진위원회	-

구분	경상남도 진주시	광주광역시 북구	여주시	대구광역시	
회	구성	위원장 1명(부시장), 부위원장 1명 총 30명 이내 위원	위원장 포함 10명 이상, 20명 이내	위원장 1명(부시장), 부위원장 1명, 총 15명 이내 위원	-
	임기	재직하는 동안/위촉위원 2년	2년(2회에 한하여 연임)	재직하는 동안/ 위촉위원 2년 (1회 한하여 연임)	-
	기능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시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6. 무장애시설 인증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무장애 도시 조성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시설물의 신설, 신축, 증·개축, 용도변경 등의 정비기준에 관한 사항 4. 무장애 도시 조성 도입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무장애도시 조성도입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 연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 6. 활성화 구역 지정 및 종합적인 평가 세부기준 7.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무장애 도시 조성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무장애 도시 조성의 주요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 무장애 도시 조성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 무장애 시설 인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명	진주시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복지여성국장) 포함 10명 이내			
	임기	재직하는 동안/위촉위원 2년			
기능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위원회로부터 검토 지시를 받은 사항 3. 무장애 시설 인증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4. 무장애 시설 인증 신청기관 현지 확인 및 인증 심의에 관한 사항 5. 무장애 시설 인증 유형에 관한 사항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제2절 국내·외 사례

1. 해외 사례

1) 일본 사이타마현, 복지마을 만들기

- 일본 사이타마현에서는 모든 현민이 동일한 사회참여가 가능한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1973년부터 해당 논의가 시작됨
 - 고령자 및 장애인이 차별과 편견없이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73년부터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신체장애인이 살기 좋은 가로 정비 사업’을 창설하였으며, 향후에는 민간 건축물까지 대상이 추가되어 ‘장애인 등이 살기 좋은 가로 정비 추진 지침’을 배포함(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2007.)
- 1990년에는 ‘장애인이 살기 좋은 마을은 누구에게나 살기 좋은 마을’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장애인 등이 살기 좋은 가로 정비 추진 지침’을 ‘사이타마현 살기 좋은 복지마을 만들기 추진지침’으로 개정함(한국장애인개발원, 2007.)
- 1996년에는 배리어프리 이념을 기초로 복지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며, 고령자·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현의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며, 평등한 사회참여가 가능한 풍요롭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를 제정함
 - 조례에서는 고령자·장애인 등이 원활히 이용 가능한 생활 관련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배리어프리와 관련된 시설의 정비기준과 더불어 생활관련 시설의 정비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함
- 또한 현민 모두가 이용 가능한 교통 편의시설 및 건축물 등의 무장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증제를 시행함
 - 규모가 큰 건물은 국가법을 적용하나, 작은 건물 및 공원과 역 등은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를 적용하여 추진함
 - 검토항목은 100% 만족해야 하며, 시설 이용대상자는 시각·청각·지체·내부·지적 장애로 구분함
 - 유효 인증 기간은 5년이며, 적합증 발급 후 해당 시설물은 도교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됨

〈그림 3-1〉 사이타마 복지마을 만들기 적합증



자료 : <http://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13235>

〈표 3-10〉 사이타마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구분	내용
조례명	사이타마현 복지마을 만들기
제정일	1996.03.20.
개 념	고령자,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행동상의 제한이 있는 사람을 배려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이용하기 쉬운 시설정비가 추진되는 마을
대 상	고령자 · 장애인 · 임산부 · 어린이 등 모든 현민
내 용	목적(제1조), 정의(제2조), 사이타마현 사업자 · 주민 책무(제3조, 5조, 6조), 시책의 책정 등의 기본방침 · 추진체제 · 재정조치(제7~11조), 정비기준(제12~15조), 생활관련 시설 신축 신고(제16~19조)

자료 : 한국장애인개발원(2007) 재구성

2) 일본 빅아이(big-i)

- 일본에서는 장애인의 완전참가와 평등을 실현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 및 상호공감 · 친목도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1년 9월 80억엔(한화 80,000 백만원)을 투자하여 배리어프리(barrier free)시설인 빅아이를 설립함
- 빅아이는 모든 유형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국제교류 활동과 문화예술 활동, 숙박 등을

할 수 있는 종합시설을 갖추고 있음 (빅아이 홈페이지 : <http://www.big-i.jp/hotel/>)

- 연수실, 다목적 홀, 장애인 전용 객실 겸비하고 있음
 - 다목적 홀은 최대 약 1,500명 수용 가능한 객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휠체어 이용자 1,000여명이 이용 가능함
 - 1년에 120일 정도 대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입력 시스템과 저시력장애인을 위한 클로즈업 바스트샷 스크린 등을 도입함
 - 객실 내 침대 손잡이 및 장애인 이동을 위한 보행보조기구를 설치한 장애인 전용 객실이 존재하며 객실 내 장애인 이용 가능 화장실을 설치함
- 휠체어 사용 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점자블록 및 배수뚝개 등을 설치함
 - 점자블록이 배수구에서도 끊기지 않도록 하였으며 작은 틈의 배수뚝개를 설치하여 휠체어 바퀴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고려함
-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음
 - 휠체어 사용을 위하여 세면대 하단부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공간 규모 또한 국내 규모(1.4m×1.8m)에 비해 넓은 2.0m×2.0m로 조성되어 있음
- 이밖에도 숙박시설에서 장애인의 취업교육도 제공함

〈그림 3-2〉 일본 빅아이



<p>객실 내 휠체어 사용이 가능한 화장실 설치</p>	
<p>배수구에도 끼이지 않는 점저블록</p>	<p>휠체어 바퀴를 고려하여 틈이 좁은 배수덮개 설치</p>
<p>표지판 하단 점자블록 설치 및 내부 배치도 설치</p>	<p>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세면대 하단공간 확보</p>

자료 : 경기도(2019).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심포지엄

3) 미국 보스턴, Age-Friendly Boston

- 미국 보스턴은 2014년 연령친화도시 네트워크로 WHO에 가입하였으며 고령자가 겪을 수 있는 치매·경제불안·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차원에서 고령자와 관련된 영역별 계획을 수립함(「Age-Friendly Boston Action Plan」, 2017)
 - 주거(housing)
 - 연령 친화적 개발, 대안적 주택 옵션 등을 장려함
 - 적절한 수준의 주택 가격과 서비스를 권장함
 - 보스턴에서 이용 가능한 주택 및 주택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 세금 감면을 통한 고령의 주택 실수유주를 지원함
- 어려움에 처해있는 보스틴 거주 노인들을 지원함
- 교통수단(transportation)
 - 공공기금을 활용한 교통수단과 개별운송수단 옵션을 최적화함
 - 교통수단에 관한 고령층의 지식 및 접근성을 향상시킴
 - Vision Zero와의 협력을 통해 보행자 안전을 향상시킴
- 야외공간 및 건축물(outdoor spaces & building)
 - 공원 및 공공장소 설계시 노인의 요구와 의견을 고려함
 - 야외공간 이용시 안전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함
 - 현재 이용 가능한 공중 화장실의 위치 파악 및 정보를 전달함
 - 독거노인 우선의 냉방 수단을 마련함
- 지역사회 지원 및 보건 서비스(community support & health services)
 - 서비스 지원 및 혜택 수혜를 위한 홍보를 진행하며 소외된 고령자들과의 관계망을 확장시킴
 - 고품질의 알맞은 음식을 접할 기회를 보장함
- 시민참여 및 고용(civic engagement & employment)
 - 고령노동자의 노동력을 홍보함
 - 고령노동자를 보다나온 고용기회 및 자원을 연결함
 - 고령자의 자원봉사 기회 증진 및 홍보를 확대함
 - 고령자의 관점 및 요구를 도시계획과 정책에 반영함
- 사회 참여(social participation)
 - 고령자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함
- 존경 및 사회포용(respect & social inclusion)
 - 연령친화적 고객 서비스를 제공함
 - 공교육을 통한 노인차별적 문제를 접근함
 - 고령자를 위한 포괄적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촉진함
-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communication & information)
 - 고령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개발함
 - 고령층에게 보다 나은 접근을 위한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함

- 이밖에도 보스턴에서는 AARP(미국은퇴자협회)와 미국 내 연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으며 메사추세츠 대학(Univ.of Massachusetts), 터프츠 대학(Tufts University) 등과 제휴를 체결함
- Age-Friendly 인증제 실시
 - 보스턴주에서는 교통편의 및 주거편의 환경, 고령친화시설, 고령자원 활용 등이 적합한 영역을 인증해주며, 인증제 이후에도 해당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

4) 영국 런던, London Plan : Accessible to all

- 런던 시민과 노동자 및 방문객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런던이 제공하는 모든 것에 참여와 즐기는 것이 가능함을 목표로 2004년 London Plan을 수립하였고 계획 내 Accessible London의 주제로 관련 제도 정비를 실행하고 있음(런던시 홈페이지 : <https://www.london.gov.uk>)
- 이후 2011년 런던 시민과 노동자 및 방문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하는 것을 목표로 포괄적 환경을 촉진을 유발 할 수 있는 정책이 포함된 보조계획 지침(SPG : The Supplementary Planning Guidance)을 발표함
 - 장애인 및 고령자의 접근 요건을 강조하며 런던의 접근 가능한 환경에 관한 포괄적 설계원칙 구현과 시행하기 위한 조언을 제공함(「Accessible London : Achieving an inclusive environment - Supplementary planning guidance」, 2014)
- The Supplementary Planning Guidance(SPG)
 - London Plan 지침의 주요 정책을 바탕으로 여러 영역의 접근성 및 포괄적 설계에 대한 지침을 명시하고 있음
 - Lifetime neighbourhoods
 - 모든 시민들은 거주지 인근에서 기반시설 및 대중교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사회에서 보다 좋은 환경을 가져야 함을 명시함
 - 거주자 참여를 통해 포괄적인 설계와 인근 지역 관련 원칙을 홍보해야함을 제안함
 - 공공영역, 편의시설 및 놀이공간(public realm, amenity and play space)
 - 런던에 위치한 공공 공간은 안전하고, 접근 가능하며 포괄적으로 연결되고 지역 문맥과 관련되어야 함을 명시하며 최고 품질의 디자인 및 조경과 가로수, 보행로 등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함
 - 모든 놀이 공간과 놀이 공간을 위한 경로는 접근성이 용이해야하며 이를 위해 각 자치구가 해당 지역의 장애 아동 및 고령자를 위한 놀이·활동에 대한 제공의 실태를 적극

적으로 조사해야하며, 신사업 도입 시 접근이 가능함과 동시에 포괄적인 놀이·편의 공간 및 장비를 제공해야함을 제안함

- 교통, 주차, 자전거, 보행(transport, parking, cycling, and walking)
 - 런던시 시장은 공공 교통 및 기타 지속 가능한 교통 수단과 관련한 고품질의 정책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도로 관리시 도로의 다양한 역할과 도로 사용자들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련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운송과 개발의 긴밀한 통합을 장려해야함을 명시함
- 접근 가능한 주택(accessible housing)
 - 런던 시민들은 가능한 최고 품질의 환경에서 다양한 크기 및 유형의 주택에 대한 요구 조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선택할 수 있음을 명시함
 - 이를 위하여 시장 및 자치구는 모든 신규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 표준에 맞는 주택 단위로 설계되었는지 확인해야함을 명시함
- 고령자용 주택(housing for older people)
 - 변화하는 연령 구조에 맞추어 고령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이를 위하여 자치구는 고령자를 위한 인프라 현황을 파악하고 인프라 제공 부족 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함
- 쇼핑센터 및 도시 중심부(shopping and town centres)
 - 쇼핑센터 및 도시 중심부 조성시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에 의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경쟁적 선택을 유지하고, 런던의 도심 네트워크 개발을 조정하여 런던의 주요 거주지 및 수도권 내 지역 정체성을 고려하여 개발해야함을 명시함
- 사회 기반 시설 접근성(access to social infrastructure)
 - 증가하는 다양한 인구에 대한 요구들을 충족하기 위하여 추가적이고 강화된 사회 기반 시설을 제공해야함을 주장하며, 이를 위하여 장애인과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사회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의 접근성을 보장해야함을 명시함
- 공공 화장실(public toilets)
 - 도시 중심부는 접근 가능한 공중 화장실과 저렴한 아동 보호시설, 장애인 전동 보장구 관련 계획과 같은 다양한 시민 서비스 및 시설을 제공해야함을 명시함
 - 여가 관련 시설의 공중화장실 제공 및 기존 시설의 접근성 향상을 장려해야함과 동시에 감시해야함을 자치구의 역할로 지적함
- 교육(education)
 - 모든 장애 아동과 청년층 및 특수 교육 요구(special educational needs)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 주는 것이 정부의 목표임을 명시

하며 교육 및 훈련과 고용 등을 통하여 성인으로서의 성공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함을 명시함

- 고등 교육과 성인 교육은 접근 가능하고 포괄적인 설계(London Plan)에 맞추어 계획해야하며 최신 설계에 대한 지침은 최소한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비표준 영역에 대한 설계 적용법을 설명서를 통해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함을 명시함
- 접근 가능한 이동 편의 시설(accessible visitor facilities)
 - 런던 방문객 증대를 위해 여가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목적의 방문시 필요사항을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며 2031년까지 40,000개의 추가 호텔 침실 달성과 그 중 최소 10%는 휠체어로 접근이 용이해야함을 제안함
- 예술, 문화, 오락(arts, culture, and entertainment)
 - 시장 및 자치구 및 기타 이해 당사자는 장애인과 노인들이 장애물을 경험하지 않고 런던의 다양한 여가, 예술 및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역할을 명시함
- 스포츠(sport)
 - 시장은 런던에서의 스포츠와 신체 활동에 대한 접근의 불평등으로 인해 참여도가 낮은 그룹/지역들의 참여를 늘리고 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함을 명시함
 - 런던 시민들이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한 스포츠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림픽 경기장과 패럴림픽 경기장의 기준에 따라 접근 가능하고 포괄적인 디자인을 적용할 것을 제안함
- 역사적 환경(historic environment)
 - 런던에 위치한 역사적 건물과 풍경은 런던의 경제적 성공과 세계 수준의 지위, 방문객의 목적지로서의 인기를 형성한 중요한 요소임을 주장하며 런던의 유산 자산과 역사적 환경도 도시와 장소의 역사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함

〈그림 3-3〉 영국 런던, London Plan



장애물 없는 Croydon Tramlink

Pool Pod : 수영장용 휠체어 리프트



Guildhall Great Hall : 완만한 경사 조성과 기둥 제거를 통한 접근성 향상

자료 : 「Accessible london - Supplementary planning guidance」, 2014

2. 국내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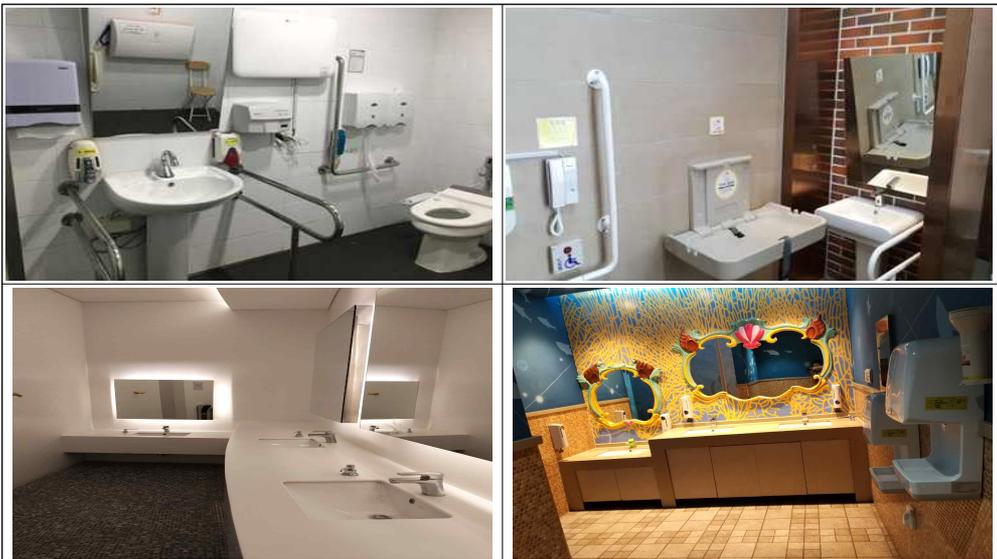
1) 영역별 사례

(1) 시설물 접근·편의시설 장애

■ 가족 화장실

-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을 위해 휠체어 동선 확보, 안전기구가 장착된 변기, 아동용 세면기 및 변기 등을 설치함

〈그림 3-4〉 시설물 접근·편의시설 장애_가족 화장실



자료 1 : <https://blog.naver.com/v15rala/221307864000>

2 : 직접 촬영

(2) 교통·이동의 장애

■ 무장애 버스 정류소

- 서울시는 화단·휴지통 등 승하차에 방해되는 시설물을 없애 교통약자를 포함한 서울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정류소’를 설치함
 - 승강장과 보도의 단차 제거, 휠체어 대기 장소 설치 및 저상버스 탑승 위치 지정, 승하차 공간 무장애 정비, 부적절한 위치(도로 모퉁이, 횡단보도 부근 등)의 정류소 이전, 버스 정위치 정차를 위한 경사형 경계석 설치, 시각·청각 장애인용 BIT¹⁾ 및 버스 정보모바일 서비스를 확충함
 - 소규모 정류소(노선 수 4개 이하)에 ‘알뜰 BIT’ 설치를 설치함
 - 기존 정류소 표지판과 표출 화면 크기가 최소화된 BIT를 합친 표지판 일체형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설치함

〈그림 3-5〉 교통·이동 장애_무장애 버스 정류소



자료 1 : news.mt.co.kr/mtview.php?no=2016042611158215167&type=1

2 : <https://opengov.seoul.go.kr/mediahub/8312800>

■ 다인승 장애인 버스

- 천안시와 부산시를 비롯한 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및 노약자의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 차량을 운행함

1) BIT(Bus Information Terminal)는 버스정보 안내 단말기를 의미함

〈그림 3-6〉 교통·이동의 장애_지역별 다인승 장애인 버스



자료 1 :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2833>

2 : <https://news.join.com/article/22989035>

(3) 의사소통의 장애

- 마포구 AAC(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ZONE²⁾
 - 마포구에서는 언어·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2018년 6월부터 AAC ZONE을 운영함
 - 본 사업은 마포구에 위치한 언어치료센터에서 언어치료 이후 장애인들의 활발한 사회화와 자존감 향상을 위해 자체적으로 시행된 사업이나 점차 마포구로 확대함
 -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 제작) 상징 디자인 제작 후 자체적으로 어플리케이션과 의사소통 도움 판 제작 및 보급함
 - QR코드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등과 같은 전자도구와 그림 및 글자로 구성된 의사소통 안내판, 가방 등과 같은 비전자 도구 등이 있음
 -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과정이 다소 복잡하여 비교적 낮은 연령의 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있음
 - (인식개선 및 홍보) 성산동 일대 공공기관과 상점(11곳) 및 지구대(17곳)을 대상으로 AAC 어플리케이션 및 의사소통 도움판을 제작함
 - 센터에서 장애인 및 비장애인 대상으로 AAC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함
 - (AAC ZONE 조성 과정) 센터에서 상점 및 공공기관에 권유 후 어플리케이션 및 의사소통 도움판 제작함
 - 변동사항 발생시 의사소통 도움판을 재제작해야 하며 약 한달 가량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한계점이 있음

2) 사례조사 및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그림 3-7〉 의사소통의 장애_마포구 AAC ZONE



성산1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의사소통 도움판

자료 : 직접 촬영

- IBK 은행 화상상담센터
 - IBK 은행에서는 2013년 7월부터 언어·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금융권 최초의 통합 화상상담센터를 운영함
 - 스마트폰, PC, 화상 전용부스, 현금입출금기 등, 화상상담·수화상담·덧글상담 등을 통한 서비스 제공함
- 경찰청에서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수사 매뉴얼을 제작·배포함
 - 경찰청에서는 2014년 12월 지적장애인의 의료지원 및 조사과정 설명, 의사소통 그림판 등의 수사 매뉴얼을 제작함

〈그림 3-8〉 의사소통의 장애_은행 화상 수화상담 및 장애유형별 수사 매뉴얼



IBK 은행 화상 수화 상담

장애유형별 수사 매뉴얼 - 의사소통 지원 그림판

자료 1 :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703109>

2 : <http://news.zum.com/articles/23689680>

(4) 차별인식

■ 배리어 프리 영화 체험

- 2011년부터 (사)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 주관으로 시·청각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정
을 대상으로 한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를 진행함
-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는 장애와 상관없이 모두 다 함께 즐기는 영화축제이며, 프로그램으로는 배리어프리영화 포럼, 배리어프리 폐쇄시스템 기술시연, 화면해설 라이브,
후원상영, 씨네토크, 관객참여 이벤트 등을 운영함

〈그림 3-9〉 차별인식_배리어프리 영화 체험



자료 1 :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31206_0009082540

2 : http://sharehub.kr/sharestory/news_view.do?storySeq=1083

■ 찾아가는 장애체험

- 경상대학교에서는 2015년 10월 무장애도시 시책의 필요성을 알리고 시민참여 유도
하기 위해 진주시장애인복지관과 상호 협력하여 '찾아가는 장애체험'을 비롯한 다양
한 시민인식 개선 프로그램 개발·시행함
- 진주 문산초등학교에서는 2017년 11월 다양한 장애체험활동을 통해 장애에 대한 편
견과 인식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더불어 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체험을 실시함
- 거울에 비친 미로 찾아보기(시지각 협응체험), 휠체어체험(지체장애체험), 안대·흰지
팡이 체험(시각장애체험) 등 프로그램을 구성함

〈그림 3-10〉 차별인식_찾아가는 장애체험 교육



경상대학교 찾아가는 장애체험교육

문산초등학교 찾아가는 장애체험교육

자료 1 : <http://www.hkd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601>

2 :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55494>

■ 장애인 역할 재난체험교육

- 서울특별시 보라매안전체험관에서는 2017년 5월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 재난체험교육을 진행함
 - 대상은 장애인 활동보조인이며, 장애인 역할체험을 통해 장애인 입장에서 재난 상황의 어려움을 체험함
 - 재난 대처요령 및 장애인 활동보조인 역할 중요성 인식, 재난 사각지대의 중증장애인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 화재대응 요령, 소화전 및 소화기 사용법, 완강기 사용법, 지하철 화재대피, 지진 발생시 행동요령 등 교육을 시행함

〈그림 3-11〉 차별인식_장애인 역할 재난체험교육



시각장애인 소방안전 및 심폐소생술 교육

장애인 역할 재난체험교육

자료 1 : <http://m.ycn24.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650>

2 : <http://m.fpn119.co.kr/77613>

2) 지역별 사례

(1) 경상남도 진주시 무장애 도시

- 경상남도 진주시는 2012년 7월 9일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하는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인 ‘무장애 도시’를 선포함
- 무장애 도시 시행을 위해 2014년 수행한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 및 무장애시설 인증기준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4가지 핵심가치를 설정함
 - 비전은 ‘착한 도시, 편한 진주 + 안전한 진주’이며, ‘사람중심 사회’, ‘차별없는 사회’, ‘안전한 사회’, ‘시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와 같이 4가지 핵심가치임(진주시, 2014)

〈그림 3-12〉 진주시 무장애도시 만들기 비전



자료 : 진주시(2014).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 및 무장애시설 인증기준 수립 연구

- 무장애 도시의 추진전략은 5년을 주기로 초기, 중기, 장기의 3단계로 구분하여 하드웨어측면, 소프트웨어측면, 조직운영계획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 계획부터 1년까지는 초기로 무장애도시 인프라를 위한 BF 기본계획수립, 실태조사, 무장애도시 조성센터 설치 등을 계획함
 - 중기에는 초기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실제로 추진하는 시기로 BF 보행망에 대한 시범사업, BF 정보구축과 무장애도시 조성센터 운영 등을 계획함
 - 장기에는 BF 환경개선사업 인증 의무화, 진주시 BF 안내체계 개선 등을 계획함

- 앞서 수립한 추진전략과 관련하여 분야별 주요 사업계획(안)에서는 가이드라인/매뉴얼, 환경개선사업, 정보 분야, 인식개선/전문 인력 양성, 부서 간 연계, 민간확대 방안의 6개 분야로 구분하여 각각의 주요 실행목표와 세부실행내용을 계획함
 - 가이드라인/매뉴얼은 초기에는 BF 인증 기준이 포함된 BF 도시조성 매뉴얼 제작함
 - 환경개선사업은 BF 보행망 및 시범사업 계획 수립, ‘시장탐방로’, ‘문화역사탐방로’ ‘교육 탐방로’ 등의 시범사업 실행, 주요거점보행환경, 공공/교육시설, 공공의료/복지시설, 공원, 주거지가로 등을 대상으로 BF 환경개선사업을 제안함
 - 정보분야는 진주시의 BF 현황 및 실태조사, BF 정보제공 및 홍보를 위하여 BF 웹사이트를 구축하며, 유도안내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공공공간 대상의 유도안내 체계 개선을 제안함
 - 인식개선/전문 인력 양성은 무장애 도시와 관련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장애체험’, ‘무장애도시행사’ 등을 개최하고 전문가 교육계획 수립, BF 제품과 장애체험을 위한 쇼룸 운영, 공무원·전문가·학생 등을 대상으로 무장애 관련 교육을 제안함
 - 부서 간 연계는 BF 도시조성센터 설치를 제안함
 - 민간확대방안으로 BF 관련 제도지원 및 인센티브를 적용하기 위해 BF 적용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수립하고 숙박업 및 관광업 대상으로 BF 적용을 확대방안 마련, BF 적용시설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실행을 제안함

〈그림 3-13〉 진주시 무장애도시 조성 추진전략



자료 : 진주시(2014).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 및 무장애시설 인증기준 수립 연구

〈표 3-11〉 무장애도시 조성 분야별 중장기 사업계획

구분	초기(2015)		중기(2016~2018)		장기(2019~2021)	
	실행목표	세부내용	실행목표	세부내용	실행목표	세부내용
가이드라인/ 매뉴얼	BF도시조성매뉴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기준 매뉴얼제작 	-	-	-	-
환경개선사업	진주시 BF보행망 및 시범사업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BF보행망 계획 수립 시범사업 계획수립 	시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탐방로 문화역사탐방로 교육탐방로 	BF환경개선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거점 보행환경 공공/교육시설 공공의료/복지시설 공원 주거지가로
정보분야	진주시 BF현황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주시 BF현황 및 실태조사 	BF웹사이트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BF정보제공 및 홍보용 웹사이트 구축 유도안내 체계 개선 방안 마련 	유도안내체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공간 유도안내 체계 개선
			유도안내체계 개선			
인식개선/ 전문인력양성	인식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과 함께하는 장애체험 무장애도시행사 개최 전문가 교육계획 수립 	BF소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BF제품 및 장애체험을 위한 소름운영 공무원, 전문가, 학생 대상 교육실시 	-	-
			교육확대			
부서간 연계	BF도시조성센터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BF센터 설치 	-	-	-	-
민간확대방안	-	-	제도지원 및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BF적용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수립 숙박업, 관광업 관련 적용 확대방안 마련 	제도지원 및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BF적용시설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실행

자료 : 진주시(2014).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 및 무장애시설 인증기준 수립 연구

- 진주시에서 무장애 도시 추진을 위해 추진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장애 없는 생활환경” 구축을 통한 살기좋은 복지도시를 구현코자 2012년 7월 9일에 전국 최초로 무장애 도시를 선포함
 - 더불어 잘 사는 ‘살기좋은 세상’을 모토로 함
 - 진주시 무장애도시와 관련된 담당부서는 본래 건축과에서 담당하였으나 2013년 3월 4일부터 사회복지과로 이관함
 - 2013년 11월 8일 전국 최초로 「진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함
 - 2014년 11월 13일 「진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시행규칙」 공포
 - 2015년 2월 13일 무장애도시 조성 분야별 중장기 사업계획의 초기계획에 속하는 BF 인증기준과 무장애도시 기본계획을 확정함
 - 2016년 3월 2일 무장애도시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무장애도시 모니터링단’ 구성함
 - 2018년 7월 20일 롯데몰 진주점과 한국시설안전공단 인재교육관은 진주시 무장애(BF)시설을 인증함
 - 2018년 6월 11일~9월 30일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함
 - 2018년 12월 5일 무장애도시 읍면동 평가 실시

〈표 3-12〉 진주시 무장애도시 주요 추진 연혁

시기	내용
2012.07.09.	진주시 무장애 도시 선언
2013.03.04.	시책 주무부서 변경(건축과→사회복지과) 시책 확대 추진
2013.11.08.	「진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공포
2014.11.13.	「진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시행규칙」공포
2015.02.13.	무장애도시 기본계획 및 BF 인증기준 확정
2016.03.02.	무장애도시 모니터링단 구성(70명)
2016.09.29.	무장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민 인식개선 교육
2017.03.23.	진주시 무장애(BF)시설 인증 (롯데몰 진주점, 한국시설안전공단 인재교육관)
2018.06.11. ~ 09.30.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실시
2018.07.20.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전문교육 실시 (건축사 120명 대상)
2018.09.14.	2018년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 (시민 300명 대상)
2018.12.05.	2018년 무장애도시 읍면동 평가

자료 : 진주시 노인장애인과 내부자료

- 진주에서 시행한 무장애도시와 관련된 2018년도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음(진주시 노인장애인과 내부자료)
 - 2018년 행안부 디지털사회혁신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 빅데이터를 활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CCTV시스템 구축
 - 진주시 BF 시설(진주 목공예 전수관) 1개소 인증
 - 국가형 BF 시설 2개소 인증
 - 신진주역세권 지하주차장, 신진주역세권 공원화장실
 - 2018년 지역 정보화 수준진단 우수 지자체 선정
 - 장애인 고령층의 공공시설 활용지원 서비스 분야
 - (선정이유) 무장애도시 홈페이지 운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CCTV시스템 구축 등
 - 진주시 BF 인증 기준 개정(2018. 06.28.)
 - 편의증진법 개정(2018. 02. 09.)에 따라 진주시 BF 인증기준을 개정함
 -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실시
 -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및 제2기 무장애도시 기본계획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하여 진주시 내 1,615개소 대상으로 조사 실시
 - 부서별 시범사업 실시
 - (회계과) 청사 편의시설 설치 : 진주시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재도색, 금산면사무소 회의실 무대 경사로 설치,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중앙 출입문 자동문으로 교체 등
 - (체육진흥과) 진주실내수영장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임산부 주차장 바닥 도색, 장애인 샤워실 및 남자화장실 소변기 손잡이 설치 등
 - (도시계획과) 신진주 역세권 개발 : 신진주역세권 지하 주차장·공원화장실 국가형 BF 인증
 - (균형개발과)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건립 : 국가형 BF 예비인증
 - (건설과) 보도블럭 정비 및 턱낮추기 등 : 서부시장 ~ 삼정빌라·상봉한주 아파트 앞·상봉 주공아파트 ~ 봉안동 사거리 대상
 - (건축과) 건축 허가 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행정 지도 : 민간소규모 건축물(84개소) 편의시설 설치
 - (교통행정과) 저상버스 및 음향신호기 설치 등 : 음향신호기 신규 설치(7개소), 버스정보 안내기 신규 설치(13개소),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장애인 콜 택시) 교체 구매(13대) 등
 - (공원관리과) 볼래로 문화거리 조성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

- 전동휠체어 고속충전기 4개소 신규설치(누계 31개소)
 -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판문동 행정복지센터, 롯데몰 진주점
- 편의시설 관련 공무원 전문성 강화 :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시설 교육 7명 이수
-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실시 : 1회, 300명
- 무장애 힐링 산책로 탐방 및 장애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 혁신도시 공영주차장 ~ 영천강변 ~ 이성자미술관 ~ 혁신도시 탐마트
-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교육 실시
 - 2018년 2월 9일 개정된 장애인 편의증진법 안내 및 BF인증제도 이해 등
- 장애체험장 활성화 : 89회 1,942명
- 무장애 도시 읍면동 위원회 활동 활성화
 - 읍·면·동별 지역특성을 반영한 무장애도시 시책 개발 추진
 - 장애인 주차구역 준수 캠페인, 시민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휠체어 마크 도색용 틀' 무료대여 운영(4식)
- 시민 대상 수동휠체어 무료대여 : 44대(읍·면·동 청사 비치)
- 읍·면·동 청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바닥 도색(27개소)
- 무장애 힐링 산책로 안내지도 제작(5,000부)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친화도시

- 서울특별시 노원구는 민선 7기 과제 중 하나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제안함
 - 장애인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노원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들의 다양한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구(區) 특성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추진하고자 민선 7기 70대 과제 중 29번째 과제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계획함
 - 노원구가 장애인 친화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장애인 권익향상과 복지증진 그리고 장애인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장애인친화도시 노원을 만들기 위해 본격적으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것임
- 노원구 장애인 친화도시의 주요 대상은 장애인과 그 가족이며, 추진방향으로는 지역 내 장애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장애인들이 직접 정책 제안하고 사업발굴에 참여하는 현장중심의 사업 추진,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이해와 인식도를 제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환경조성을 설정함
-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과 '이동권 보장강화', '장애 인식개선' 등 3가지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 사업을 계획함

-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일을 통한 자립지원, 장애인단체 활동 지원, 돌봄 강화, 여가생활 지원, 장애인가족지원, 복지시설 역량강화, 정보접근성 향상 등을 계획함
- 그 중 커리어플러스 센터는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의 개별특성을 반영하여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직업시설로 조성하여 향후 모든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통합 장애인 일자리지원센터'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 대한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여 복지시설 역량을 강화할 것을 계획함
- 장애인들의 소통 및 사회참여 공간을 마련하고, 장애인 가족에 대한 상담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단체 활동 지원센터'와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를 2020년에 설치·운영할 계획임
-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활동 지원 서비스'를 월 80시간 보장하고 유기 및 방임 등의 이유로 긴급 입소가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돌봄 체계를 강화할 계획임
- 장애인들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노원형 지역사회복지시책 및 정부시책을 안내하는 장애인복지시책 안내 책자를 발간할 예정임
- '무장애 숲길 탐방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가족과 함께하는 중랑천 워터파크 물놀이 행사', '우리동네 무장애 놀이터 조성' 등의 여가생활 지원을 계획함
- '이동권 보장강화'를 위하여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 바우처택시 지원 사업'과 '무장애 보도 정비 사업'을 시행할 예정임
-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친화 시설로의 인식 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시설 명칭변경' 사업을 지원을 계획함

〈표 3-13〉 노원구 장애인 친화 도시 계획

정책과제		내용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일을 통한 자립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리어플러스 센터 유치 - 서울시 공모사업,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기회 제공 - 통합 장애인 일자리지원센터로 확대 운영
	장애인단체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단체 활동 지원센터(가칭) 설치 및 운영 - 유형별 장애인 단체 사무실·회의실 등 소통 공간 제공으로 장애인들의 활발한 사회참여 기반 마련
	돌봄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긴급 돌봄사업 - 긴급돌봄·입소 대상 발생시 관내 거주시설의 유휴공간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활동보조 사업

정책과제	내용
여가생활 지원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서비스 월 80시간 보장
	• 무장애 숲길 탐방 프로그램 「숲과의 만남」 운영 - 관내 산림 인프라 및 프로그램 활용, 이동 차량·숲해설사 지원
	• 장애인 가족과 함께하는 중랑천 워터파크 물놀이 행사 - 7·8월 각1회 워터파크 휴장일에 물놀이 행사 진행
	•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공간 조성('19서울시참여예산활동) - '우리동네 무장애 놀이터' 및 '점핑점핑 신나는 놀이터' 조성 ※ 아동청소년과, 생활체육과 연계
장애인 가족지원	•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서울시 공모사업 지원 계획 수립
복지시설 역량강화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 대한 경영 컨설팅 지원 -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해 운영개선 지원
정보접근성 향상	• 장애인 복지시책 안내 책자 발간 - 노원형 지역사회복지시책 및 정부시책 안내 ※ 음성안내 "보이스 아이" 기능 추가
이동권 보장강화	• 장애인 바우처택시 지원 사업 - 서울시 지원에서 제외된 장애유형으로 이용 대상 확대 실시 ※ 2019 시 계획과 연계, 별도 계획 수립
	• 무장애 보도 정비 사업 - 2018 장애인복지타운 보행환경개선사업 실시 ※ 보행환경 개선 지역 발생시 추가 시행
장애 인식개선	• 장애인복지시설 명칭변경 지원 - 장애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친화 시설로 인식 변화 도모

자료 : 노원구(2018). 노원구 민선7기 70대 과제

- 노원구에서는 장애인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TF와 장애인 친화도시 민·관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임
 - 장애인 친화도시 노원을 만들기 위해 부서 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TF를 구성하여 팀별 사업검토 및 실현방안을 모색함
 - 장애인복지위원회 민간위원이 겸임으로 장애인친화도시 민·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애인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제안 및 자문의 역할을 담당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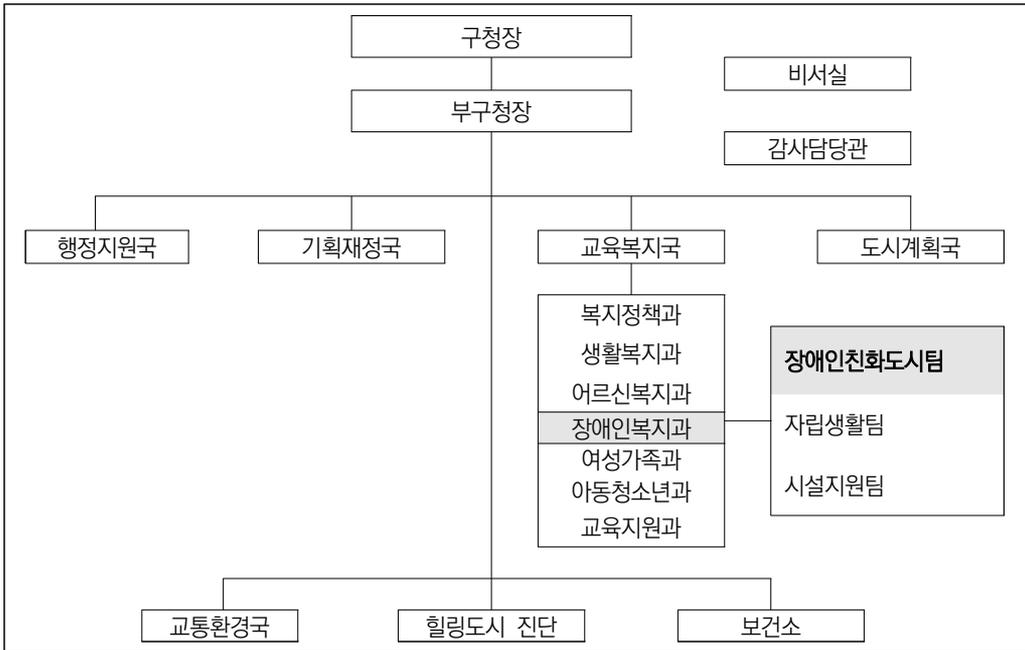
〈표 3-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친화도시 민·관 추진위원회 구성 계획

구분	내용	
위원회	구성	장애인복지위원회 민간위원 겸임으로 구성
	역할	장애인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제안 및 문제점 해결 자문
	활동	정기회의 개최 및 현장답사 등

자료 : 노원구(2018). 노원구 민선7기 70대 과제

- 노원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담당부서는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친화도시팀에서 담당함

〈그림 3-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친화도시 담당부서



자료 : 노원구청 홈페이지(<http://www.nowon.kr/dpt/dpt.jsp?mid=661201>)

- 장애인친화도시팀은 팀장 1명, 팀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친화도시, 장애인편의시설 건축협의,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등의 사업을 담당함

〈표 3-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과 담당업무 및 인력현황(2019.5.1.)

조직	담당업무	인력 현황	
		팀장	팀원
장애인친화도시팀	- 장애인친화도시, 장애인편의시설 건축협의 -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등	1명	6명
자립생활팀	- 장애등록관리 및 진단검사비 지원 -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명	4명
시설지원팀	-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 - 장애인생활시설(6개소) 운영지원 - 장애인 돌봄가족휴가제사업 지원	1명	4명

자료 : 노원구청 홈페이지(<http://www.nowon.kr/dpt/dpt.jsp?mid=661201>)

(3) 광주광역시 북구 무장애 도시

- 광주광역시는 2019년 2월 12일 「광주광역시 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함
- 광주광역시 북구는 현재 조례만 제정되어 있으며, 중장기적 계획은 미수립된 상황임
 - 단, 구 차원에서 무장애와 관련된 사업들을 단편적으로 시행함
 - 무장애정류장 설치로 시내버스 이용 장애인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통지도과에서 ‘시내버스 무장애정류장 설치사업’을 추진함

〈표 3-16〉 광주광역시 북구 시내버스 무장애정류장 설치사업 추진 내용

정책명	기간	금액	내용
시내버스 무장애정류장 설치사업 추진	2018년 1~7월	59,500천원 (市 보조금)	- 저상버스 경유 승강장 승하차 장애물 제거 - 휠체어 대기석 정비 및 보도경계석 높이 조정 등

자료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 광주광역시는 무장애도시 추진을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이 적극적이라는 점이 특징임
 - 2018년 10월 30일 시민단체인 ‘무장애북구만들기 시민운동본부’를 발대식하여 무장애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의 행사를 진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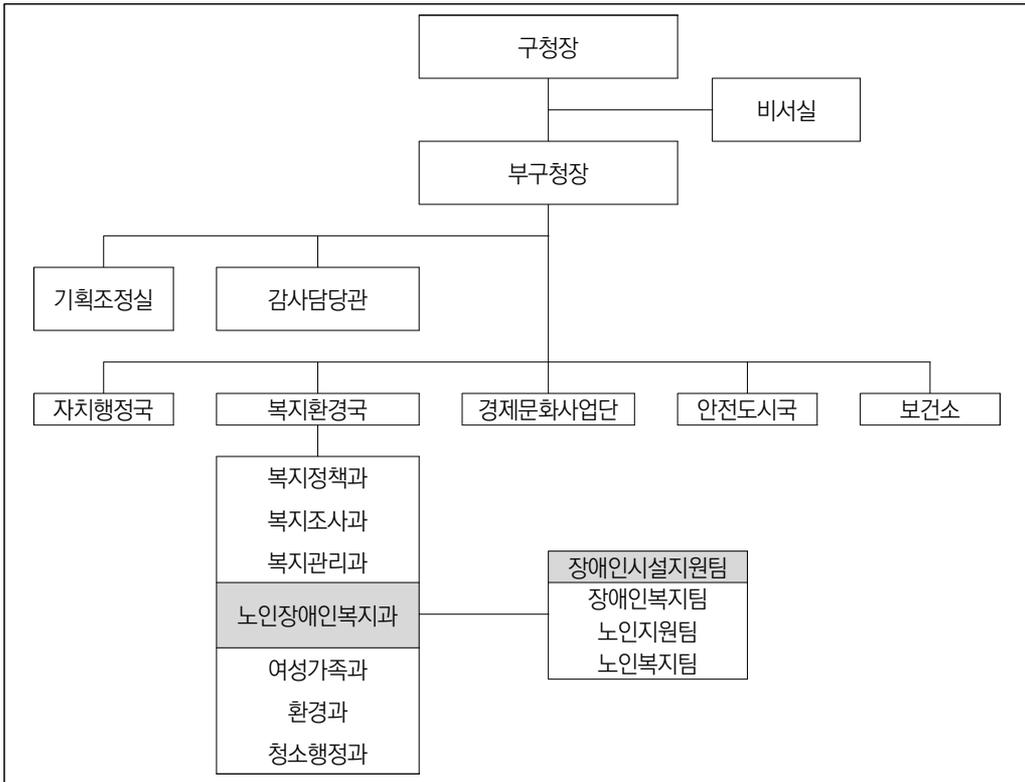
〈그림 3-15〉 광주광역시 북구 무장애도시 환경만들기 캠페인



자료 : http://www.ibnews.or.kr/sub_read.html?uid=45943

- 북구의 무장애도시는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시설지원팀에서 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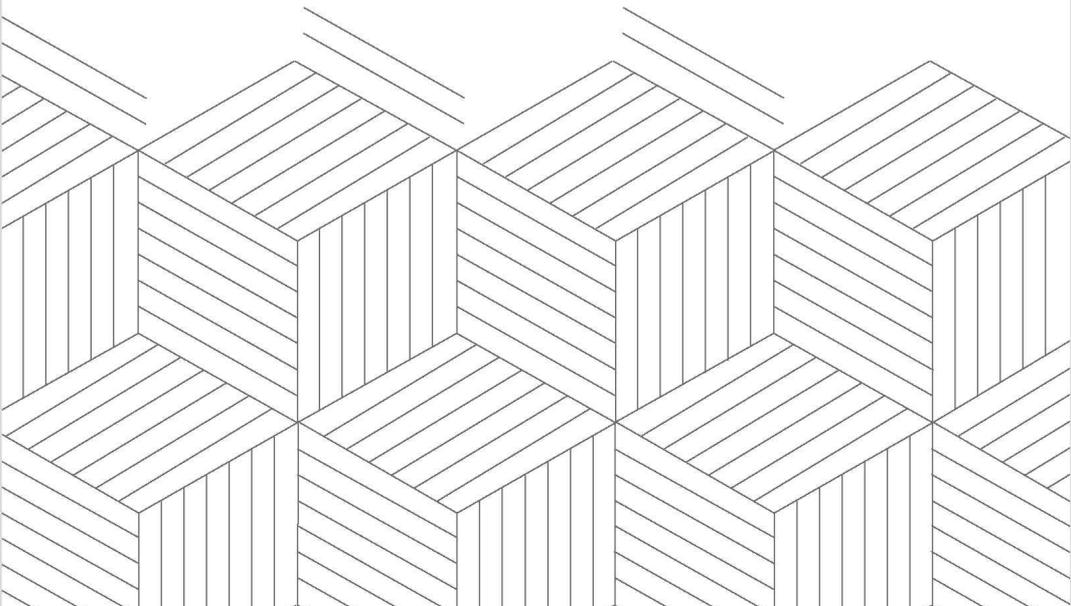
〈그림 3-16〉 광주광역시 북구 무장애도시 담당부서



자료 : 광주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제4장 수원시 무장애도시 관련 실태 및 욕구조사

- 제1절 장애인 대상 설문조사
- 제2절 수원시민 대상 설문조사
- 제3절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제4장 수원시 무장애도시 관련 실태 및 욕구조사

제1절 장애인 대상 설문조사

1. 조사개요

- 조사목적
 - 무장애도시와 관련된 수원지역의 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장애로 인해 도시전반에서 장애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집단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표본할당
 - 장애인 대상 설문조사의 모집단은 2018년 기준 수원시 등록장애인 42,393명임
 - 표본할당은 모집단인 등록장애인을 신체적 장애인과 정신적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제곱근 비례배분의 방식으로 각각의 비율을 고려하여 300명의 표본을 할당함
 - 신체적장애는 230명, 정신적 장애는 70명으로 하여 총 300명의 표본을 설계함

〈표 4-1〉 장애유형별 표본할당_장애인

(단위 : 명)

계	표본	신체적 장애	표본	정신적 장애	표본
	42,393	300	37,134	230	5,259

- 조사내용
 - 장애인 대상 설문문항은 크게 ‘일반적 특성’, ‘이동 및 교통의 장애’, ‘의사소통의 장애’, ‘기타’와 같이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문항을 구성함
 -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장애유형 및 등급, 장애발생 원인, 거주기간, 학력, 건강상태, 직업유무 등과 같이 개인의 인적사항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함
 - 이동 및 교통의 장애영역은 외출빈도 및 어려움, 이동관련 수원시 여건 및 필요사항과 관련된 내용으로 문항을 구성함

- 의사소통의 장애는 의사소통 기능 정도, 의사소통 방법, 수원지역의 의사소통 관련된 여건,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수원시에 필요한 지원정책 등으로 문항을 구성함
- 기타 영역은 삶의 만족도, 차별관련 경험, 무장애 관련 지원정책의 우선순위 등으로 문항을 구성함

〈표 4-2〉 설문지 문항 구성_장애인

구분	문항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장애 유형 및 등급, 장애발생원인,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최종학력, 건강상태, 직업유무
이동 및 교통의 장애	1달 평균 외출빈도, 외출하지 않는 주된 이유, 이동시 어려움 및 이유, 이동편의를 위한 지원정책
의사소통의 장애	의사소통 가능 정도, 의사소통 방법, 수원시 의사소통 여건, 정보습득 방법, 의사소통 관련 수원시에 필요한 정책 우선순위
기타	삶의 만족도, 인식관련 교육 경험 유무, 수원시 내 차별 경험, 무장애 관련 장애 해결 우선순위, 수원시에 바라는점 및 정책건의

■ 조사 및 분석방법

- 본 설문조사의 구체적인 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수원지역 등록장애인임
- 조사는 사전 교육을 받은 조사자 4명이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대상지를 방문하여 직접 대면설문으로 2019년 5월 29일부터 6월 11일까지 총 3주간 진행함
- 응답설문 중 결측치를 제외한 310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모집단의 장애유형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함

2. 분석결과

■ 인구사회학적 특성

- 장애인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 52.8%(164명), 여성 47.2%(146명)로 남성이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연령은 60대 이상 143명(46.0%), 50대 65명(20.9%), 40대 42명(13.5%), 20대 42명(13.7%), 30대 18명(5.9%)의 순으로 나타남
-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47.8%(148명)로 가장 높음
- 거주지역은 권선구(37.8%), 팔달구(23.9%), 장안구(23.2%), 영통구(15.1%)의 순으로 나타남

- 거주기간은 10년 미만인 22.3%(69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20년 이상~30년 미만(21.7%, 67명), 10년 이상~20년 미만(20.6%, 64명), 30년 이상~40년 미만(18.6%, 58명), 40년 이상~50년 미만(10.1%, 31명), 50년 이상~60년 미만(4.4%, 1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직업이 없는 경우가 74.3%, 건강상태는 보통으로 인식한 경우가 42.6%로 나타남
- 장애유형은 신체장애인 중 지체장애인이 29.3%(91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장애 등급은 중증장애인(1~3급)이 78.1%(243명)로 경증 장애인(4~6급)보다 많음
- 장애발생 원인은 출생 후 원인이 73.6%(229명)로 가장 높음

〈표 4-3〉 응답자의 일반특성 및 장애유형_장애인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구분		사례 수(%)	
성별	남성	164 (52.8)	거주 지역	장안구	72 (23.2)	
	여성	146 (47.2)		권선구	117 (37.8)	
	합계	310 (100.0)		팔달구	74 (23.9)	
		영통구		47 (15.1)		
연령	20대	42 (13.7)	거주 기간	합계	310 (100.0)	
	30대	18 (5.9)		10년 미만	69 (22.3)	
	40대	42 (13.5)		10년 이상~20년 미만	64 (20.6)	
	50대	65 (20.9)		20년 이상~30년 미만	67 (21.7)	
	60대 이상	143 (46.0)		30년 이상~40년 미만	58 (18.6)	
합계	310 (100.0)	40년 이상~50년 미만		31 (10.1)		
최종 학력	무학	17 (5.5)		50년 이상~60년 미만	14 (4.4)	
	초등학교 졸업	46 (14.8)		60년 이상	8 (2.4)	
	중학교 졸업	48 (15.5)		합계	310 (100.0)	
	고등학교 졸업	148 (47.8)		직업 유무	있음	80 (25.7)
	대학교 재학 이상	51 (16.4)			없음	231 (74.3)
합계	310 (100.0)	합계			310 (100.0)	
장애 유형	지체장애	91 (29.3)		장애 등급	경증	243 (78.1)
	뇌병변장애	62 (20.0)	중증		68 (21.9)	
	시각장애	8 (2.4)	계		310 (100.0)	
	청각장애	26 (8.5)	발생 원인	선천적 원인	63 (20.4)	
	언어장애	2 (0.5)		출생시 원인	19 (6.0)	
	지적장애	53 (17.0)		출생 후 원인	229 (73.6)	
	자폐성장애	4 (1.4)		합계	310 (100.0)	
	정신장애	19 (6.1)	건강 상태	매우 나쁨	22 (7.2)	
	신장장애	14 (4.6)		나쁨	78 (25.0)	
	심장장애	4 (1.1)		보통	132 (42.6)	
	호흡기장애	11 (3.4)		좋음	60 (19.2)	
	간장애	4 (1.1)		매우 좋음	18 (5.9)	
	안면장애	0 (0.0)		합계	310 (100.0)	
	장루·요루장애	4 (1.1)				
	뇌전증장애	11 (3.4)				
	합계	310 (100.0)				

■ 이동 및 교통의 장애

- 2018년 기준 응답 장애인의 한달 평균 외출 빈도를 묻는 질문에 ‘거의 매일 외출한다’는 응답이 175명으로 전체의 56.3% 비중을 차지함

〈표 4-4〉 한달 평균 외출빈도(2018년 기준)_장애인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거의 외출하지 않음	9 (2.9)
월 3회 이내	13 (4.2)
주 1~2회	44 (14.3)
주 3~4회	69 (22.3)
거의 매일	175 (56.3)
합계	310 (100.0)

- 거의 외출하지 않거나 월 3회 이내로 외출하는 응답자 22명을 대상으로 외출하지 않는 주된 이유를 질문한 결과 1순위는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22.7%)’, 2순위는 ‘경제적 어려움(22.7%)’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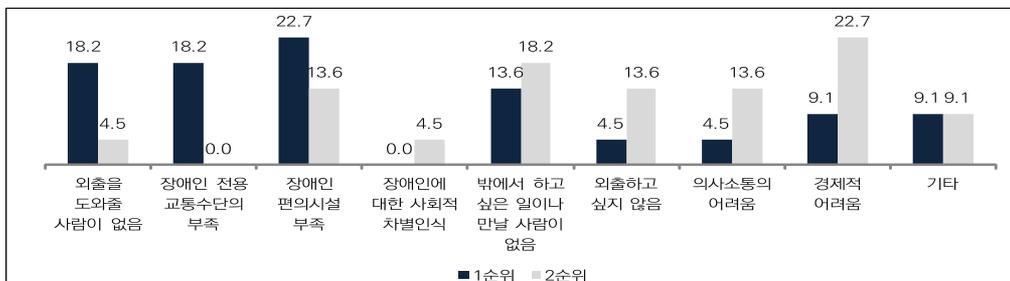
〈표 4-5〉 외출하지 않는 주된 이유_장애인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외출을 도와줄 사람이 없음	4 (18.2)	1 (4.5)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의 부족	4 (18.2)	0 (0.0)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5 (22.7)	3 (13.6)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인식	0 (0.0)	1 (4.5)
밖에서 하고 싶은 일이나 만날 사람이 없음	3 (13.6)	4 (18.2)
외출하고 싶지 않음	1 (4.5)	3 (13.6)
의사소통의 어려움	1 (4.5)	3 (13.6)
경제적 어려움	2 (9.1)	5 (22.7)
기타	2 (9.1)	2 (9.1)
합계	22 (100.0)	22 (100.0)

〈그림 4-1〉 외출하지 않는 주된 이유(1순위, 2순위)_장애인

(단위 : %)



- 이동시 어려움의 정도를 질문한 결과 ‘약간 어렵다’가 33.6%, ‘매우 어렵다’가 17.5%로 나타나 <이동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응답이 총 51.1%를 차지함

〈표 4-6〉 이동시 어려운 정도_장애인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약간 어렵다	104 (33.6)
매우 어렵다	54 (17.5)
전혀 어렵지 않다	59 (19.0)
거의 어렵지 않다	93 (29.9)
합계	31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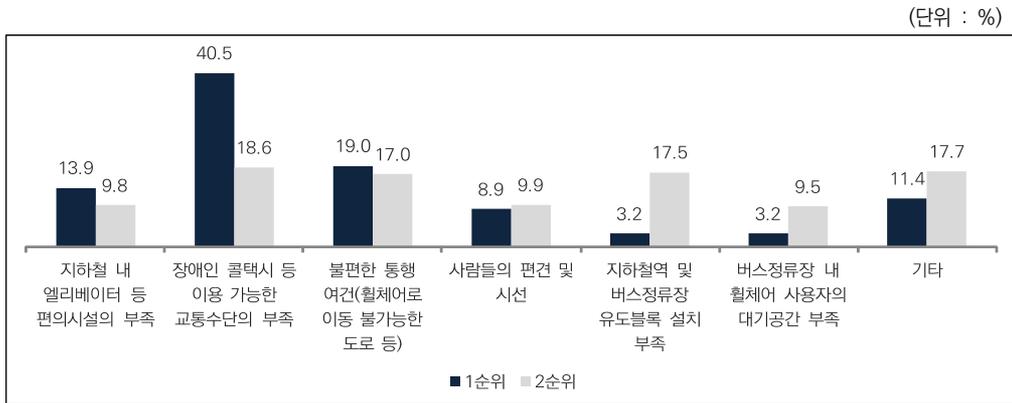
-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동시 겪는 주된 어려움을 1순위와 2순위로 나누어 질문함
 -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한 응답은 ‘장애인 콜택시 등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의 부족’(40.5%, 64명)이었으며 휠체어로 이동 불가능한 도로 등의 ‘불편한 통행 여건’(19.0%, 30명),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의 부족’(13.9%, 22명) 등으로 이동과 관련된 편의시설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음
- 2순위는 ‘장애인 콜택시 등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의 부족’(18.6%, 29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장 유도블록 설치 부족’(17.5%, 28명), ‘불편한 통행 여건(휠체어로 이동 불가능한 도로 등)’(17.0%, 27명)가 뒤를 이어 비중을 차지함

〈표 4-7〉 이동시 겪는 주된 어려움_장애인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의 부족	22 (13.9)	16 (9.8)
장애인 콜택시 등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의 부족	64 (40.5)	29 (18.6)
불편한 통행 여건(휠체어로 이동 불가능한 도로 등)	30 (19.0)	27 (17.0)
사람들의 편견 및 시선	14 (8.9)	16 (9.9)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장 유도블록 설치 부족	5 (3.2)	28 (17.5)
버스정류장 내 휠체어 사용자의 대기공간 부족	5 (3.2)	15 (9.5)
기타	18 (11.4)	28 (17.7)
합계	158 (100.0)	158 (100.0)

〈그림 4-2〉 이동시 겪는 주된 어려움(1순위, 2순위)_장애인



- 교통 및 이동의 경험과 관련하여 체감하는 수원시의 전반적 여건을 묻는 질문에 ‘나쁘다’(매우 나쁨 + ‘나쁨’)고 응답한 답변은 총 9.9%이며, ‘보통이다’는 49.4%, ‘좋다’(좋음 + ‘매우 좋음’)이라 응답한 응답은 총 40.7%를 차지함

〈표 4-8〉 이동 관련 수원시 여건 정도_장애인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매우 나쁨	10 (3.3)
나쁨	20 (6.6)
보통	153 (49.4)
좋음	93 (29.8)
매우 좋음	34 (10.9)
합계	31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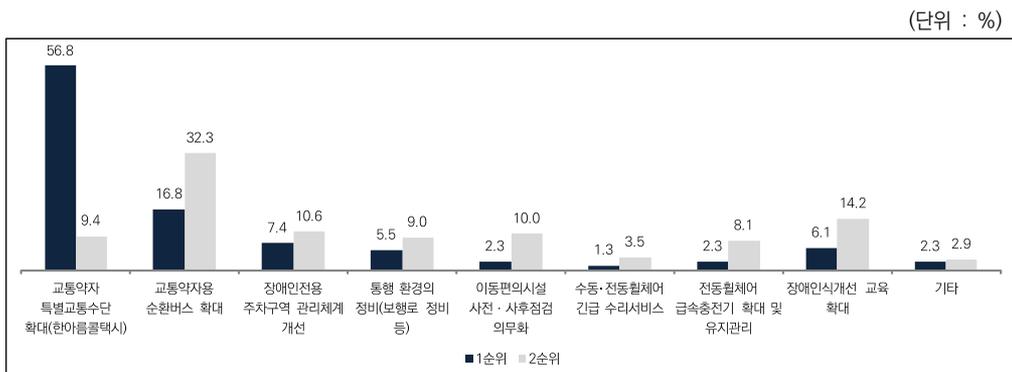
- 이동편의를 위해 수원시에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지원정책을 질문한 결과 1순위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확대(한아름 콜택시)’, 2순위 ‘교통약자용 순환버스 확대’가 가장 높게 나타남(〈표 4-9〉 참조)
 - 1순위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확대(한아름콜택시)’(56.8%, 176명)이었으며, ‘교통약자용 순환버스 확대’(16.8%, 52명),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체계 개선’(7.4%, 2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순위는 ‘교통약자용 순환버스 확대’(32.3%, 100명),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확대(44명, 14.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체계 개선(33명, 10.6%)’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4-9〉 이동편의를 위한 지원 도입 우선순위_장애인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확대(한아름콜택시)	176 (56.8)	29 (9.4)
교통약자용 순환버스 확대	52 (16.8)	100 (32.3)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체계 개선	23 (7.4)	33 (10.6)
통행 환경의 정비(보행로 정비 등)	17 (5.5)	28 (9.0)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 의무화	7 (2.3)	31 (10.0)
수동·전동휠체어 긴급 수리서비스	4 (1.3)	11 (3.5)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확대 및 유지관리	7 (2.3)	25 (8.1)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확대	19 (6.1)	44 (14.2)
기타	7 (2.3)	9 (2.9)
합계	310 (100.0)	310 (100.0)

〈그림 4-3〉 이동편의를 위한 지원 도입 우선순위_장애인



■ 의사소통의 장애

-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가능한 의사소통 정도를 물어본 결과 '스스로 모든 의사표현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62.7%(19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10〉 타인의 도움 없는 의사소통 가능 정도_장애인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의사표현 불가능	17 (5.3)
가족 등 친숙한 사람들에게만 간단한 의사표현 가능	27 (8.6)
스스로 간단한 의사표현 가능	71 (22.8)
스스로 모든 의사표현 가능	195 (62.7)
의사소통 보조기기(AAC)를 이용하여 의사표현 가능	1 (0.5)
합계	310 (100.0)

- 언어를 이용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대방이 본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관한 질문한 결과 ‘의사소통이 어렵지 않음’이라 답한 경우가 58.7%(182명)로 가장 많음
- 보호자 및 활동지원사 등 ‘다른 사람이 대신 말해준다’라 답한 사람이 14.5%(45명)으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기타’(8.6%, 27명), ‘몸짓, 수어, 얼굴표정 등을 사용하여 대화함’(8.4%, 26명), ‘말하다가 중단함’(7.6%, 23명), ‘의사소통 보조기기를 사용하여 대화함’(2.2%, 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4-11〉 의사소통 어려움 직면시 대처방안_장애인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어렵지 않음	182 (58.7)
다른 사람(보호자, 활동지원사 등)이 대신 말해줌	45 (14.5)
몸짓, 수어, 얼굴표정 등을 사용하여 대화함	26 (8.4)
의사소통 보조기기를 사용하여 대화함	7 (2.2)
말하다가 중단함	23 (7.6)
기타	27 (8.6)
합계	310 (100.0)

- 수원시에서 의사소통과 관련한 경험 및 체감도를 질문함
- ‘공공기관 이용시 문의사항에 대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안내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36.5%(113명)가 ‘보통이다’라고 답하였으며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가 각각 46.8%(145명), 16.8%(52명)를 차지함
- ‘수원시에서 발간하는 신문 및 홈페이지의 글씨 크기가 알아보기 쉬운가’에 대한 질문에 ‘보통이다’가 36.7%(114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렇다’가 31.8%(99명), ‘그렇지 않다’가 31.6%(98명)로 나타남
- ‘공공기관에 비치된 안내표지판은 이해하기 쉬운가’에 대한 문항은 ‘그렇다’라 응답한 경우가 48.4%(150명)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가 각각 35.7%(111명), 15.9%(49명)를 차지함
- ‘공무원과의 의사소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무원들은 대처 방안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보통이다’가 40.1%(12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렇다’(34.8%, 107명), ‘그렇지 않다’(25.2%, 78명) 순으로 많은 응답률을 보임
- ‘공무원들이 보완대체의사소통보조기기(AAC)를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보통이다’가 37.0%(115명)를 차지하였으며 ‘그렇지 않다’와 ‘그렇다’가 각각 34.3%(107명)와 28.6%(89명)를 차지함

〈표 4-12〉 수원시 내 의사소통과 관련된 경험 관련 응답_장애인

(단위 : 명, %)

문항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계
공공기관 이용시 문의사항에 대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안내받을 수 있다	52 (16.8)	113 (36.5)	145 (46.8)	310 (100.0)
수원시 발간물(신문) 및 홈페이지의 글씨크기는 알아보기 쉽다	98 (31.6)	114 (36.7)	99 (31.8)	310 (100.0)
공공기관에 비치된 안내표지판은 이해하기 쉽다	49 (15.9)	111 (35.7)	150 (48.4)	310 (100.0)
공무원과의 의사소통 문제 발생시 공무원들은 대처 방안을 알고 있다	78 (25.2)	124 (40.1)	107 (34.8)	310 (100.0)
공무원들은 보완대체의사소통보조기기(AAC)를 알고 있다	107 (34.3)	115 (37.0)	89 (28.6)	310 (100.0)

주 1 :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은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의 값을 합쳐서 제시함

주 2 : 그렇다는 응답률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값을 합쳐서 제시함

- 수원시와 관련한 정보를 습득하는 방법으로는 '사회복지시설(장애인 복지관 등)'이 52.9%(164명)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장애인 단체'가 12.6%(39명)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인터넷 정보 검색'(11.7%, 36명), '언론 매체(신문, 방송)'(11.4%, 36명), '친지, 이웃, 친구'(7.6%, 24명), '기타'(3.7%, 12명) 순임

〈표 4-13〉 수원시 관련 정보 습득 방법_장애인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등)	164 (52.9)
인터넷 정보 검색	36 (11.7)
장애인 단체	39 (12.6)
언론 매체(신문, 방송)	36 (11.4)
친지, 이웃, 친구	24 (7.6)
기타	12 (3.7)
합계	310 (100.0)

-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수원시의 여건 체감 정도를 묻는 문항에 60.0%(186명)는 '보통이다'라 답했으며 ' 좋음'이라고 답한 사람은 20.1%(62명), '매우 좋음'은 9.1%(28명)를 차지하여 긍정적으로 체감하는 응답률은 총 29.2%로 나타남
- '매우 나쁨'과 '나쁨'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각각 3.9%(12명), 6.9%(22명)로, 부정적으로 체감하는 응답률은 총 10.8%로 나타남

〈표 4-14〉 의사소통 관련 수원시 여건 정도_장애인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매우 나쁨	12 (3.9)
나쁨	22 (6.9)
보통	186 (60.0)
좋음	62 (20.1)
매우 좋음	28 (9.1)
합계	310 (100.0)

- 의사소통 장애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원시에 우선적으로 도입해야하는 지원정책에 대하여 1순위와 2순위로 나누어 질문함
 - 1순위 중에서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확대’가 31.9%(99명)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노인·장애인이 읽기 쉬운 설명 및 그림의 안내판 비치’가 28.2%(88명), ‘공무원이 장애인과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가 16.7%(52명)를 차지함
 - 2순위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공무원이 장애인과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교육 실시’(34.2%, 106명)와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확대’(18.5%, 58명)와 ‘공공기관에 의사소통 보조기기 비치’(14.3%, 44명)가 순서대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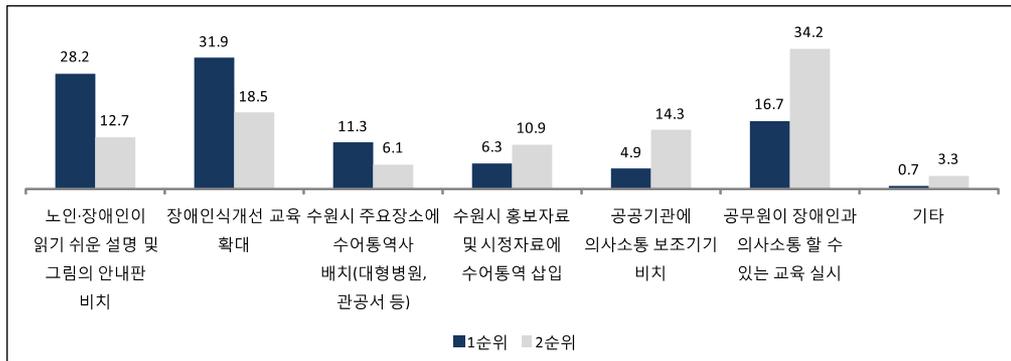
〈표 4-15〉 의사소통을 위한 지원 도입 우선순위_장애인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노인·장애인이 읽기 쉬운 설명 및 그림의 안내판 비치	88 (28.2)	39 (12.7)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확대	99 (31.9)	58 (18.5)
수원시 주요장소에 수어통역사 배치 (대형병원, 관공서 등)	35 (11.3)	19 (6.1)
수원시 홍보자료 및 시정자료에 수어통역 삽입	20 (6.3)	34 (10.9)
공공기관에 의사소통 보조기기 비치	15 (4.9)	44 (14.3)
공무원이 장애인과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교육 실시	52 (16.7)	106 (34.2)
기타	2 (.7)	10 (3.3)
합계	310 (100.0)	310 (100.0)

〈그림 4-4〉 의사소통을 위한 지원 도입 우선순위_장애인

(단위 : %)



■ 기타

- 장애 인식 및 인권 교육에 대한 경험은 없는 응답자가 52.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표 4-16〉 장애 인식관련 교육(장애 인식 및 인권교육) 경험_장애인

(단위 : 명, %)

합계	있다	없다
310 (100.0)	147 (47.5)	163 (52.5)

- 수원시에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장애로 인해 겪은 불편함에 관하여 질문함
 - 여가 및 문화생활시 장애로 인하여 불편함을 경험한 적이 없는 응답자가 56.2%(174명)이었으며, 여가 및 문화생활을 경험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2.9%(9명)로 나타남
 - 이동 및 교통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총 152명(49.1%)로 나타났으며, '불편하지 않다'는 총 147명인 47.3%로 나타남
 -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70.8%(220명)이었으며, '불편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26.8%(83명)로 나타남
 - 복지기관을 이용하기 '불편하지 않다'는 응답은 80.7%(251명)이었으며 17.6%(55명)는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시청 및 주민센터 등과 같은 행정기관 이용 시 76.1%(236명)의 응답자가 '불편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9.9%(62명)가 장애로 인해 행정기관을 잘 이용하지 않아 '해당없음'으로 응답함

- 대중교통 이용의 경우 불편함을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48.9%(152명)을 차지하였으며 43.7%(136명)는 불편하지 않다고 응답함
- 식당, 커피숍, 상점 등과 같은 상업시설 이용 시 ‘불편하지 않다’ 라고 응답한 사람은 60.2%(187명)이었으며, ‘불편하다’는 37.7%(117명)를 차지함
- 직장생활에서의 불편함과 관련해서는 ‘불편하지 않다’는 응답이 50.7%(157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장애발생 이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직업을 가진 적이 없어 ‘해당 없음’이라 응답한 사람이 31.0%(96명)로 다른 문항보다 높게 나타남

〈표 4-17〉 수원시 기반시설 이용의 불편함 경험_장애인

(단위 : 명, %)

구분	불편하지 않음	불편함	해당없음	합계
여가 및 문화생활	174 (56.2)	127 (41.0)	9 (2.9)	310 (100.0)
이동 및 교통시설 이용	147 (47.3)	152 (49.1)	11 (3.6)	310 (100.0)
의료기관 이용	220 (70.8)	83 (26.8)	7 (2.4)	310 (100.0)
복지기관 이용	251 (80.7)	55 (17.6)	5 (1.7)	310 (100.0)
행정기관(시청, 주민센터 등)	12 (4.0)	236 (76.1)	62 (19.9)	310 (100.0)
대중교통	136 (43.7)	152 (48.9)	23 (7.4)	310 (100.0)
상업시설(식당, 커피숍, 상점 등)	187 (60.2)	117 (37.7)	7 (2.1)	310 (100.0)
직장	157 (50.7)	57 (18.4)	96 (31.0)	310 (100.0)

- ‘수원시 내 장애로 인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의 48.5%(151명)가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51.6%(160명)는 ‘없다’라고 응답함
 - 여가 및 문화생활 체험시 장애로 인해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 한 사람은 34.4%(107명)이었으며, ‘없다’로 응답한 사람은 65.1%(202명)로 나타남
 - 이동 및 교통시설을 이용하며 차별을 경험한 적이 ‘없다’라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66.4%이었으며, 차별 경험이 ‘있다’는 31.7%로 나타남
 - 의료기관 이용 시 80.0%(248명)가 차별 경험이 ‘없다’라 응답하였으며 19.7%(61명)는 차별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함
 - 복지기관 이용 시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84.4%(262명)로 나타났으며, 15.6%(48명)는 차별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함
 - 시청 및 주민센터 등과 같은 행정기관 이용 시 차별경험이 ‘있다’라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19.0%(59명)를 차지하였으며, 차별 경험이 ‘없다’는 80.0%(248명)를 차지함

- 대중교통 이용 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59.4%(185명), 차별 경험이 '있다'는 34.3%(107명)로 나타났으나 장애 및 건강상의 이유로 대중교통 외에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대중교통 경험이 없는 경우는 전체의 6.2%(19명)를 차지함
- 식당과 커피숍 및 상점 등의 상업시설을 이용하며 차별을 경험한 사람은 전체의 33.4%(104명)를 차지하였으며, 66.1%(205명)은 차별 경험이 '없다'고 응답함
- 직장생활에서 장애로 인해 차별을 경험한 사람은 전체의 18.2%(57명)를 차지하였고, 52.5%(163명)는 차별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장애발생 이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직업을 가진 적이 없어 '해당없음'이라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29.3%(91명)를 차지함

〈표 4-18〉 수원시 내 차별경험 유무_장애인

(단위 : 명, %)

구분	없음	있음	해당없음	합계
수원시 내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	160 (51.6)	151 (48.5)	- -	310 (100.0)
여가 및 문화생활	202 (65.1)	107 (34.4)	2 (0.5)	310 (100.0)
이동 및 교통시설 이용	206 (66.4)	98 (31.7)	6 (1.9)	310 (100.0)
의료기관 이용	248 (80.0)	61 (19.7)	1 (0.2)	310 (100.0)
복지기관 이용	262 (84.4)	48 (15.6)	- -	310 (100.0)
행정기관(시청, 주민센터 등)	248 (80.0)	59 (19.0)	3 (1.0)	310 (100.0)
대중교통	185 (59.4)	107 (34.3)	19 (6.2)	310 (100.0)
상업시설(식당, 커피숍, 상점 등)	205 (66.1)	104 (33.4)	2 (0.5)	310 (100.0)
직장	163 (52.5)	57 (18.2)	91 (29.3)	310 (100.0)

-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 중 평균 6.3점으로 나타났으며, '수원시가 타 지역에 비해 장애인이 거주하기 좋은가'에 대한 체감도는 10점 만점 중 평균 7.4점으로 삶의 만족도 보다 높게 나타남

〈표 4-19〉 타 지역과 비교한 수원시 거주 만족도_장애인

(단위 : 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원시민의 삶의 만족도	6.3	2.5
수원시 거주 만족도	7.4	2.2

주 : 1(매우 불만족) ~ 10(매우 만족)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 무장애와 관련한 4가지 영역 중 무장애도시 수원을 조성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를 질문한 결과, ‘교통 및 이동의 장애(39.4%)’, ‘시설물 접근 및 편의시설의 장애(30.5)’, ‘차별인식의 장애(15.5%)’, ‘의사소통의 장애(14.6%)’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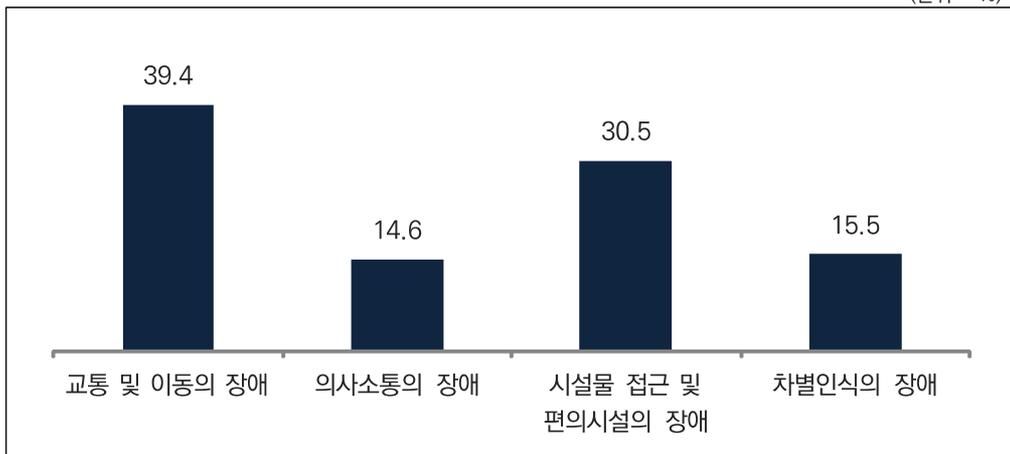
〈표 4-20〉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_장애인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교통 및 이동의 장애	122 (39.4)
의사소통의 장애	45 (14.6)
시설물 접근 및 편의시설의 장애	95 (30.5)
차별인식의 장애	48 (15.5)
합계	310 (100.0)

〈그림 4-5〉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_장애인

(단위 : %)



제2절 수원시민 대상 설문조사

1. 조사개요

- 조사목적
 - 수원시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제거하고 모두가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도시(무장애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수원시민이 인식하는 수원 지역의 도시환경 및 장애여건의 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함

■ 표본할당

- 수원시 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추출을 시행하여 310명의 응답자를 선정하였으며, 결측값이 발생한 7부를 제외한 303부의 유효 표본을 최종 분석함

■ 조사내용

- 무장애 환경과 관련한 영역을 구분하여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장애와 관련한 문항을 수원시의 현황에 맞추어 수정한 후 해당하는 각 영역에 배치하여 설문지를 구성함
 - 설문문항은 일반적 특성, 이동 및 교통의 장애, 의사소통의 장애, 인식의 장애, 기타로 구분됨

〈표 4-21〉 설문문항 구성_수원시민

구분	문항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거주기간, 최종학력, 평소 건강상태, 가족 구성원 중 장애인 유무, 직업 유무 등
이동 및 교통의 장애	외출시 이용 교통수단, 외출 빈도 및 어려움, 이동 관련 수원시 여건 및 필요사항
의사소통의 장애	수원시 의사소통 여건, 정보습득 방법, 의사소통 관련 수원시에 필요한 정책 우선순위
인식의 장애	장애인과 직접적 접촉 정도, 가족이 장애인과의 동반 교육시 찬성 여부, 장애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 인식 순위,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경험 유무, 장애 인식 개선 교육 필요성 인식 정도
기타	삶의 만족도, 수원시 거주 만족도, 수원시의 무장애 도시를 위한 환경 인식 정도, 수원시 내 차별 경험, 무장애 관련 장애 해결 우선순위, 수원시에 바라는 점 및 정책건의

■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 조사는 자기기입식으로 하여 5월 29일부터 6월 11일까지 약 3주간 진행함

2. 분석결과

■ 인구사회학적 특성

- 전체 응답자 중 76.6%(232명)는 여성이었으며, 23.4%(71명)는 남성 응답자임
- 응답자의 연령은 60대 이상이 29.0%(8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28.7%, 87명), 40대(23.8%, 72명), 30대(11.6%, 35명), 20대 이하(7.0% 21명) 순으로 나타남
- 최종학력은 ‘대학교 재학 이상’ 이 58.1%(176명)이었으며, 현재 직업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74.3%(231명)으로 나타남

-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의 88.1%(267명)는 없다고 응답함
- 응답자의 거주 지역은 장안구가 48.2%(146명)로 가장 많았으며, 수원시 거주기간은 20년 미만인 25.4%(77명)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평소 건강을 묻는 질문에 전체의 47.9%(145명)이 ‘보통’이라 응답하였으며, 좋다(‘좋음’ + ‘매우 좋음’)고 답한 응답자는 39.9%(121명), 나쁘다(‘나쁨’ + ‘매우 나쁨’)고 답한 응답자는 12.2%(37명)임

〈표 4-22〉 일반인 응답자의 일반특성_수원시민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구분		사례 수(%)
성별	남성	71 (23.4)	거주 지역	장안구	146 (48.2)
	여성	232 (76.6)		권선구	51 (16.8)
	합계	303 (100.0)		팔달구	70 (23.1)
연령	20대 이하	21 (7.0)		영통구	36 (11.9)
	30대	35 (11.6)		합계	303 (100.0)
	40대	72 (23.8)	거주 기간	10년 미만	72 (23.8)
	50대	87 (28.7)		20년 미만	77 (25.4)
	60대 이상	88 (29.0)		30년 미만	55 (18.2)
합계	303 (100.0)	40년 미만		51 (16.8)	
최종 학력	무학	5 (1.7)		50년 미만	29 (9.6)
	초등학교 졸업	22 (7.3)	50년 이상	19 (6.3)	
	중학교 졸업	18 (5.9)	합계	303 (100.0)	
	고등학교 졸업	82 (27.1)	평소 건강	매우 나쁨	9 (3.0)
	대학교 재학 이상	176 (58.1)		나쁨	28 (9.2)
합계	303 (100.0)	보통		145 (47.9)	
직업 유무	있음	80 (25.7)		좋음	104 (34.3)
	없음	231 (74.3)		매우 좋음	17 (5.6)
	합계	310 (100.0)	합계	303 (100.0)	
장애인 가족 유무	있음	36 (11.9)			
	없음	267 (88.1)			
	합계	303 (100.0)			

■ 이동 및 교통의 장애

- 외출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1순위와 2순위로 나누어 질문함
 - 1순위로 뽑은 주된 교통수단은 자가용이 35%(106명)로 가장 많았으며, 2순위 교통수단은 ‘지하철’이 33.3%(101명)로 가장 많음

〈표 4-23〉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1순위, 2순위)_수원시민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도보	45 (14.9)	54 (17.8)
버스	95 (31.4)	97 (32.0)
지하철	49 (16.2)	101 (33.3)
택시	2 (0.7)	26 (8.6)
자가용	106 (35.0)	19 (6.3)
자전거	4 (1.3)	5 (1.7)
기타	1 (0.3)	1 (0.3)
합계	303 (100.0)	303 (100.0)

- 2018년 기준의 한 달 평균 외출 빈도를 묻는 질문에 과반이 넘는 59.7%(181명)가 ‘거의 매일 외출한다’고 답하였으며, ‘주3~4회 외출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21.1%(64명), ‘주 1~2회 외출한다’는 13.2%(40명)로 나타남
- ‘월 3회 이내 외출한다’와 ‘거의 외출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5.6%(17명)와 0.3%(1명)로 나타남

〈표 4-24〉 한 달 평균 외출 빈도(2018년 기준)_수원시민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거의 외출하지 않음	1 (0.3)
월 3회 이내	17 (5.6)
주 1~2회	40 (13.2)
주 3~4회	64 (21.1)
거의 매일	181 (59.7)
합계	303 (100.0)

- 한 달 평균 외출 빈도를 묻는 질문에 ‘거의 외출하지 않는다’와 ‘월 3회 이내’라고 답한 18명을 대상으로 외출하지 않는 주된 이유에 대해 추가로 질문함
- 외출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 중 ‘외출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전체의 55.6%(10명)를 차지함

〈표 4-25〉 외출하지 않는 주된 이유_수원시민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외출을 도와줄 사람이 없음	0 (0.0)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 부족	1 (5.6)
편의시설 부족	2 (11.1)
외출하고 싶지 않음	10 (55.6)
밖에서 하고 싶은 일이나 만날 사람이 없음	1 (5.6)
기타	4 (22.2)
합계	18 (100.0)

- 이동시 어려움을 어느 정도 겪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혀 어렵지 않다'가 49.5%(150명), '거의 어렵지 않다'가 32.7%(99명)로 나타나 <이동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총 82.2%를 차지함
- '약간 어렵다'와 '매우 어렵다'라 답한 사람은 각각 15.2%(46명), 2.6%(8명)로 나타나 응답자 중 <이동시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답한 사람은 총 17.8%를 차지함

〈표 4-26〉 이동 시 어려운 정도_수원시민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약간 어렵다	46 (15.2)
매우 어렵다	8 (2.6)
전혀 어렵지 않다	150 (49.5)
거의 어렵지 않다	99 (32.7)
합계	30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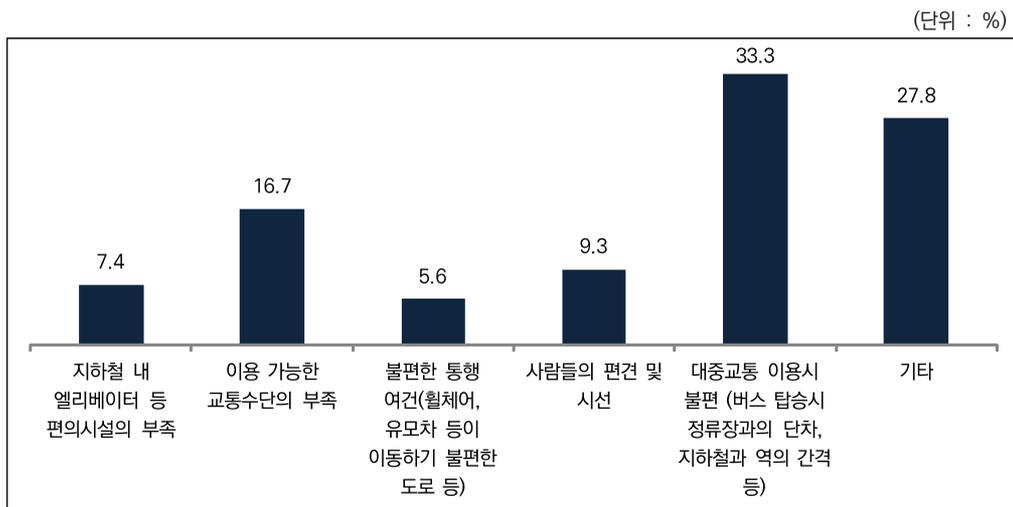
- <이동시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한 54명을 대상으로 이동시 겪는 주된 어려움이 무엇인지 추가로 질문함
- 이동의 주된 어려움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응답은 '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함'으로 전체의 33.3%(18명)를 차지하였으며 뒤를 이어 '기타'(27.8%, 15명),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의 부족'(16.7%, 9명), '사람들의 편견 및 시선'(9.3%, 5명),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의 부족'(7.4%, 4명), '불편한 통행 여건'(5.6%, 3명) 순으로 나타남

〈표 4-27〉 이동 시 겪는 주된 어려움_수원시민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의 부족	4 (7.4)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의 부족	9 (16.7)
불편한 통행 여건(휠체어로 이동 불가능한 도로 등)	3 (5.6)
사람들의 편견 및 시선	5 (9.3)
대중교통 이용시 불편 (버스 탑승시 정류장과의 단차, 지하철과 역의 간격 등)	18 (33.3)
기타	15 (27.8)
합계	54 (100.0)

〈그림 4-6〉 이동시 겪는 주된 어려움_수원시민



- 교통 및 이동의 경험과 관련하여 체감하는 수원시의 전반적 여건을 묻는 질문에 ‘나쁘다(‘매우 나쁨’ + ‘나쁨’)’이라 응답한 답변은 총 7.2%(22명)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는 55.4%(168명), ‘좋다(‘ 좋음’ + ‘매우 좋음’)’이라 응답한 답변은 총 40.3%(113명)를 차지함

〈표 4-28〉 이동 관련 수원시 여건 체감 정도_수원시민

(단위 : 명, %)

계	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
303 (100.0)	4 (1.3)	18 (5.9)	168 (55.4)	102 (33.7)	11 (3.6)

- 이동편의를 위하여 수원시에 우선적으로 도입해야할 지원정책을 질문한 결과, '통행 환경의 정비'가 가장 시급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108명으로 전체의 35.6%를 차지함
 - 그 다음으로 '저상버스 확대'가 18.2%(55명),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확대'와 '이동편의 시설 확대'가 각각 16.5%(50명)를 차지하였고,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확대'와 '기타'가 각각 9.9%(30명), 3.3%(10명)로 뒤를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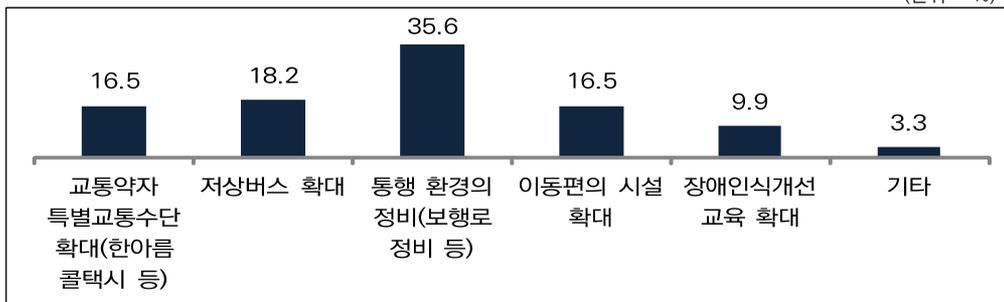
〈표 4-29〉 이동편의와 관련하여 수원시에 필요한 지원 도입 우선순위_수원시민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확대(한아름콜택시)	50 (16.5)
저상버스 확대	55 (18.2)
통행 환경의 정비(보행로 정비 등)	108 (35.6)
이동편의 시설 확대	50 (16.5)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확대	30 (9.9)
기타	10 (3.3)
합계	303 (100.0)

〈그림 4-7〉 이동편의와 관련하여 수원시에 필요한 지원 도입 우선순위_수원시민

(단위 : %)



- 수원시에서의 의사소통과 관련한 경험 및 체감 정도를 질문함
 - '공공기관 이용 시 문의사항에 대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안내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60.7%(184명)를 차지하였으며, '보통이다'는 32.3%(98명), '그렇지 않다'는 7.0%(21명)로 나타남
 - '신문과 같은 수원시 발간물 및 홈페이지의 글씨 크기는 알아보기 쉬운가'에 대한 질문에 56명이 '그렇다'고 답하여 전체의 51.5%를 차지하였고, '보통이다'와 '그렇지 않다'가 각각 36.3%(110명), 12.2%(37명)로 나타남
 - '시청 및 동사무소와 같은 공공기관에 비치된 안내표지판은 이해하기 쉬운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사람은 195명으로 전체의 64.4%로 나타남

〈표 4-30〉 수원시 내 의사소통과 관련된 경험 관련 응답_수원시민

(단위 : 명, %)

문항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계
공공기관 이용 시 문의사항에 대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안내받을 수 있다	21 (7.0)	98 (32.3)	184 (60.7)	303 (100.0)
수원시 발간물(신문) 및 홈페이지의 글씨크기는 알아보기 쉽다	37 (12.2)	110 (36.3)	56 (51.5)	303 (100.0)
공공기관에 비치된 안내표지판은 이해하기 쉽다	27 (8.9)	81 (26.7)	195 (64.4)	303 (100.0)

주 1 : 그렇지 않다는 응답 값은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의 값을 합쳐서 제시함

2 : 그렇다는 응답 값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값을 합쳐서 제시함

- 수원시와 관련한 정보를 습득하는 수단을 묻은 결과 '인터넷 정보 검색'이라 답한 응답자는 137명으로 전체의 45.2%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신문 및 방송과 같은 '언론 매체'에서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은 21.8%(66명)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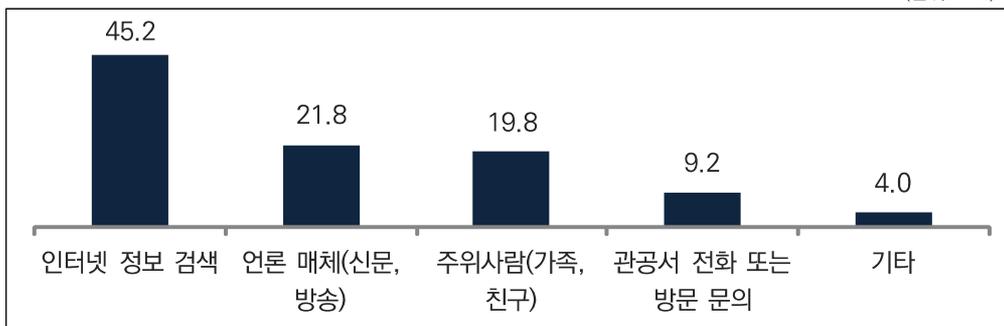
〈표 4-31〉 수원시 관련 정보 습득 수단_수원시민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인터넷 정보 검색	137 (45.2)
언론 매체(신문, 방송)	66 (21.8)
주위사람(친지, 이웃, 친구)	60 (19.8)
관공서 전화 또는 방문 문의	28 (9.2)
기타	12 (4.0)
합계	303 (100.0)

〈그림 4-8〉 수원시 관련 정보 습득 수단_수원시민

(단위 : %)



- 의사소통과 관련한 수원시의 전반적인 여건 체감 정도를 묻는 문항에 전체 응답자의 55.1%인 167명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 좋음'과 '매우 좋음'이 각각 31.7%(96명), 6.3%(19명)로 나타나 의사소통 여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체감한 응답자는 전체의 40.0%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나쁨'과 '매우 나쁨'으로 답한 응답자 7.0% 수원시의 의사소통 여건에 대해 부정적으로 체감하고 있음

〈표 4-32〉 의사소통 관련 수원시 여건 체감 정도_수원시민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매우 나쁨	5 (1.7)
나쁨	16 (5.3)
보통	167 (55.1)
좋음	96 (31.7)
매우 좋음	19 (6.3)
합계	303 (100.0)

- 수원시의 의사소통 편의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도입해야할 필요가 있는 정책 및 지원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답변은 '읽기 쉬운 설명 및 그림의 안내판 비치'로 전체의 38.3%(116명)를 차지하였으며 '수원시 주요 장소에 안내원 배치'가 19.8%(60명),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확대'가 19.1%(58명)로 뒤를 이어 나타남
 - '공무원이 장애인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교육 실시'는 11.2%(34명)로 나타났고, '수원시 홍보자료 및 시정자료에 수어통역 삽입'과 '공공기관에 의사소통 보조기기 비치', '기타'가 각각 5.9%(18명), 4.3%(13명), 1.3%(4명)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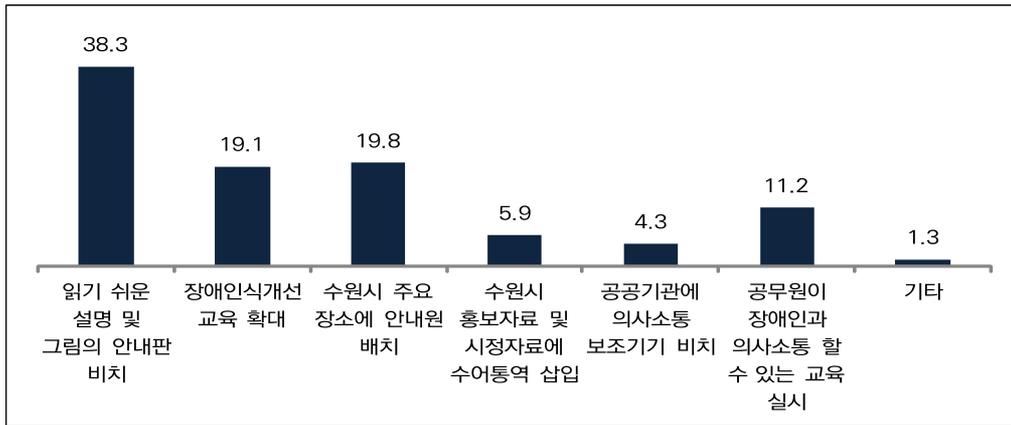
〈표 4-33〉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수원시에 필요한 지원 도입 우선순위_수원시민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읽기 쉬운 설명 및 그림의 안내판 비치	116 (38.3)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확대	58 (19.1)
수원시 주요 장소에 안내원 배치	60 (19.8)
수원시 홍보자료 및 시정자료에 수어통역 삽입	18 (5.9)
공공기관에 의사소통 보조기기 비치	13 (4.3)
공무원이 장애인과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교육 실시	34 (11.2)
기타	4 (1.3)
합계	303 (100.0)

〈그림 4-9〉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수원시에 필요한 지원 도입 우선순위_수원시민

(단위 : %)



■ 인식의 장애

- 일상생활에서 우연을 포함한 장애인과의 직접적인 접촉 빈도를 묻는 질문에 전체의 38.0%를 차지하는 115명이 '다소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37.3%인 113명은 '거의 없다'고 응답함
- '자주 있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22.4%(68명)였으며, 접촉이 '전혀 없다'고 답한 사람은 2.3%(7명)로 나타남

〈표 4-34〉 장애인과의 직접 접촉 경험 정도_수원시민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자주 있다	68 (22.4)
다소 있다	115 (38.0)
거의 없다	113 (37.3)
전혀 없다	7 (2.3)
합계	303 (100.0)

- 설문 응답자 당사자의 가족이 장애인과 함께 교육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서의 찬성 여부를 질문함
 - '찬성(찬성한다 + 적극 찬성한다)' 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총 73.6%로 나타남
 - '그저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75명인 24.8%로 나타났으며, '부정적이다'와 '아주 부정적이다'라고 답한 사람은 각각 1.3%(4명)과 0.3%(1명)인 것으로 나타남

〈표 4-35〉 본인의 가족이 장애인과의 교육 시 찬성 여부_수원시민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적극 찬성한다	64 (21.1)
찬성한다	159 (52.5)
그저 그렇다	75 (24.8)
부정적이다	4 (1.3)
아주 부정적이다	1 (0.3)
합계	303 (100.0)

-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고충에 대한 인지 정도를 알아보기로 '장애인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라 예상하는가'로 1순위와 2순위로 나누어 질문함
 - 1순위 응답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사회적 차별'로 전체의 39.3%(119명)로 나타났으며, '일자리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은 각각 15.8%(48명)와 13.9%(42명)를 차지함
 - 2순위 답한 항목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교통 및 이동의 어려움'(17.2%, 52명)이었으며, '경제적 어려움'(15.8%, 48명), '편의시설 부족'(15.5%, 47명), '일자리 부족'(14.9%, 45명), '교육시설 부족'(12.9%, 39명)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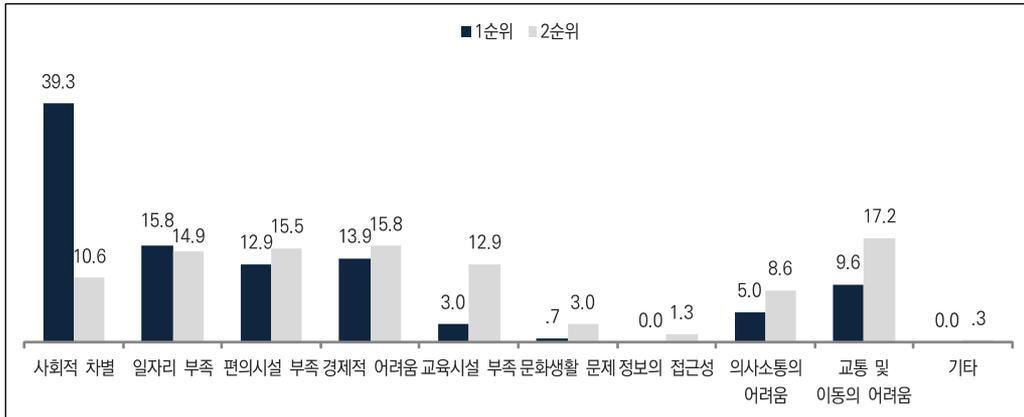
〈표 4-36〉 장애인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예상 순위_수원시민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사회적 차별	119 (39.3)	32 (10.6)
일자리 부족	48 (15.8)	45 (14.9)
편의시설 부족	39 (12.9)	47 (15.5)
경제적 어려움	42 (13.9)	48 (15.8)
교육시설 부족	9 (3.0)	39 (12.9)
문화생활 문제	2 (0.7)	9 (3.0)
정보의 접근성	0 (0.0)	4 (1.3)
의사소통의 어려움	15 (5.0)	26 (8.6)
교통 및 이동의 어려움	29 (9.6)	52 (17.2)
기타	0 (0.0)	1 (0.3)
합계	303 (100.0)	303 (100.0)

〈그림 4-10〉 장애인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예상 순위_수원시민

(단위 : %)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필요성을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과반을 넘는 55.1%(167명)는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43.6%(132명)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여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 +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98.7%로 나타남
- 반면 ‘모르겠다’와 ‘필요하지 않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0.7%(2명)로 나타남

〈표 4-37〉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의 필요성 정도_수원시민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매우 필요하다	167 (55.1)
어느 정도 필요하다	132 (43.6)
필요하지 않다	2 (0.7)
모르겠다	2 (0.7)
합계	303 (100.0)

- 장애 인식과 관련한 교육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45명으로 전체의 47.9%를 차지하였으며, 경험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과반을 넘는 52.1%(158명)로 나타남
- 향후 장애 인식 관련 교육을 수강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86.5%(262명)가 ‘있다’라 답하였으며, 13.5%(41명)는 ‘없다’라고 응답함

〈표 4-38〉 장애 인식 관련 교육 경험 관련 문항_수원시민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장애 인식개선 관련 교육 경험 유무	있다	145 (47.9)
	없다	158 (52.1)
	합계	303 (100.0)
향후 장애 인식 관련 교육 수강 의사	있다	262 (86.5)
	없다	41 (13.5)
	합계	303 (100.0)

■ 기타

- 수원시민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와 거주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삶의 만족도는 평균 7.0(SD= 1.9), 수원시 거주 만족도는 평균 6.9점으로 나타남
- 장애인과 수원시민을 비교하면, 삶의 만족도는 장애인(평균 6.3점)보다 수원시민이 더 높으나, 거주만족도는 장애인(평균 7.4점)이 더 높게 나타남(〈표 4-19〉 참조)

〈표 4-39〉 타 지역과 비교한 수원시 거주 만족도_수원시민

(단위 : 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원시민의 삶의 만족도	수원시민	7.0	1.9
	장애인	6.3	2.5
수원시 거주 만족도	수원시민	6.9	2.0
	장애인	7.4	2.2

- 시민들이 수원시를 ‘무장애 환경이 갖춰진 도시’라고 인지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현재 수원시가 ‘시민들이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도시’에 대한 체감도를 질문함
- 그 결과, 과반을 넘는 75.9%(230명)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7.6%(23명)를 차지하여 수원시를 무장애 환경이 갖춰진 도시로 인지한 응답자는 전체의 83.5%인 것으로 나타남
- ‘아니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45명으로 전체의 14.9%를 차지하였으며,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1.7%(5명)를 차지함

〈표 4-40〉 현재 수원시의 무장애 도시에 대한 체감도_수원시민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전혀 아니다	5 (1.7)
아니다	45 (14.9)
그렇다	230 (75.9)
매우 그렇다	23 (7.6)
합계	303 (100.0)

- 수원시 내 차별 경험 유무를 수원시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조사함
 - 여가 및 문화생활 이용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음'이라고 답한 사람은 82.5%(250명)이었으며, 10.6%(32명)가 '없음'으로 응답함
 - 이동 및 교통시설 이용시 차별 경험이 '있음'이라는 응답은 87.8%(266명)로 나타났으며, 차별 경험이 '없음'은 9.2%(28명)로 나타남
 - 의료기관 이용시 262명(86.5%)이 차별 경험이 '있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9.6%(29명)가 차별경험이 '없음'으로 응답함
 - 복지관 이용시 차별 경험이 '있음'의 응답이 전체의 80.9%(245명)를 차지함
 - 시청 및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이용할 경우 차별 경험이 '있음'으로 답한 응답자는 263명으로 전체의 86.8%를 차지함
 - 대중교통 이용시 차별 경험이 '있음'으로 답한 응답자는 87.8%(266명)를 차지하였으며 '없음'은 9.9%(30명)로 나타남
 - 식당과 커피숍 및 상점과 같은 상업시설 이용시 차별을 경험한 사람은 전체의 88.4%(268명)로 나타났으며, 8.9%(23명)는 차별 경험이 없는 것으로 응답함

〈표 4-41〉 수원시 내 차별경험 유무_수원시민

(단위 : 명, %)

구분	이용경험 없음	있음	없음	합계
여가 및 문화생활	21 (6.9)	250 (82.5)	32 (10.6)	303 (100.0)
이동 및 교통시설 이용	9 (3.0)	266 (87.8)	28 (9.2)	303 (100.0)
의료기관 이용	12 (4.0)	262 (86.5)	29 (9.6)	303 (100.0)
복지기관 이용	37 (12.2)	245 (80.9)	21 (6.9)	303 (100.0)
행정기관(시청, 주민센터 등)	15 (5.0)	263 (86.8)	25 (8.3)	303 (100.0)
대중교통	7 (2.3)	266 (87.8)	30 (9.9)	303 (100.0)
상업시설(식당, 커피숍, 상점 등)	8 (2.6)	268 (88.4)	27 (8.9)	303 (100.0)

- 수원시 내 위치한 기반 시설 이용시 겪은 불편함에 관하여 질문함
 - 여가 및 문화생활시 불편하지 않은 전체 응답자는 83.8%로 나타남
 - 이동 및 교통시설 이용시 ‘불편하다’는 응답은 14.9%(45명)로 나타남
 - 의료기관 이용시 ‘불편하지 않다’는 응답은 84.5%(256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11.6%(35명)는 불편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복지기관 이용시 82.5%(250명)가 ‘불편하지 않다’고 답하였으며, 5.3%(16명)는 ‘불편하다’고 답함
 - 행정기관 이용시 86.1%(261명)의 응답자가 ‘불편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27명인 8.9%는 ‘불편하다’고 응답함
 - 대중교통 이용시 불편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79.9%(242명)를 차지함
 - 상업시설 이용시 ‘불편하지 않음’으로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88.8%(269명)를 차지함

〈표 4-42〉 수원시 기반시설 이용 불편함 경험_수원시민

(단위 : 명, %)

구분	불편하지 않음	불편함	해당없음	합계
여가 및 문화생활	254 (83.8)	28 (9.2)	21 (6.9)	303 (100.0)
이동 및 교통시설 이용	249 (82.2)	45 (14.9)	9 (3.0)	303 (100.0)
의료기관 이용	256 (84.5)	35 (11.6)	12 (4.0)	303 (100.0)
복지기관 이용	250 (82.5)	16 (5.3)	37 (12.2)	303 (100.0)
행정기관(시청, 주민센터 등)	261 (86.1)	27 (8.9)	15 (5.0)	303 (100.0)
대중교통	242 (79.9)	54 (17.8)	7 (2.3)	303 (100.0)
상업시설(식당, 커피숍, 상점 등)	269 (88.8)	26 (8.6)	8 (2.6)	303 (100.0)

- 무장애와 관련한 4가지 영역 중 ‘무장애 도시 수원’을 조성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하는 장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시설물 접근 및 편의시설의 장애’가 39.3%(119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차별인식의 장애’(26.4%, 80명), ‘교통 및 이동의 장애’(23.1%, 70명), ‘의사소통의 장애’(11.2%, 34명) 순으로 비중을 차지함
 - 수원시 등록장애인의 경우, ‘교통 및 이동의 장애(39.4%)’, ‘시설물 접근 및 편의시설의 장애(30.5%)’, ‘차별인식의 장애(15.5%)’, ‘의사소통의 장애(14.6%)’의 순으로 나타나 수원시민 설문결과와는 우선순위가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표 4-2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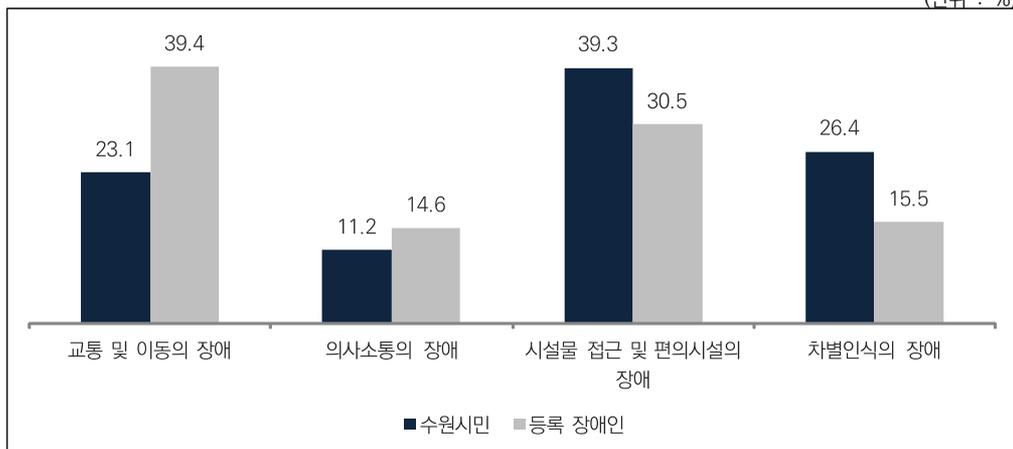
〈표 4-43〉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_수원시민과 장애인 비교

(단위 : 명, %)

구분	수원시민	등록 장애인
교통 및 이동의 장애	70 (23.1)	122 (39.4)
의사소통의 장애	34 (11.2)	45 (14.6)
시설물 접근 및 편의시설의 장애	119 (39.3)	95 (30.5)
차별인식의 장애	80 (26.4)	48 (15.5)
합계	303 (100.0)	310 (100.0)

〈그림 4-11〉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_수원시민과 장애인 비교

(단위 : %)



제3절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1. 조사개요

■ 조사목적

- 수원시에서 무장애 정책을 설계하고 이행하는 공무원들의 장애 인식 정도 및 무장애 관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표본할당

- 2019년 6월 기준, 수원시에 배치되어있는 3,170명의 공무원을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비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비율을 고려한 표본을 설계함

〈표 4-44〉 표본할당_공무원

(단위 : 명)

계	비사회복지직		사회복지직	
	표본	공무원	표본	공무원
3,170	350	2,855	263	315
				87

■ 문항구성

- 공무원 대상 설문문항은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장애인 근무 관련 변인, 장애인 인식 교육 관련 변인, 장애의 이해 및 소외 상황 인지, 장애인 특성 인지 등으로 구성함
 -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성별과 연령, 혼인여부, 최종학력, 장애인 가족 유무를 비롯하여 현 근무지와 근무기관 등을 포함하여 조사함
 - 장애인 근무 관련 변인은 장애관련 근무경험과 현 직무와 관련하여 장애인과의 만남 정도, 장애인 관련 자원봉사 경험 여부 등을 포함시킴
 - 장애인 인식교육 관련 변인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필요성과 장애 인식 관련 교육 경험, 장애 관련 과목 수강경험 및 수강 의향 등을 포함하여 문항을 구성함
 - 장애의 이해 및 소외상황 인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상의 분류체계 및 하위체계 상황 이해에 관련하여 총 8문항으로 구성함
 - 장애인 특성 인지 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Siller(1969)의 DFS(Disability Factor Scale)중 일부를 채택하여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기타문항으로는 무장애도시 추진을 위하여 수원시가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장애(barrier)를 질문함

〈표 4-45〉 설문문항 구성 내용_공무원

구분	내용
인구사회학적 요인	성별, 연령, 혼인여부, 직급, 현 근무지, 근무기간, 최종학력, 장애인 가족 유무
장애인 근무 관련 변인	장애관련 근무경험, 직무관련 장애인 만남, 장애인 자원봉사 경험
장애인 인식교육 관련 변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필요성, 장애 인식 관련 교육경험, 장애관련 과목 수강경험, 장애 인식 관련 교육수강 의향,
장애의 이해 및 소외상황 인지	장애인복지법상 분류체계 및 하위체계 상황 이해에 관한 질문 총8문항
장애인 특성 인지	Siller가 개발한 DFS(Disability Factor Scale) 일부사용 총20문항
기타	무장애도시 추진을 위하여 수원시가 우선적으로 해결하여 할 문제

자료 : 장애인복지법 및 Siller(1969). The general form of the Disability Factors Scales series(DFS=G)

2. 분석결과

■ 일반적 특성

- 공무원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4.9%(122명)는 남성임
-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을 재학/졸업한 응답자가 78.0%(273명)로 가장 높음
- 응답자의 직급은 7급이 28.3%(99명)로 가장 많았고 9급(23.1%, 81명), 8급(21.4%, 75명), 6급(18.3%, 64명), 5급(8.9%, 31명) 순으로 뒤를 이음
- 채용당시 직렬은 '행정직' 58.6%(205명), '사회복지직' 24.9%(87명), 건축직과 같은 '기타' 직렬은 16.6%(58명)로 나타남
- 연령은 30대 응답자가 31.1%(109명)로 가장 많았으며, 혼인여부는 기혼이 61.7%(216명)를 차지함
- 현 근무지는 시청이 53.1%를 차지하였으며, 근무기간은 3년 미만이 32.9%, 현재 담당업무는 비사회복지직 업무가 75.1%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46〉 응답자의 일반특성_공무원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구분		사례 수(%)
성별	남성	122 (34.9)	연령	20대	68 (19.4)
	여성	228 (65.1)		30대	109 (31.1)
	합계	350 (100.0)		40대	102 (29.1)
		50대 이상		71 (20.3)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15 (4.3)	혼인 여부	합계	350 (100.0)
	2년제·전문대재학/졸업	30 (8.6)		기혼	216 (61.7)
	4년제 대학재학/졸업	273 (78.0)		미혼	133 (38.0)
	(석사)대학원재학/졸업	32 (9.1)		기타	- (-)
	(박사)대학원재학/졸업	- (-)		합계	350 (100.0)
	합계	350 (100.0)	현 근무지	시청	186 (53.1)
직급	9급	81 (23.1)		구청	32 (9.1)
	8급	75 (21.4)		행정복지센터	131 (37.4)
	7급	99 (28.3)		기타	1 (0.3)
	6급	64 (18.3)		합계	350 (100.0)
	5급	31 (8.9)		근무 기간	3년 미만
	합계	350 (100.0)	3년 이상~5년 이하		44 (12.6)
가족 중 장애인(당사자)	장애인(당사자)	2 (0.6)	6년 이상~10년 이하		52 (14.9)
	가족 중 장애인 있음	43 (12.3)	11년 이상~15년 이하		38 (10.9)
	장애인 당사자, 가족 장애인(O)	1 (0.3)	16년 이상~20년 이하		17 (4.9)
	해당사항 없음	304 (86.9)	21년 이상		84 (24.0)
	합계	350 (100.0)	합계	350 (100.0)	
채용 당시 직렬	행정직	205 (58.6)	담당 업무	사회복지 관련	87 (24.9)
	사회복지직	87 (24.9)		비 사회복지	263 (75.1)
	기타	58 (16.6)		합계	350 (100.0)
	합계	350 (100.0)			

■ 장애인 관련 근무경험

- 장애인과 관련된 근무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36.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장애관련 근무경험이 82.8%(72명)인데 반해 비사회복지직 공무원은 21.7%(57명)만이 장애인 관련 업무 및 근무 경험이 있음

〈표 4-47〉 장애인 관련 근무경험_공무원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합계	사회복지직 공무원	비사회복지직 공무원
있다	129 (36.9)	72 (82.8)	57 (21.7)
없다	221 (63.1)	15 (17.2)	206 (78.3)
합계	350 (100.0)	87 (100.0)	263 (100.0)

※ 장애관련 업무경험 포함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필요성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필요성의 인지경도와 관련한 질문에서 과반수를 넘는 56.0%(196명)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응답함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필요성에 긍정적으로(‘매우 필요하다’ + ‘어느정도 필요하다’) 응답한 응답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비사회복지직 공무원 각각 94.2%(82명)와 95.5%(251명)로 나타남

〈표 4-48〉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필요성 인지경도_공무원

(단위 : 명, %)

구분	합계	사회복지직 공무원	비사회복지직 공무원
매우 필요하다	137 (39.1)	29 (33.3)	108 (41.1)
어느 정도 필요하다	196 (56.0)	53 (60.9)	143 (54.4)
필요하지 않다	6 (1.7)	2 (2.3)	4 (1.5)
모르겠다	11 (3.1)	3 (3.4)	8 (3.0)
합계	350 (100.0)	87 (100.0)	263 (100.0)

■ 장애 인식 관련 교육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53.7%(188명)로 나타남

- 장애 인식 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82.8%(72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사회복지직 공무원의 55.9%(147명)는 교육 경험이 없다고 응답

〈표 4-49〉 장애 인식 관련 교육 유무_공무원

구분		합계	사회복지직 공무원	비사회복지직 공무원
장애 인식 관련 교육 경험 유무	있다	188 (53.7)	72 (82.8)	116 (44.1)
	없다	162 (46.3)	15 (17.2)	147 (55.9)
	합계	350 (100.0)	87 (100.0)	263 (100.0)

- 장애 인식 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 188명에게 교육시기를 재질문한 결과 39.9%인 75명이 ‘최근 1년 이내’ 교육을 받았다고 답하였으며, ‘1~2년’ 사이에 교육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함 응답자는 27.1%(51명)를 차지하였고, ‘3~5년’과 ‘5년보다 더 이전에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17.6%(33명)와 15.4%(29명)를 차지함
 -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비사회복지직 공무원 모두 교육을 받은 시기가 ‘최근 1년 이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각각 44.4%(32명)와 37.1%(43명)로 나타남

〈표 4-50〉 장애 인식 관련 교육 경험 시기_공무원

(단위 : 명, %)

구분		합계	사회복지직 공무원	비사회복지직 공무원
장애 인식 관련 교육 경험 시기	최근 1년 이내	75 (39.9)	32 (44.4)	43 (37.1)
	1~2년	51 (27.1)	16 (22.2)	35 (30.2)
	3~5년	33 (17.6)	11 (15.3)	22 (19.0)
	5년보다 더 이전	29 (15.4)	13 (18.1)	16 (13.8)
	합계	188 (100.0)	72 (100.0)	116 (100.0)

- 장애관련 과목 수강과 관련한 질문에서 장애관련 과목 수강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3.1%(151명)이며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56.9%(199명)로 나타남
- 향후 장애 인식과 관련한 교육을 수강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76.9%(269명)임

〈표 4-51〉 장애관련 과목 수강 관련 문항_공무원

(단위 : 명, %)

구분		합계	사회복지직 공무원	비사회복지직 공무원
장애관련 과목 수강경험	있다	151 (43.1)	67 (77.0)	84 (31.9)
	없다	199 (56.9)	20 (23.0)	179 (68.1)
	합계	350 (100.0)	87 (100.0)	263 (100.0)
향후 교육 수강 의향	있다	269 (76.9)	69 (79.3)	200 (76.0)
	없다	81 (23.1)	18 (20.7)	63 (24.0)
	합계	350 (100.0)	87 (100.0)	263 (100.0)

※ 고등교육 수강과목 및 기타 전문교육 수강경험 포함

- 장애인 관련 자원봉사 경험이 '있다'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51.1%(179명)로 나타남
 -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과반수가 넘는 69.0%(60명)이 장애인 관련 자원봉사 경험이 있으며, 비사회복지직 공무원은 45.2%(119명)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52〉 장애인 관련 자원봉사 경험 유무_공무원

(단위 : 명, %)

구분	합계	사회복지직 공무원	비사회복지직 공무원
있다	179 (51.1)	60 (69.0)	119 (45.2)
없다	171 (48.9)	27 (31.0)	144 (54.8)
합계	350 (100.0)	87 (100.0)	263 (100.0)

- 직무와 관련하여 장애인과 만나는 정도를 묻는 질문에 49.1%(172명)가 '거의 만나지 않는다' 답하였으며 33.7%(118명)는 '가끔 만난다'고 답하였고 17.1%(60명)은 '자주 만난다'라고 응답함
 -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52.9%(46명)가 직무와 관련하여 장애인을 자주 만난다고 답하였으나 비사회복지직 공무원은 62.4%(164명)가 거의 만나지 않는다고 응답함

〈표 4-53〉 직무 관련 장애인 만남 정도_공무원

(단위 : 명, %)

구분	합계	사회복지직 공무원	비사회복지직 공무원
거의 만나지 않음	172 (49.1)	8 (9.2)	164 (62.4)
가끔 만남	118 (33.7)	33 (37.9)	85 (32.3)
자주 만남	60 (17.1)	46 (52.9)	14 (5.3)
합계	350 (100.0)	87 (100.0)	26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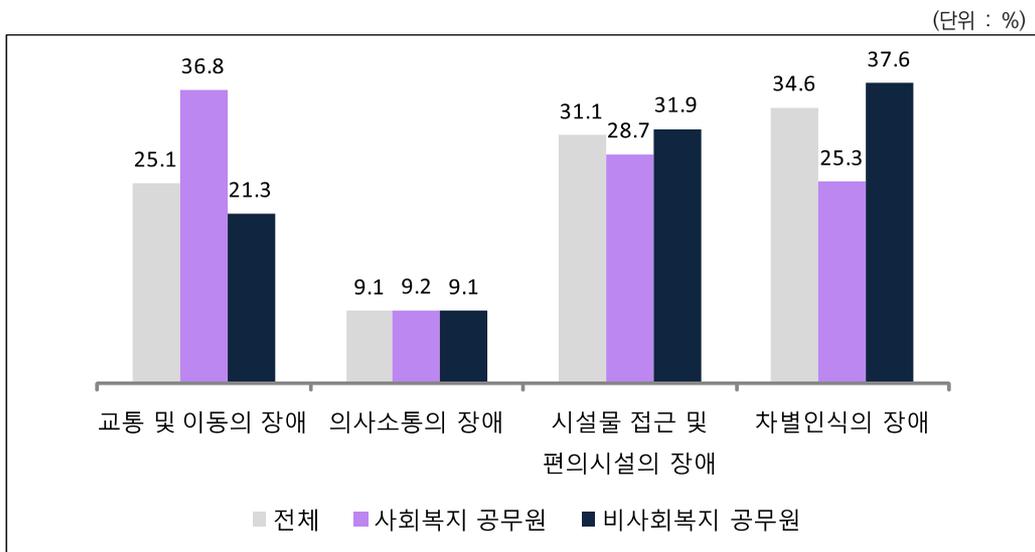
-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장애영역을 질문한 결과, '차별인식의 장애'라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34.6%(121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시설물 접근 및 편의시설의 장애'(31.1%, 109명), '교통 및 이동의 장애'(25.1%, 88명), '의사소통의 장애'(9.1%, 32명) 순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교통 및 이동의 장애'(32명, 36.8%), 비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차별인식의 장애'(99명, 37.6%)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54〉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_공무원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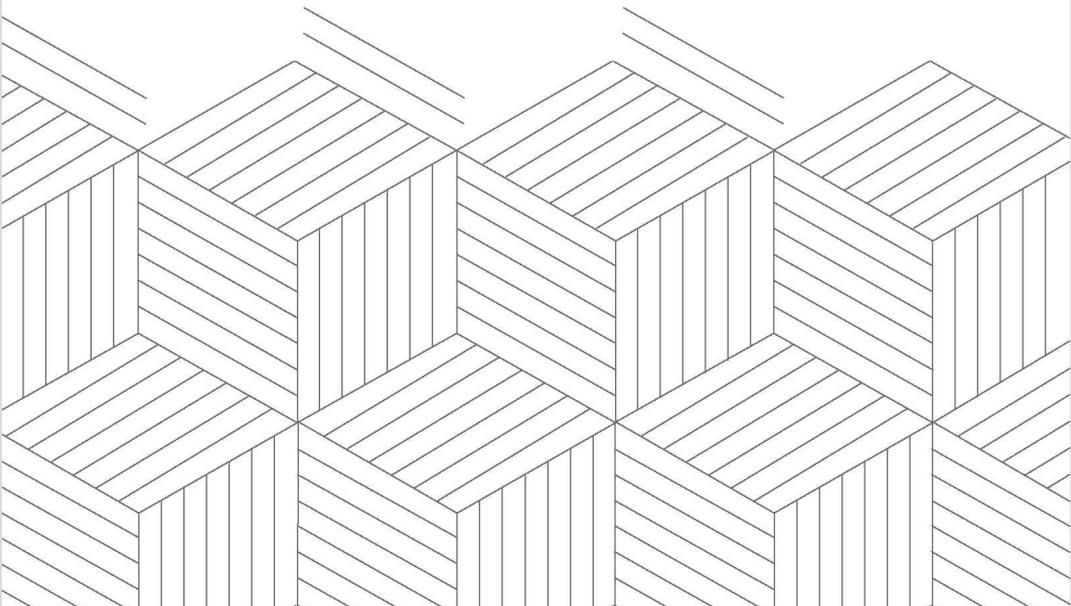
구분	합계	사회복지직 공무원	비사회복지직 공무원
교통 및 이동의 장애	88 (25.1)	32 (36.8)	56 (21.3)
의사소통의 장애	32 (9.1)	8 (9.2)	24 (9.1)
시설물 접근 및 편의시설의 장애	109 (31.1)	25 (28.7)	84 (31.9)
차별인식의 장애	121 (34.6)	22 (25.3)	99 (37.6)
합계	350 (100.0)	87 (100.0)	263 (100.0)

〈그림 4-12〉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_공무원



제5장 무장애도시 조성 관련 수원시 여건분석

제1절 수원시 인구 및 장애인 현황
제2절 무장애도시 관련 수원시 여건 분석
제3절 무장애도시 조성 관련 수원시 SWOT 분석



제5장 무장애도시 조성 관련 수원시 여건분석

제1절 수원시 인구 및 장애인 현황

1. 수원시 인구

- 수원시 전체 등록인구는 매년 증가 추세임
 - 2014년 수원시 인구는 1,174,228명, 2015년 1,184,624명, 2016년 1,194,041명, 2017년 1,202,628명, 2018년 1,201,166명으로 5년 동안 2.3% 증가함
- 수원시 4개 구 중 2개 구(장안구, 팔달구)는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수원시 4개 구 중 장안구와 팔달구는 5년 동안 각각 -4.9%, -11.1%로 감소한데 반해 권선구와 영통구는 각각 11.1%, 8.0% 증가함

〈표 5-1〉 수원시 구별 인구현황(2014~2018)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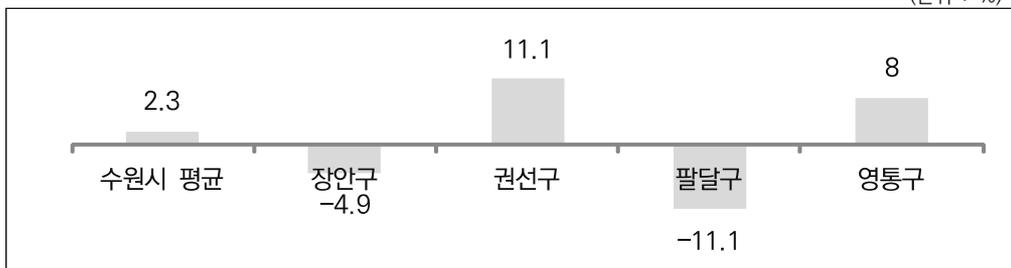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증감률
계	1,174,228	1,184,624	1,194,041	1,202,628	1,201,166	2.3
장안구	301,196	299,016	296,479	293,828	286,433	-4.9
권선구	339,835	351,053	358,393	365,653	377,647	11.1
팔달구	203,479	199,180	198,515	193,311	180,974	-11.1
영통구	329,718	335,375	340,654	349,836	356,112	8.0

자료 : 매년 연말 기준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그림 5-1〉 수원시 구별 인구 증감률(2014~2018)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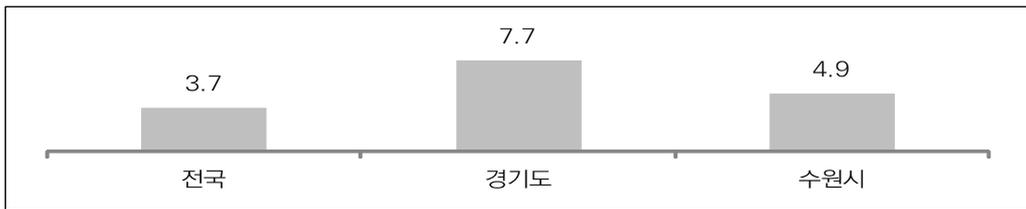
자료 : 2014년과 2018년 비교 기준임

2. 수원시 장애인 현황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전국과 경기도의 장애인은 5년 동안 증가 추세임
 - 전국의 경우, 2014년 장애인은 2,494,460명에서 2018년 2,585,876명으로 3.7% 증가함
 - 경기도는 2014년 508,330명에서 2018년 547,386명으로 7.7% 증가하여 전국보다 2배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수원시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장애인이 가장 많으며, 증가율이 4.9%로 나타나 전국 평균(3.7%)보다 높은 수준임
 - 수원시 장애인은 2014년 40,406명, 2015년 40,693명, 2016년 41,411명, 2017년 41,908명, 2018년 42,393명으로 매년 증가함

〈그림 5-2〉 전국, 경기도, 수원시 장애인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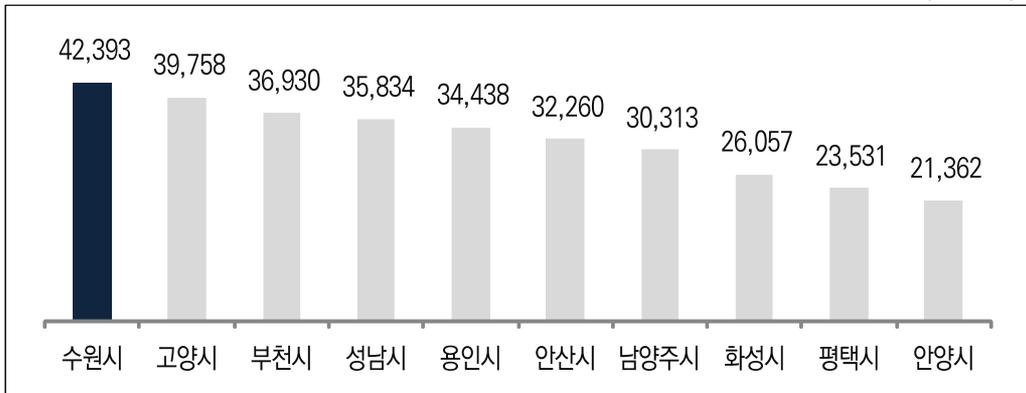
(단위 : %)



주 : 증감률은 2014년 대비 2018년의 증감률을 의미함
 자료 : 보건복지부(2014~2018). 장애인 등록 현황

〈그림 5-3〉 경기도 시군 장애인 현황(2018.12)

(단위 : 명)



주 1 : 매년 연말 기준
 2 : 경기도 31개 시군 중 상위 10개 지자체만 발췌
 자료 : 보건복지부(2014~2018). 장애인 등록 현황

〈표 5-2〉 전국 및 경기도 31개 지자체 장애인 현황(2014~2018)

(단위 : 명,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증감률
전국	2,494,460	2,490,406	2,511,051	2,545,637	2,585,876	3.7
경기도	508,330	512,882	522,437	533,259	547,386	7.7
수원시	40,406	40,693	41,411	41,908	42,393	4.9
성남시	35,479	35,150	35,156	35,312	35,834	1.0
의정부시	19,160	19,417	19,867	20,290	20,811	8.6
안양시	21,558	21,466	21,458	21,286	21,362	-0.9
부천시	35,345	35,204	35,860	36,426	36,930	4.5
광명시	14,005	13,889	13,846	13,832	13,878	-0.9
평택시	22,116	22,173	22,426	22,898	23,531	6.4
동두천시	5,716	5,820	6,010	6,102	6,192	8.3
안산시	32,281	32,013	31,916	32,009	32,260	-0.1
고양시	36,584	37,366	38,215	38,919	39,758	8.7
과천시	2,166	2,152	2,070	1,863	1,898	-12.4
구리시	7,938	7,873	8,320	8,613	8,741	10.1
남양주시	27,721	28,429	28,859	29,611	30,313	9.4
오산시	7,726	7,790	7,867	8,103	8,404	8.8
시흥시	16,516	16,548	16,901	17,641	18,912	14.5
군포시	10,996	10,957	10,990	11,095	11,213	2.0
의왕시	5,998	5,950	5,997	6,072	6,115	2.0
하남시	6,882	7,375	8,533	9,103	9,988	45.1
용인시	31,157	31,444	32,279	33,071	34,438	10.5
파주시	18,280	18,565	19,019	19,494	20,138	10.2
이천시	10,163	10,126	10,181	10,220	10,325	1.6
안성시	10,096	10,089	10,256	10,527	10,707	6.1
김포시	13,791	14,093	14,579	15,541	16,479	19.5
화성시	20,577	21,727	22,937	24,219	26,057	26.6
광주시	13,191	13,599	14,129	14,759	15,536	17.8
양주시	10,339	10,529	10,618	11,220	11,672	12.9
포천시	9,712	9,737	9,845	9,948	10,079	3.8
여주시	6,933	6,961	7,046	7,130	7,209	4.0
연천군	3,361	3,368	3,328	3,334	3,358	-0.1
가평군	5,167	5,211	5,207	5,250	5,293	2.4
양평군	6,970	7,168	7,311	7,463	7,562	8.5

주 : 매년 연말 기준이며, 증감률은 2014년 대비 2018년의 증감률을 의미함
 자료 : 보건복지부(2014~2018). 장애인 등록 현황

■ 수원시 장애인의 장애유형 증감률은 다음과 같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5개의 장애유형 중 정신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가 39.6%로 증감률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청각장애(28.5%), 신장장애(27.9%), 언어장애(20.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5개의 장애유형 중 지체장애(-2.4%)와 안면장애(-2.0%), 호흡기장애(-4.9%), 심장장애(-6.9%), 뇌전증장애(-4.8%)는 감소 추세임

〈표 5-3〉 수원시 장애인의 장애유형 추이(2014~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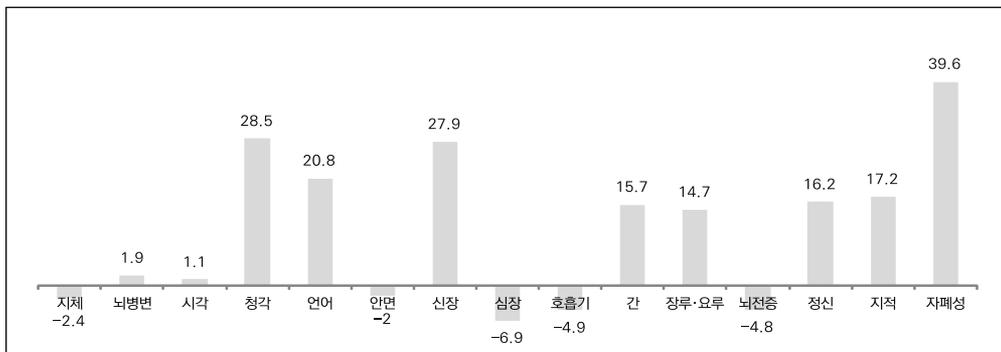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증감률	
계		40,406	40,693	41,411	41,908	42,393	4.9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	21,224	21,100	21,132	20,988	20,724	-2.4
		뇌병변	4,298	4,342	4,363	4,407	4,380	1.9
		시각	4,348	4,381	4,401	4,404	4,397	1.1
		청각	3,571	3,571	3,831	4,082	4,588	28.5
		언어	312	325	350	367	377	20.8
		안면	51	49	52	51	50	-2.0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	1,371	1,441	1,588	1,678	1,753	27.9
		심장	87	84	77	81	81	-6.9
		호흡기	163	158	159	154	155	-4.9
		간	210	222	241	243	243	15.7
		장루·요루	232	258	256	266	266	14.7
정신적 장애	뇌전증	126	124	114	118	120	-4.8	
	정신	1,270	1,328	1,379	1,433	1,476	16.2	
	지적	2,696	2,829	2,945	3,059	3,159	17.2	
	자폐성	447	481	523	577	624	39.6	

주 : 매년 연말 기준이며, 증감률은 2014년 대비 2018년의 증감률을 의미함
 자료 : 보건복지부(2014~2018). 장애인 등록 현황

〈그림 5-4〉 수원시 장애인 장애유형별 증감률(2014, 2018)

(단위 : %)



주 : 증감률은 2014년 대비 2018년의 증감률을 의미함

- 수원시 장애인의 장애등급을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중증장애인(1~3급)의 비율은 2014년에 비해 17.6%, 경증(4~6급)은 17.6% 증가함

(표 5-4) 수원시 장애인의 장애유형의 장애등급 현황(2018.12)

(단위 : 명)

구분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		42,393	3,443	5,682	7,124	5,834	8,745	11,565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	20,724	580	1,040	2,421	3,632	5,782	7,269
		뇌병변	4,380	1,043	800	1,007	503	531	496
		시각	4,397	511	87	175	193	338	3,093
		청각	4,588	179	699	635	1,000	1,368	707
		언어	377	1	33	147	196	-	-
		안면	50	1	11	17	21	-	-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	1,753	110	1,220	1	10	412	-
		심장	81	2	5	60	2	12	-
		호흡기	155	22	60	69	-	4	-
		간	243	2	4	6	14	217	-
		장루·요루	266	0	1	16	190	59	-
		뇌전증	120	1	11	13	73	22	-
정신적 장애	정신	1,476	12	316	1,148	-	-	-	
	지적	3,159	738	1,100	1,321	-	-	-	
	자폐성	624	241	295	88	-	-	-	

주 : 2018년 12월 말 기준

자료 : 보건복지부(2019). 장애인 등록 현황

(표 5-5) 수원시 장애인의 장애등급 증감률(2014~2018)

(단위 : 명, %)

구분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2014.12	40,406	3,290	5,259	6,794	5,664	8,158	11,241
2018.12	42,393	3,443	5,682	7,124	5,834	8,745	11,565
증감률	4.9	4.7	8.0	4.9	3.0	7.2	2.9

자료 1 : 보건복지부(2015). 장애인 등록 현황

2 : 보건복지부(2019). 장애인 등록 현황

제2절 무장애도시 관련 수원시 여건 분석

1. 수원시 무장애 관련 조례 분석

1) 시설물 접근·편의시설 장애

-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 수원시에서는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를 2015년 6월 5일 제정함
 - 본 조례에서는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는 것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함
 -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수행 기능으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 유지·관리 확인 및 실태조사 등을 명시함
 - 본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수원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서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해 2016년 9월 28일 제정됨
 - 본 조례에서는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 및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장애인 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기본원칙으로 함
 - 장애가 있는 공무원을 위해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 범위 및 제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

- 「수원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 수원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2005년 6월 24일 제정됨

- 조례에서는 최적관람석에 대한 정의와 설치, 이동편의시설 확충과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및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교통·이동의 장애

-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한 사항과 수원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2009년 1월 8일 제정됨
 - 조례에서는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여객시설에 대한 조사와 개선계획,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제공과 개선계획,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는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해야함을 명시함
 - 또한 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와 이용자 간에 이동에 관한 정보제공과 서비스연계를 위한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에 대한 세부사항 등도 규정함

3) 의사소통·정보의 장애

- 「수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 수원시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98년 8월 17일 제정됨
 - 조례에서는 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제15조(정보격차의 해소)에서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교육과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수원시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
 - 일반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보접근성 및 활용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2019년 7월 12일 제정됨
 - 조례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의 정보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 정보화 시행계획, 교육시설의 강사 및 위탁, 교육대상자의 선정,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

〈표 5-6〉 무장애 도시 관련 수원시 조례

장애 영역	조례명	제정일	목적	대상	내용
시설물 접근·편의시설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15.06.0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수원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서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장애인, 노인, 여성, 영유아, 아동	사전·사후 점검,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점검요원 구성 등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16.09.28.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장애인 공무원	기본원칙, 지원범위, 지원 기준 및 절차, 지원사업이 수행,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수원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05.06.24.	수원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장애인	정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 최적관람석의 설치, 이동편의시설 확충,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사업비의 부담, 민간운영시설의 권장
교통·이동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09.01.0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수원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장애인, 노인, 여성, 영유아, 아동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저상버스의 도입과 운영,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
의사소통·정보	「수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98.08.17.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관련된 추가사항과 수원시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수원시민	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지역정보화 추진,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정보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개최 등
	「수원시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	19.07.12.	수원시 시각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일반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보접근성 및 활용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시각 장애인	시장의 책무, 정보화 시행계획, 교육시설의 강사 및 위탁, 교육대상자의 선정, 협력체계 구축 등

2. 수원시 무장애 관련 정책 분석

1) 시설물 접근·편의시설 장애

- 수원시 공공디자인과에서는 ‘공공디자인 개발 및 지원’ 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 중임
- 수원시 기업지원과와 팔달구 행정지원과 등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사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개선 사업’을 실시함
 - 기업지원과는 수유실 및 락커 등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요원의 대기실 설치를 통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하는 ‘편의시설 설치’ 사업을 진행 중
 - 팔달구와 권선구의 행정지원과는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시정조치의 과정을 거치는 ‘동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사업 또한 실시 중에 있음
- 수원시 장애인복지과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현을 위해 ‘수원시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권선구 사회복지과에서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경로당 승강기 안전관리’사업과 ‘승강기 및 장애인 리프트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의 부적정 설치로 인한 사고발생을 방지하고, 교통약자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과 권익증진을 위해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수원시 교통약자 편의시설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2) 교통·이동의 장애

- 수원시는 보장구의 활용도를 높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생활편의에 기여하고자 보장구 관련 수리업체와 연계한 ‘장애인 보장구 수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을 보조하는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장애인의 이동의 편리를 위하여 청사 내 ‘장애인 전동 휠체어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등과 같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 교통약자에 속하는 아동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을 노란색으로 교체하는 ‘노란신호등설치’사업을 계획하였으며 범죄 및 교통사고 등과 같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등·하교 시 보행안전지도사가 동행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자’를 운영하고 있음

- 교통안전에 취약한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하고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정비하는 ‘교통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정비’사업을 계획함
-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휠체어 무상대여’를 실시하며 휠체어 이용자와 비휠체어 교통약자 모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운영’과 ‘교통약자이동수단’을 운영하고 있음
- 또한 관내 산재되어있는 안전보행 환경을 저해하는 비규격 볼라드를 수원시 공공디자인에 맞도록 일제 정비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횡단을 위하여 ‘효성원형육교 승강기 설치’를 계획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시행 중에 있음

3) 차별인식 장애

- 수원시민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하여 「수원시 인권기본 조례」 제20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한 ‘수원시 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8조, 제63조 의거하여 매년 ‘수원화성배 전국장애인 및 수원시 초등학생 바둑대회’, ‘장애인의 날 어울림한마당’, ‘흰지팡이의 날 및 점자의 날 행사’등을 개최함

4) 의사소통 장애

- 수원시는 청각·언어 장애인의 원활한 일상 및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어통역센터 운영’을 통한 수어통역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인공달팽이관 기수술자를 대상으로 ‘언어·청능 훈련 등 재활치료’를 위한 비용을 제공하고 있으며 원활한 민원상담과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생활안정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영상전화기’지원과 ‘장애인 보조기기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표 5-7〉 수원시 무장애 관련 정책

(단위 : 천 원)

장애 영역	사업명	대상	담당과	사업내용	예산	자체 여부	
시설물 접근·편의시설	1	공공디자인 개발 및 지원	전 대상	도시개발국 도시디자인과	행정 및 사업관련 공공·디자인에 대한 전문적이고 수준높은 결과물 도출 필요/전문회사 용역의뢰	150,000	자체
	2	수원시교통약자편의시설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설치 운영	전 대상	안전교통국 도시교통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부적정 설치로 인한 사고발생 방지와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으로 교통약자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과 권익증진/삶의 질 향상/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에 대한 사전·사후점검 및 관리	160,000	자체
	3	승강기 및 장애인 리프트 안전관리	전 대상	수원시청소년재단 청소년문화센터	승강기 및 장애인리프트 안전관리	15,851	자체
	4	경로당 승강기 안전관리	노인	권선구 사회복지과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안전사고예방/매월(자체점검), 연1회(정기 검사)	12,415	자체
	5	구청사 사회적약자 편의시설 개선	장애인	팔달구 행정지원과	장애물없는 청사환경조성/임산부 휴게시설(수유실)/장애인 편의시설(장애인휠체어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손잡이 및 비상용 벨 설치, 시각장애인용 점자안내판)	25,000	자체
	6	동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장애인	권선구 행정지원과	공공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45,930	자체
	7	시군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장애인복지과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건축허가~사용승인까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술지원/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현	216,200	의무
	8	장애인복지센터 자동문(화장실 등)설치	장애인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센터 자동문(화장실 등) 설치	-	-
	9	편의시설 설치	전 대상	경제정책국 기업지원과	수유실 및 락커를 설치하여 이용객 불편해소/환경요원 대기실 설치-근무환경개선	13,200	자체
교통	10	교통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전 대상	안전교통국 도시안전통합센터	보호구역 신규지정, 확대 지정사업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교통안전에 취약한 교통약자 교통사고예방	150,000	자체
이동	11	교통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전 대상	안전교통국 도시안전통합센터	보호구역 노후시설물 개선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통해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	150,000	자체

(단위 : 천 원)

장애 영역	사업명	대상	담당과	사업내용	예산	자체 여부	
	12	교통약자이동수단운영 (개인택시)	전 대상	안전교통국 대중교통과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특별교통수단(휠체어탑승특장) 보완/전용개인택시45대 운영	1,836,000	자체
	13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자산취득비)	전 대상	안전교통국 대중교통과	특별교통수단2대 증차/운영 장비(콜 단말기)교체	5,400	자체
	14	비규격 볼라드 정비	전 대상	권선구 건설과	높이·재질·디자인 등 비규격 볼라드 관 내 산재/안전보행 환경저해/수원시 공공디자인에 맞도록 일제정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100,000	자체
	15	효성원형육교 승강기 설치	전 대상	팔달구 건설과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횡단/장애인용 승강기 시범설치/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260,000	자체
	16	휠체어 무상대여	전 대상	장안구 조원2동	휠체어 무상대여/복지증진 도모	1,000	자체
	17	노란신호등설치(2개소)	아동	안전교통국 도시안전통합센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노란색으로 교체/시인성 확보, 차량속도 감소	40,600	자체
	18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자 운영	아동	안전교통국 도시안전통합센터	등·하교시 초등학생과 보행안전 지도사 동행/범죄 및 교통사고 위험으로 어린이보호	163,887	자체
	19	장애인 보장구 수리	장애인	장안구, 영통구, 권선구, 팔달구	보장구 활용도 높여 장애인 사회참여 및 생활편의 기여/저소득 장애인의 이동 불편 해소/보장구 관련 수리업체와 연계/ 지원·수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자립활동 도모	31,400	자체
	20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장애인복지과	차량운행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보조, 기타이동 서비스 제공/사회활동기회 확대도모	435,700	의무
	21	장애인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장애인	팔달구 행정지원과	청사 내 전동 휠체어 급속 충전소 설치/팔달구청, 행궁동, 인계동, 화서1동	12,770	자체
	2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장애인	장애인복지과	-	23,300	-
	23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장애인	장애인복지과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하기 어려운 장애인 대상	6,633,395	자체
차별인식	24	수원시 인권센터 운영	전 대상	감사관	차별없는 공정사회를 위한 인권센터 운영활성화/ 공정하고 신속한	10,000	자체

(단위 : 천 원)

장애 영역	사업명	대상	담당과	사업내용	예산	자체 여부	
				상담·조사로 수원시민 인권보호강화			
	25	수원 화성배 전국장애인 및 수원시 초중학생 바둑대회	전 대상	장애인복지과	전국 거주 장애인, 수원거주 초중등학생/장애인·비장애인 화합도모/건전한 여가생활 및 사회참여기회	15,000	-
	26	장애인의 날 어울림한마당	장애인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행사/자립·재활기회제공 및 장애인에 대한 편견개선	38,000	-
	27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 지원사업 업무 위탁비	장애인	장애인복지과	-	-	-
	28	흰 지팡이의 날 및 점자의 날 행사	전 대상	장애인복지과	시각장애인 재활과 자립의지 고취/비장애인과 상호소통 할 수 있는 화합의 장 마련/올바른 인식개선	4,600	-
	29	수어통역센터 운영	장애인	장애인복지과	청각·언어장애인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 제공/원활한 일상·사회생활 도모	322,132	의무
	30	언어·청능훈련 등 재활치료	장애인	장애인복지과	인공달팽이관 기수술자/언어·청능 훈련 등 재활치료비 지원	39,000	자체
의사소통	31	영상전화기 사용료	장애인	세류3동, 평동, 구운동, 권선1동, 권선2동, 입북동/팔달구 매산동, 화서2동, 지동	청각·언어장애인용 화상전화기/원활한 민원상담 위해 수화통역센터로 연결되는 화상전화/사회복지전문 영상전화기 및 인터넷화선/상호간 원활한 의사소통	3,044	자체
	32	장애인보조기기지원	장애인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자립생활 및 복지증진 도모/ 생활안정에 실질적 도움제공	14,045	의무

주 : 자체여부에서 '의무'는 국, 도, 시비가 편성되어 있는 사업을 의미하며, '자체'는 시비 100% 예산으로 시행되는 사업임

자료 : 수원시(2018). 수원시 2019년 사업설명서

3. 수원시 무장애 관련 영역별 현황 분석

1) 교통·이동 장애

(1) 장애인콜택시

- 수원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거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지원함
 - 구체적으로 휠체어용 특별교통수단과 비휠체어 탑승 일반택시를 운영 중에 있음
 - 휠체어용 특별교통수단은 수원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비휠체어 탑승 일반 택시는 개인택시 사업자가 운영주체임

〈그림 5-5〉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유형



자료 : 수원도시공사 한아름콜센터

- 수원시 휠체어용 특별수단은 2014년 44대, 2015년 48대, 2016년 58대, 2017년 78대, 2018년 88대, 2019년 90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장애인콜택시의 법정대수를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원시는 매년 법정 대수는 초과하여 운영 중에 있음

〈표 5-8〉 수원시 특별교통 추이(2014~2019)

(단위 : 대,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특별 교통수단	44	48	58	78	88	90
법정대수	42.7	43.3	44.5	45.3	45.6	-
1급	3,290	3,327	3,393	3,477	3,443	-
2급	5,259	5,328	5,507	5,591	5,682	-

주 : 법정대수는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자료 1 : 한아름콜택시 홈페이지

2 : 보건복지부(2013~2019). 장애인등록현황

- 현재 휠체어용 특별교통수단은 수원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위탁함

〈표 5-9〉 수원시 특별교통수단 관련 개요

구분		내용
관련근거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조례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담당부서 및 기관		수원시 대중교통과 택시팀
위탁기관		수원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2) 저상버스

- 교통약자의 이동수단과 관련해서는 휠체어용 특별교통수단 이외에도 저상버스가 운영되고 있음
 -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서는 저상버스의 도입과 운영사항을 규정함

〈표 5-10〉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관련 수원시 조례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저상버스의 도입과 운영)
① 시장은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저상버스 구입에 따른 차량 구입비 일부를 국도비와 시비 부담비율에 따라 재정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10.01)
②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 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해 시민·여행회사 등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사기「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경우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대수에 따라 차등적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10.01>

- 저상버스의 도입률은 전국, 경기도, 수원시 모두 증가 추세이며, 2018년은 수원시 저상버스 도입률은 전국과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
 - 전국의 경우 2015년 20.7%, 2016년 22.3%, 2017년 22.4%, 2018년 23.4%로 증가 추세임
 - 경기도의 경우 2015년 13.8%, 2016년 13.3%, 2017년 13.3%, 2018년 12.7%로 2015년부터는 감소 추세임
 - 수원시의 경우 2015년 16.9%, 2016년 19.5%, 2017년 22.3%, 2018년 25.4%로 증가 추세이며, 수원시의 도입률은 2018년 기준 전국(23.4%)과 경기도(12.7%)보다 높음

〈표 5-11〉 전국, 경기도, 수원시 저상버스 도입률(2014~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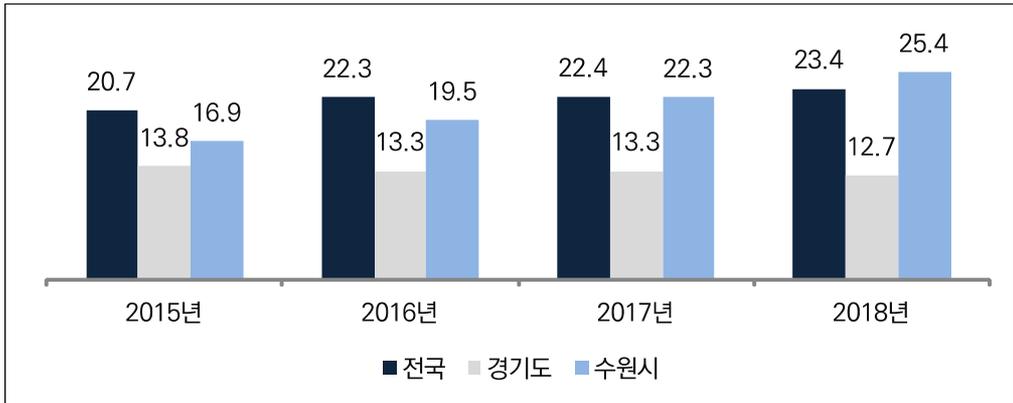
(단위 : 대,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국	시내버스	32,552	33,887	33,796	34,287
	저상버스	6,751	7,572	7,579	8,016
	도입률	20.7	22.3	22.4	23.4
경기도	시내버스	9,793	10,590	10,138	10,548
	저상버스	1,347	1,404	1,344	1,343
	도입률	13.8	13.3	13.3	12.7
수원시	시내버스	1,334	1,356	1,298	1,234
	저상버스	225	264	290	314
	도입률	16.9	19.5	22.3	25.4

자료 1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2 : 수원시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 내부자료
 3 : 수원시 대중교통과 버스운영팀 내부자료

〈그림 5-6〉 전국, 경기도, 수원시 저상버스 도입률(2015~2018)

(단위 : %)



주 : 도입률=시내버스×100/저상버스

자료 1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2 : 수원시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 내부자료
 3 : 수원시 대중교통과 버스운영팀 내부자료

(3) 장애인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 수원시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함
- 2019년 6월 1일 기준, 수원지역에서는 총 27대의 전동휠체어가 설치되어 있으며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더 설치될 예정임

- 전동휠체어는 보건복지부 생활 SOC사업이나 경기도 지침, 수원시 자체 예산 등으로 설치되고 있으며 매년 지원출처는 상이함
- 구별로는 장안구 4대, 권선구 4대, 팔달구 7대, 영통구 12대로 영통구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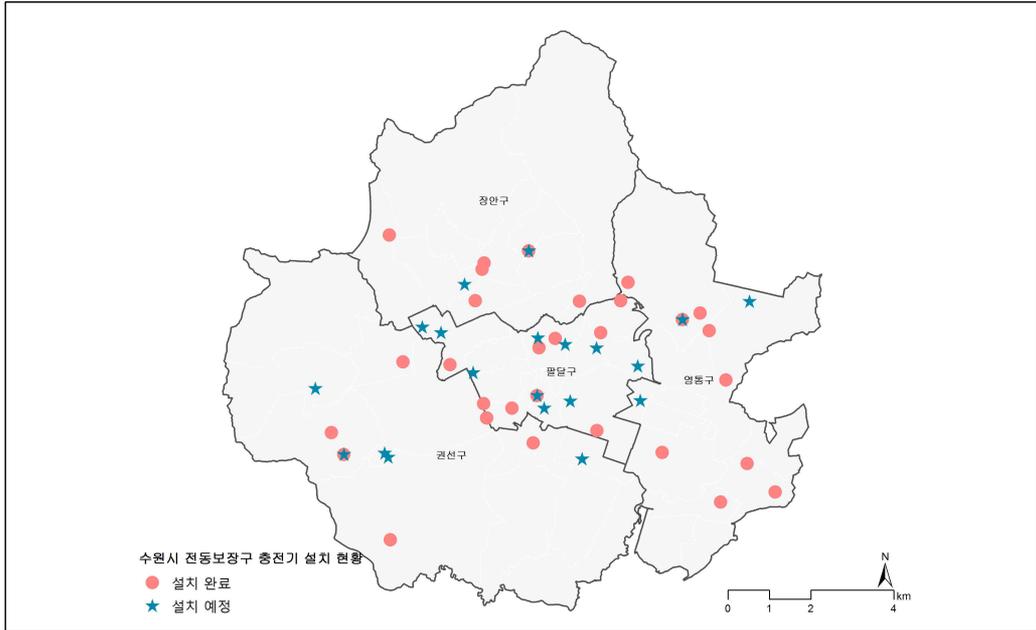
〈표 5-12〉 수원시 장애인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 현황(2019.06.01.)

연번	설치 시설명	설치주소
1	수원시청 24시 무인민원발급실	팔달구 효원로 241
2	영통구청 1층 로비	영통구 효원로 407
3	장안구보건소 1층 후문	장안구 송원로 101
4	팔달구보건소 1층 민원실	팔달구 팔달산로 6
5	영통구보건소 1층 진료실 앞	영통구 영통로 396
6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지하 1층 복도	권선구 서수원로 130
7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1층 현관 앞	영통구 창릉대로 255
8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1층 시설사무실 옆	권선구 호매실로 211
9	SK청솔노인복지관 1층 로비	장안구 장안로 174
10	광고호수공원 관리사무소 입구	영통구 광고호수공원로 102
11	화성행궁 관광정보센터 옆	팔달구 정조로 825
12	만석공원 수원제2야외음악당	장안구 송죽동 434
13	우만종합사회복지관 1층 복도	팔달구 창릉대로 210번길 13
14	우만1동주민센터 1층 출구	팔달구 우만동 506
15	매산동주민센터 1층 출구	팔달구 매산로 41
16	서호노인복지관 후문	권선구 구운로4번길 31
17	영통2동 벽적골공원 화장실 앞	영통구 영통동 969-2
18	서호공원 화장실 앞	팔달구 화서동 436-1
19	밤밭노인복지관 지하1층	장안구 상률로 53
20	광고노인복지관 지하1층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22
21	버드내노인복지관 1층 입구	권선구 권선로 564번길 36
22	수원컨벤션센터 1층 로비	영통구 광고중앙로 140
23	수원컨벤션센터 1층 로비	영통구 광고중앙로 140
24	수원컨벤션센터 1층 로비	영통구 광고중앙로 140
25	수원컨벤션센터 1층 로비	영통구 광고중앙로 140
26	수원컨벤션센터 1층 로비	영통구 광고중앙로 140
27	수원컨벤션센터 1층 로비	영통구 광고중앙로 140

주 : 2019년 6월 1일 기준

자료 :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그림 5-7〉 수원시 장애인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현황(2019.09.15.)



주 : 2019년 9월 15일 기준
 자료 :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4) 수원시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운영

- 수원시는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2017년 11월부터 운영 중임
 -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수원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서 사·사후 점검 및 관리를 담당함

〈표 5-13〉 수원시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수원시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운영 근거
제4조(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
2. 대상시설의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지도
3.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자료 :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는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시설로 운영은 (사)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에서 위탁함
- 본 센터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 대상시설의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지도,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함

〈표 5-14〉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사항

구분	내용
관련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담당부서	- 수원시 안전교통국 교통행정팀
위탁기관	-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법인	사)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
개 소 일	2017년 11월

자료 :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

(5)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 수원시 4개 구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및 동법 제27조2항에 의거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를 담당함
- 2014년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3,874건, 2015년 5,698건, 2016년 10,894건, 2017년 13,483건, 2018년 14,950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임
- 구별로는 매년 영통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자, 팔달구와 권선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임

〈표 5-15〉 수원지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건수(2014~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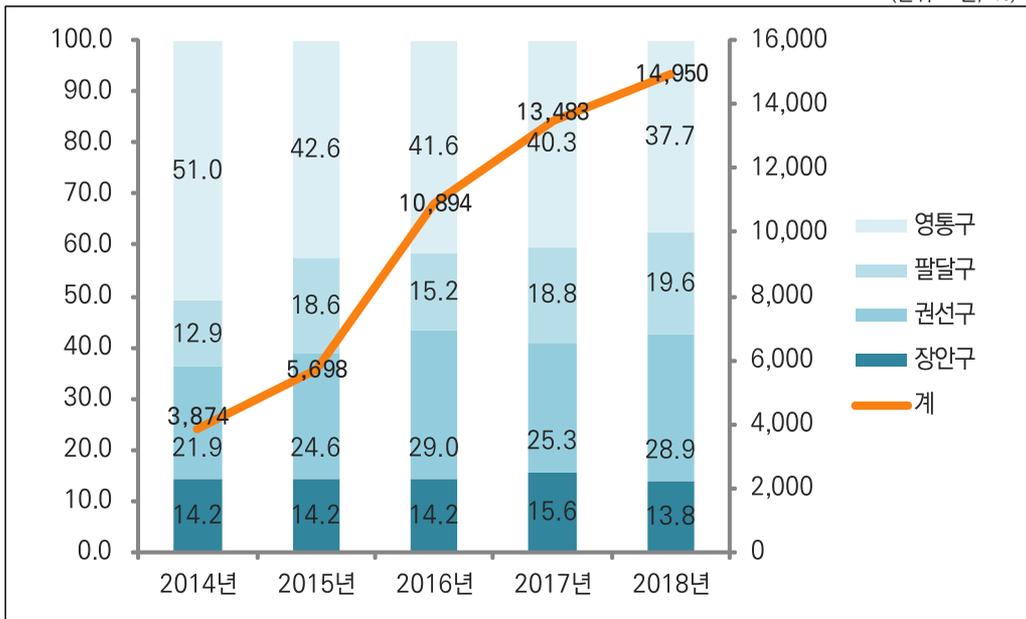
(단위 : 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3,874 (100.0)	5,698 (100.0)	10,894 (100.0)	13,483 (100.0)	14,950 (100.0)
장안구	549 (14.2)	811 (14.2)	1,550 (14.2)	2,105 (15.6)	2,066 (13.8)
권선구	849 (21.9)	1,400 (24.6)	3,158 (29.0)	3,404 (25.2)	4,315 (28.9)
팔달구	499 (12.9)	1,057 (18.6)	1,652 (15.2)	2,538 (18.8)	2,938 (19.6)
영통구	1,977 (51.0)	2,430 (42.6)	4,534 (41.6)	5,436 (40.3)	5,631 (37.7)

자료 : 수원시 4개 구 사회복지과

〈그림 5-8〉 수원지역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건수(2014~2018)

(단위 : 건, %)



자료 : 수원시 4개 구 사회복지과

(6) 장애인보장구 수리

- 장애인보장구 수리사업은 보장구 이용자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장구 훼손·마모정도가 경미한 보장구를 수리업체와 연계하여 지원·수리해주는 사업으로 현재 4개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담당
 - 장애인보장구 수리사업의 지원대상은 수원시 등록 장애인 및 일반 장애인임

- 장애인보장구 지원과정은 장애인보장구 수리 신청이 들어오면 수리완료 후 4개 구 사회복지과에서 해당 업체로 수리비를 입금해주는 방식임
- 장애인보장구 수리사업은 매년 증가추세이며, 구별로는 팔달구가 가장 많음
 - 연도별로는 2014년 76건, 2015년 107건, 2016년 106건, 2017년 135건, 2018년 137건으로 증가 추세임
 - 구별 이용현황은 매년 팔달구가 이용 건수가 가장 많고 영통구가 가장 적음

〈표 5-16〉 수원지역 장애인보장구 수리 현황(2014~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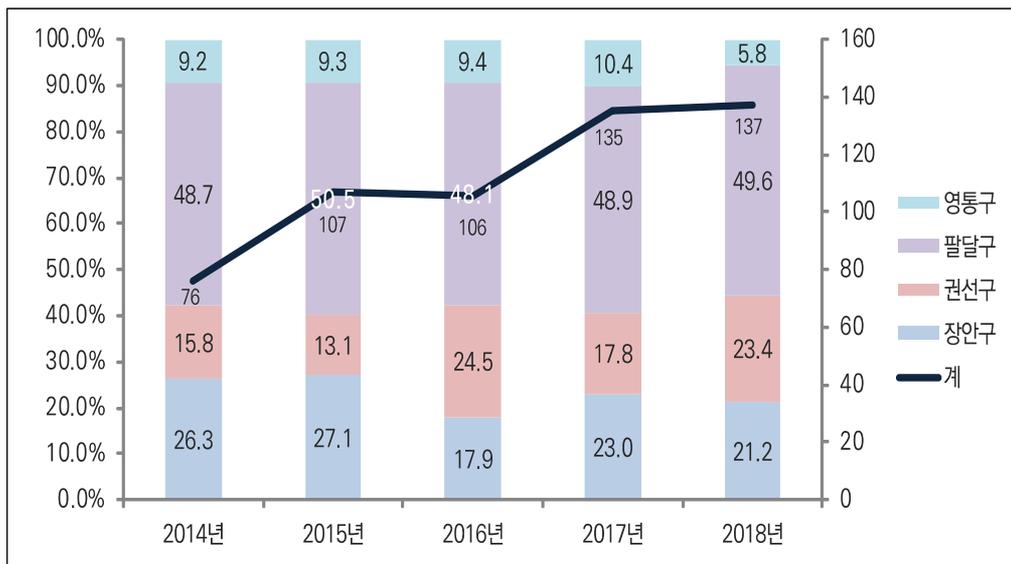
(단위 : 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76 (100.0)	107 (100.0)	106 (100.0)	135 (100.0)	137 (100.0)
장안구	20 (26.3)	29 (27.1)	19 (17.9)	31 (23.0)	29 (21.2)
권선구	12 (15.8)	14 (13.1)	26 (24.5)	24 (17.8)	32 (23.4)
팔달구	37 (48.7)	54 (50.5)	51 (48.1)	66 (48.9)	68 (49.6)
영통구	7 (9.2)	10 (9.3)	10 (9.4)	14 (10.4)	8 (5.8)

자료 : 수원시 4개 구 사회복지과

〈그림 5-9〉 수원지역 장애인보장구 수리 현황(2014~2018)

(단위 : 건, %)



자료 : 수원시 4개 구 사회복지과

2) 시설물 접근 및 편의시설 장애

(1) 편의시설 설치율

-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08년부터 보건복지부를 통해 5년 단위로 조사됨
 -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에서는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을 산정함

〈표 5-17〉 편의시설 설치율 및 적정 설치율 산정방법 및 내용

구분	산정방법	내용
설치율	$\text{설치율}(\%) = \frac{\text{적정(1),미흡(2)답변수}}{\text{적정항목수}} \times 100$	편의시설이 설치된 정도
적정설치율	$\text{적정설치율}(\%) = \frac{\text{적정(1)답변수}}{\text{전체항목수}} \times 100$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된 정도

자료 : 보건복지부 · 한국장애인개발원(2018).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경기도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편의시설 설치율은 경기도와 수원시 모두 동일하게 증가 추세이며, 특히 수원시는 경기도 평균보다 높음
 - 한 시설(건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전체 편의시설 항목 중 조사를 통해 그 시설(건물)에 설치된 편의시설 항목수의 비율을 의미하는 ‘편의시설 설치율’은 수원시의 경우 72.2%(2008년), 82.5%(2013년), 88.0%(2018년)으로 증가 추세임
-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된 정도를 의미하는 적정설치율의 경우, 경기도는 2008년 62.4%, 2013년 69.5%, 2018년 77.6%로 증가 추세이며, 수원시도 61.8%(2008년), 70.2%(2013년), 82.8%(2018년)로 증가 추세임
 - 수원시의 적정 설치율은 2013년과 2018년은 경기도 평균보다 높음

〈표 5-18〉 경기도, 수원시 편의시설 설치율 및 적정 설치율(2008~2018)

(단위 : %)

구분	2008년		2013년		2018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편의시설 설치율	69.6	72.2	78.6	82.5	82.2	88.0
적정 설치율	62.4	61.8	69.5	70.2	77.6	82.8

자료 : 보건복지부 · 한국장애인개발원(2018).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경기도

(2) 무장애 통합놀이터

- 수원시는 2017년부터 민선7기 시민의 정부를 실행하기 위해 3대 분야, 10개 핵심사업 중 하나로 ‘꿈꾸는 무장애 놀이터’를 계획함(수원시, 2017)
 - 시민의 정부란 “주권자인 시민의 뜻에 따라 시민참여 및 시민자치를 시정 전반에서 실현하기 위해, 시정 전 분야를 대상으로 참여·협치·포용 사업을 발굴하고 실행 추진하기 위한 수원시의 정책선언”을 의미함
 - 3대 분야는 ‘참여가 즐겁다, 유쾌한 참여’, ‘수원을 만들다, 올바른 협치’, ‘사람을 가싸다, 따뜻한 포용’이며 9대 전략 20대 전략과제, 49개 실행사업을 제안함
 - 10대 핵심사업으로 시민자치대학,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참시민 토론회, 소통박스, 아파트 민주주의, 공유경제 활성화, 아고라 정책토론, 청소년의회, 인권영향평가, 꿈꾸는 무장애놀이터를 제안함

〈표 5-19〉 수원 시민의정부 10대 사업

구분	사업명	담당부서
10대 사업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시민자치대학’	정책기획과
	꿈이 현실이 되는 세상 ‘온라인 플랫폼’	정책기획과
	참여하는 시민들의 민주주의 ‘참시민 토론회’	시민소통기획관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담은 ‘소통박스’	시민소통기획관
	문밖 이웃들과 함께 하는 ‘아파트 민주주의’	공동주택관리과
	시민이 함께 나눠쓰는 ‘공유경제 활성화’	지역경제과
	시민들의 정책 공론장 ‘아고라 정책토론’	정책기획과
	19세 이하 청소년들의 목소리 ‘청소년 의회’	교육청소년과
	차별없는 세상 ‘인권영향 평가’	감사관
	어린이가 만드는 ‘꿈꾸는 무장애 놀이터’	생태공원과

자료 : 수원시(2017) 「수원 시민의 정부」 기본계획

- 수원시는 2018년 6월 팔달구 화서동 양지말 어린이공원에 제1호 무장애통합놀이터를 조성하였으며,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어린이공원 분야 전국 최초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최우수 등급을 획득함(수원시, 2018)
 - 장벽이 없는 놀이터를 뜻하는 무장애 통합놀이터는 장애 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가 불편 없이 함께 놀고 즐길 수 있는 ‘사회적 통합 놀이터’를 의미함(수원시, 2018)
 - 시민의 정부 10대 핵심 사업으로 무장애놀이터 1개소를 계획함

〈그림 5-10〉 수원시 양지말어린이공원 무장애통합놀이터



자료 : 수원시청 홈페이지

- 2019년 11월에는 팔달구에 전국 최대 규모의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1개소를 추가적으로 조성할 계획임

3) 의사소통 · 정보 장애

- 청각 · 언어장애인의 원활한 민원상담을 위해 수화통역센터로 연결되는 화상전화를 행정동별로 설치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 관리되는 실적은 낮음
 - 현재 44개 행정동 중 세류3동, 지동, 우만1동, 우만2동, 망포2동에서만 실질적으로 운영됨

〈표 5-20〉 수원시 행정동별 청각/언어 장애인용 화상전화기 보유 현황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행정동	설치 여부						
파장동	X	세류1동	X	매교동	X	매탄1동	X
울천동	X	세류2동	X	매산동	X	매탄2동	X
정자1동	X	세류3동	○	고등동	X	매탄3동	X
정자2동	X	평동	X	화서1동	X	매탄4동	X
정자3동	X	서둔동	X	화서2동	X	원천동	X
영화동	X	구운동	X	지동	○	영통1동	X
송죽동	X	금곡동	X	우만1동	○	영통2동	X
조원1동	X	호매실동	X	우만2동	○	영통3동	X
조원2동	X	권선1동	X	인계동	X	망포1동	X
연무동	X	권선2동	X	행궁동	X	망포2동	○
		곡선동	X			광교1동	X
		입북동	X			광교2동	X

주 1 : 구별 취합자료

2 : 'o'는 설치되어 있음, 'x'는 미설치지역임을 의미함

4) 차별인식의 장애

■ 장애 인식개선 교육

- 2015년 12월 29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25조 2항에 의거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지자체는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수원시의 경우 보건소, 학교, 어린이집, 장애인종합복지관,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함

〈그림 5-11〉 수원지역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사례



자료 1 :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
2 :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 2017년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인식개선과 관련하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수행할 때 ‘과중한 업무부담 및 다른 업무와의 중복’(58.2%),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된 정보의 부족’(53.8%),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사섭외’(55.4%)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이 50.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17)

-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수원지역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는 기관들과 인식개선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3차례 회의 및 실태조사를 진행함

〈표 5-21〉 장애 인식개선 교육 수행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 정도

(단위 : %)

구분	계	어렵지 않음	보통	어려움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	100.0	23.9	32.6	43.5
과중한 업무부담 및 다른 업무와의 중복성	100.0	14.7	27.2	58.2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된 정보의 부족	100.0	23.4	22.8	53.8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운영비 부족	100.0	31.0	29.3	39.7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사섭외	100.0	22.8	21.7	55.4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사의 빌 보장의 문제	100.0	23.4	27.7	48.9

자료 :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2017). 수원시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태조사 보고회

-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내실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한 1순위로는 ‘교육자료 및 강사 인력 풀 공유체계 구축’(20.1%), 2순위는 ‘교육자료 및 강사 인력풀 공유체계 구축 및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전담강사 양성’이 각각 15.2%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5-22〉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수원시 정책 1순위·2순위

(단위 : %)

구분	1순위	2순위
장애 인식개선 교육 담당자의 역량강화	10.9	2.7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사의 역량강화 교육	5.4	14.7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사의 검증체계 구축	3.3	3.8
교육자료 및 강사 인력풀 공유체계 구축	20.1	15.2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전담강사 양성	9.2	15.2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예산지원 확대	13.0	12.0
수준별 교육교재 개발-학년별, 장애정도 등	11.4	11.4
교육교재의 표준화 작업(매뉴얼 개발)	6.5	9.2
교육방법의 다변화	4.9	9.2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	14.7	6.0
기타	0.5	0.5
계	100.0	100.0

자료 :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2017). 수원시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태조사 보고회

제3절 무장애도시 조성 관련 수원시 SWOT 분석

1. SWOT 분석

■ 강점(Strength)

- 수원시는 3개 친화인증도시(아동, 여성, 고령)를 지정받은 유일한 지자체임
 - 수원시는 2017년 9월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음
 - 수원시는 2010년 1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를 인증을 받고 2015년에는 재인증을 받음
 - 수원시는 2016년 6월 국내에서 3번째로 고령친화도시 가입 인증을 받았으며, 현재는 재인증을 위해 준비 중에 있음
- 무장애도시 환경조성을 위해 분야별로 이미 정책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 수원시는 이미 선도적으로 수원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영향평가제도와 공감디자인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을 통해 무장애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가 이미 갖추어져 있음
 -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경기도 최초로 2017년 11월부터 수원시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음

■ 약점(Weakness)

- 수원시 예산의 한계로 인해 신규 정책개발의 어려움 발생
 - 삼성전자의 매출부진으로 인해 수원시의 세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소득세가 최대 1천억원 가량 감소할 것이 예상되어 2020년 예산에서 신규 사업 및 증액사업은 타당성 조사 등을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수원시 내부자료, 2019)
- 무장애도시 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
 - 수원시는 무장애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과, 대중교통과, 생태공원과, 도시디자인과 등에서 영역별로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컨트롤하는 주체가 없어 각 부서별로 분절되어 시행되고 있음
- 정책의 낮은 실행력 및 내실화의 부족
 - 수원시는 지자체 최초로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수원시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이 시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도로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사후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제로 법적 규제가 없다보니 아직까지는 의무화가 되지 않고 있어 실행력이 낮음
- 2018년 조성한 무장애통합놀이터는 전국 최고로 BF인증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나, 실제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미설치로 인해 정작 장애 영유아는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제기됨(에이블뉴스, 2018.11.21; 경인방송, 19.01.02)

■ 기회(Opportunity)

○ 무장애 대상 및 영역의 확대

- 관광약자를 위하여 열린관광도시 등이 강조됨. 이에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접근성안내센터를 개소하여 이동에 제약이 있는 관광약자들이 제주도에서 접근 가능한 지역에 대한 코스북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음

〈그림 5-12〉 접근가능한 제주관광 이지제주



자료 : 관광약자접근성안내센터·제주특별자치도·제주관광공사(2016). 접근가능한 제주관광 이지제주

- 대구광역시시는 장애인이 좀 더 편리하고 쉽게 대구시를 즐길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관광전문 홈페이지 '무장애로 즐기는 대구관광'을 제작하여 운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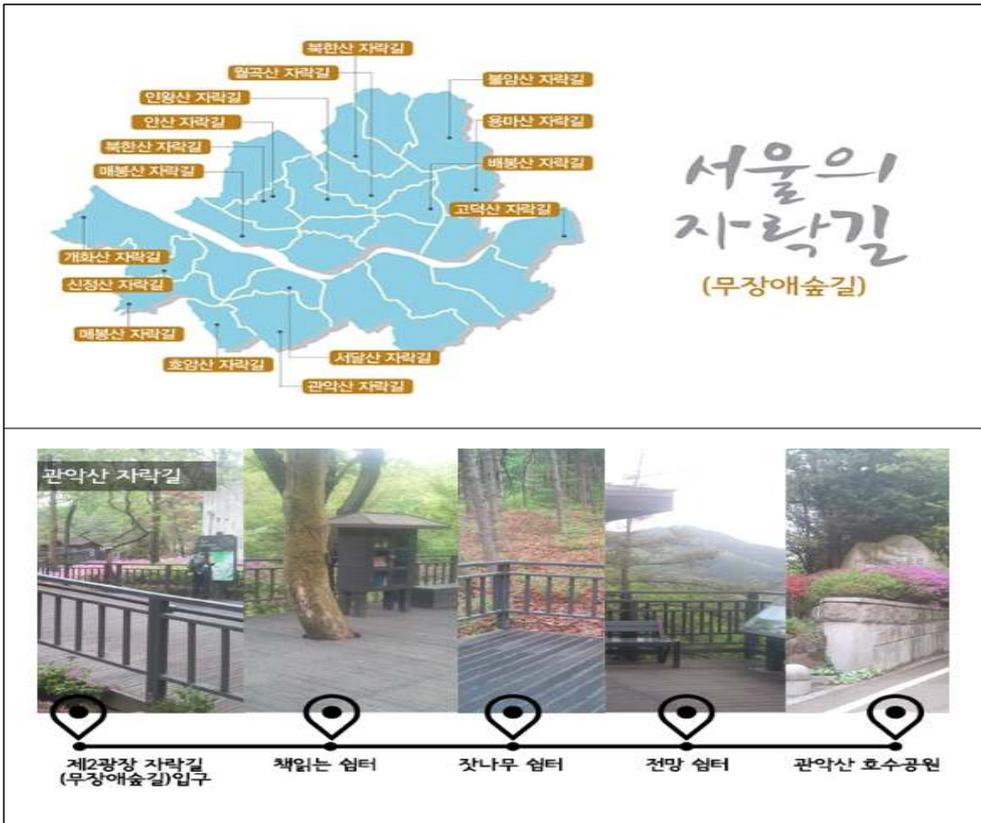
〈그림 5-13〉 무장애로 즐기는 대구관광 홈페이지



자료 : 무장애로 즐기는 대구관광 홈페이지(<http://www.wheeltour.or.kr/main>)

- 서울시 또한 2018년부터 장애인, 임산부 등 관광약자를 응대하는 ‘무장애 관광서비스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으며, 관광약자라 함은 장애인이나 어르신, 임산부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로 대상을 확대하여 접근하고 있음
- 또한 서울시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숲길(=자락길)을 조성함

〈그림 5-14〉 서울 자락길(무장애숲길)



자료 : 서울씨 블로그(<https://m.post.naver.com/myProfile.nhn?memberNo=183099>)

■ 위협(Threat)

- 영역별 분절된 체계로 강조된 무장애 정책의 중요성
 - 무장애 환경조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편의시설, 공원, 여가, 관광 등 다양한 영역에서 무장애와 관련된 영역과 정책 등이 확대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영역별 연계체계가 연계되기 보다는 영역이나 분야별로 정책이 산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2. SWOT 분석 전략

- SO전략
 -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및 영역별 대상의 확대
 - 무장애정책의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의 개발
- WO전략
 - 무장애도시 사각지대 정책의 개발
 - 기존 무장애 관련 정책의 내실화
 - 무장애정책의 컨트롤타워 구축
- ST전략
 - 장애인을 조금 더 고려한 무장애정책의 개발
 - 정책의 연속성 및 연계성 강화
- WT전략
 - 무장애도시정책의 내실화
 - 무장애정책의 컨트롤타워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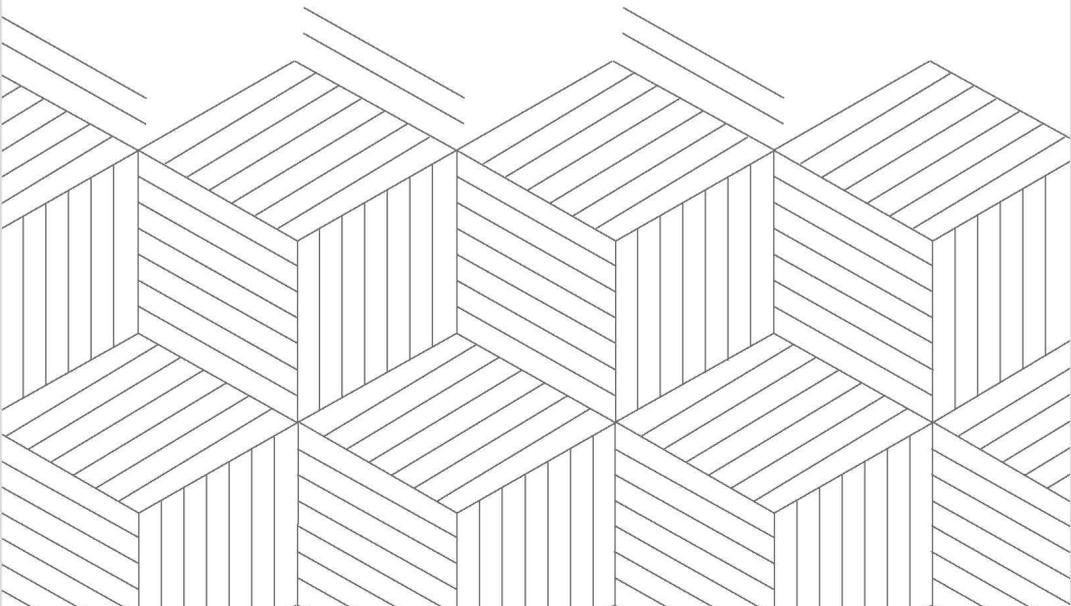
〈표 5-23〉 수원시 무장애도시 환경조성 관련 SWOT 분석

내부환경		강점(S)	약점(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친화인증도시(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 무장애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적 제도 마련 (공감디자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 예산의 한계로 인한 신규 정책개발의 어려움 ◦ 무장애도시 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 ◦ 정책의 낮은 실행력 및 내실화
외부환경		〈SO 전략〉	〈WO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및 영역별 대상의 확대 ◦ 무장애정책의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의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장애도시 사각지대 정책의 개발 ◦ 기존 무장애 관련 정책의 내실화 ◦ 무장애정책의 컨트롤타워 구축
기회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장애 대상의 확대 ◦ 무장애도시 영역의 확대 		
위협 (T)		〈ST 전략〉	〈WT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을 조금 더 고려한 무장애 정책의 개발 ◦ 정책의 연속성 및 연계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장애도시정책의 내실화 ◦ 무장애정책의 컨트롤타워 구축

제6장

수원시 무장애도시 추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2020~2023)

제1절 비전 및 추진방향
제2절 추진체계
제3절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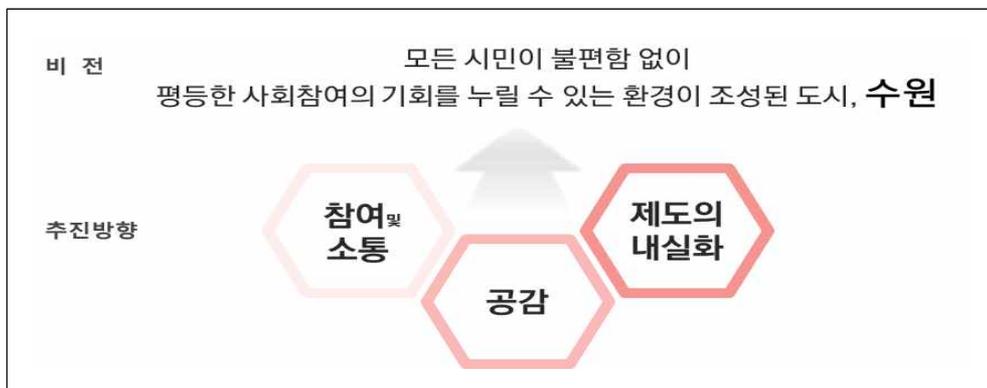
제6장

수원시 무장애도시 추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2020~2023)

제1절 비전 및 추진방향

- 무장애도시 추진을 위한 수원시 중장기 기본계획(2020~2023)의 비전은 ‘모든 시민이 불편함 없이 평등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도시, 수원’으로 설정함
-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추진방향은 ‘참여 및 소통’, ‘공감’, ‘제도의 내실화’로 설정함
 - 첫 번째 추진방향인 ‘참여 및 소통’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무장애 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과정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함
 - 두 번째 추진방향인 ‘공감’은 장애가 있는 환경으로부터 느끼는 불편함, 기분 등의 감정을 이해하고, 무장애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장애를 경험하는 특정인을 위한 배려의 개념보다는 권리로서 인식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함
 - 세 번째 추진방향인 ‘제도의 내실화’는 새롭게 무장애도시와 관련된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수원시가 이미 실행하고 있는 무장애도시 관련 제도 및 정책을 내실화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그림 6-1〉 수원시 무장애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2020~2023)의 비전 및 추진방향



제2절 추진 체계

- 수원시 무장애도시 추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은 장애인복지과에서 혼자 수행할 수 없으며 수원시 타 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장애인복지과를 컨트롤타워로 설정하되, 도시교통과, 사회복지과, 정보통신과, 도시디자인과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함

〈그림 6-2〉 수원시 무장애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2020~2023)의 협력체계



- 무장애도시 추진을 위한 공적 전달체계 이외에도 영역별로 민간기관들과 추진체계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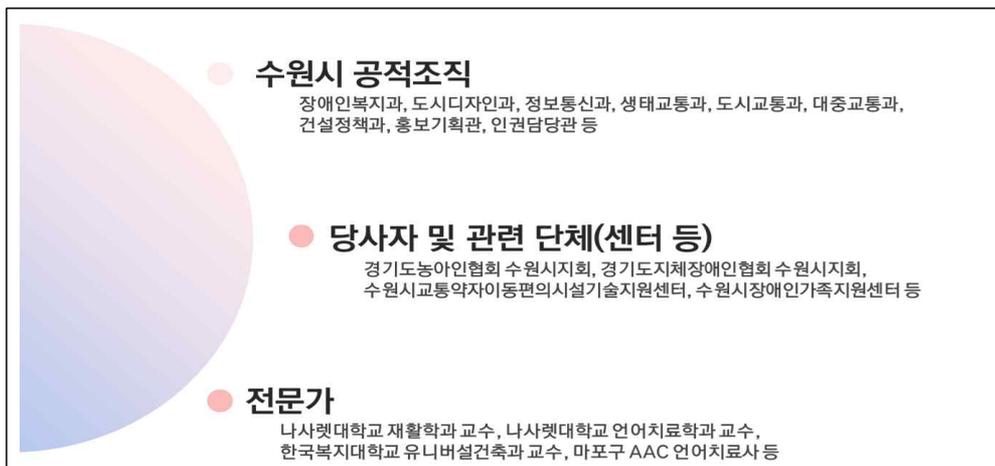
〈그림 6-3〉 수원시 무장애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2020~2023)의 민간 추진체계



제3절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

-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무장애도시 환경조성을 위해 시행해야 할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그림 6-5>와 같이 전문가 및 관련 영역별 공무원, 장애인 당사자, 시민 등을 인터뷰함
 - 장애인복지과, 도시디자인과, 대중교통과 등의 부서별 담당자를 인터뷰하였으며, 장애인 당사자 및 영역별 학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실시함

<그림 6-4> 수원시 무장애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2020~2023) 정책개발 회의



- 본 연구에서는 자문회의, 수원시 여건 및 관련 현황분석, 설문조사, 국내·외 사례조사 등을 통해 5개의 정책목표와 32개의 정책을 도출함
 - 시설물 접근·편의시설 장애영역은 ‘불편함 없이 권리를 인정받으며 이용할 수 있는 환경기반의 확대’라는 정책목표와 이를 위한 6개의 정책을 도출함
 - 교통·이동의 장애영역은 ‘원하는 곳을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는 환경기반의 확대’라는 정책목표와 13개의 정책을 도출함
 - 의사소통 및 정보의 장애영역은 ‘공감하고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기반의 확대’라는 정책목표와 6개의 정책을 도출함
 - 차별인식 영역은 ‘평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권리의식의 제고’라는 정책목표와 3개의 정책을 설정함
 - 전반적인 제도개선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무장애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및 내실화’의 정책목표와 4개의 정책을 설정함

〈그림 6-5〉 수원시 무장애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2020~2023)의 비전 및 정책목표



〈표 6-1〉 수원시 무장애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2020~2023)

장애의 영역	정책 목표	정책명		담당부서	신규/기존	단/중/장기
시설물 접근 · 편의시설	권리를 인정받으며 이용할 수 있는 환경기반의 확대	1-1.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조사 및 DB 구축	장애인복지과	기존 확대	단기
		1-2.	수원시장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운영	장애인복지과	기존	단기
		1-3.	편의시설 사후점검 확대	장애인복지과	기존 확대	단기
		1-4.	공공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도시디자인과	기존 확대	단기
		1-5.	시각약자를 배려한 안내사인 설치	도시디자인과	기존	단기
		1-6.	유니버설디자인 모니터링 사업 실시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신규	중기
교통 · 이동	원하는 곳을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는 환경기반의 확대	2-1.	특별교통수단 확대	대중교통과	기존 확대	단기
		2-2.	저상버스 도입 확대	대중교통과	기존 확대	단기
		2-3.	도로 등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 의무화	도시교통과	기존 확대	중기
		2-4.	전동휠체어 급속 충전기 관리시스템 구축	장애인복지과	신규	중기
		2-5.	수동·전동 휠체어 긴급 출동수리 서비스 실시	4개 구 사회복지과	신규	중기
		2-6.	장애인 보장구 수리	4개 구 사회복지과	기존	단기
		2-7.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 설치 확대 및 관리방안 마련	도시교통과	기존 확대	단기
		2-8.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관리 확대	4개 구 사회복지과	기존 확대	단기
		2-9.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도시교통과	기존	단기
		2-10.	장애인보장구(의료급여) 지원	사회복지과	기존	단기
		2-11.	보행 로드맵 제작 및 배포	장애인복지과	신규	중기
		2-12.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확대 및 유지·보수	수원시도시안전통합센터	기존	단기
		2-13.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도시교통과	기존	중기

장애의 영역	정책 목표	정책명	담당부서	신규/기존	단/중/장기
의사소통 · 정보	공감하고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기반의 확대	3-1. 대체의사소통 도구 개발 및 보급	장애인복지과	신규	중기
		3-2. 수원시 주요 장소에 수어통역사 예약배치제 확대	장애인복지과	기존 확대	중기
		3-3. 수어통역센터 운영	장애인복지과	기존	단기
		3-4. 수원 iTV(수원시 공식뉴스채널) 뉴스에 수어 통역 삽입 확대	언론담당관	기존 확대	단기
		3-5. 수원시청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강화	정보통신과	기존	단기
		3-6. 시각장애인 및 정보소외 계층을 위한 정보화 교육 실시	정보통신과	기존	단기
차별인식	평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권리의식 제고	4-1.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확대(찾아가는 교육) 및 내실화	장애인복지과	기존 확대	중기
		4-2. 수원시 스마트-무장애 존(Zone) 지정	장애인복지과	신규	장기
		4-3.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인과 함께하는 걷기대회	장애인복지과	기존	단기
제도개선	무장애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및 내실화	5-1. 인권영향평가 확대 시행	인권담당관	기존 확대	단기
		5-2. 무장애도시 컨트롤타워 구축 및 1차 계획 모니터링	장애인복지과	신규	단기
		5-3. 「수원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 제정	장애인복지과	신규	단기
		5-4. 무장애도시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장애인복지과	신규	중기

주 : 단·중·장기는 단기(2020년), 중기(2021~2022년), 장기(2023년)로 설정함

1. 시설물 접근·편의시설 장애 해소를 위한 정책

- 시설물 접근·편의시설 장애 해소를 위한 정책목표는 ‘권리를 인정받으며 이용할 수 있는 환경기반의 확대’이며, 6개의 정책을 제안함
 -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조사 및 DB 구축(1-1)’ 과제는 기존 장애인복지과의 정책을 확대하는 단기 정책으로 제안함
 - ‘수원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운영(1-2)’ 은 장애인복지과의 기존 정책이자 단기 정책으로 제안함
 - ‘편의시설 사후점검 확대(1-3)’는 장애인복지과의 기존 정책을 확대하는 단기 정책으로 제안함
 - ‘공공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적용(1-4)’은 도시디자인과의 정책을 확대하는 단기 정책으로 제안함
 - ‘시각약자를 배려한 안내사인 설치(1-5)’는 도시디자인과의 기존사업으로 단기 정책으로 제안함
 - ‘유니버설디자인 모니터링 사업 실시(1-6)’는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신규 정책이자 중기 정책으로 제안함

〈표 6-2〉 시설물 접근·편의시설 장애 해소를 위한 정책

정책명	담당부서	신규/기존	단/중/장기
권리를 인정받으며 이용할 수 있는 환경기반 확대			
1-1.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조사 및 DB 구축	장애인복지과	기존 확대	단기
1-2. 수원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운영	장애인복지과	기존	단기
1-3. 편의시설 사후점검 확대	장애인복지과	기존 확대	단기
1-4. 공공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도시디자인과	기존 확대	단기
1-5. 시각약자를 배려한 안내사인 설치	도시디자인과	기존	단기
1-6. 유니버설디자인 모니터링 사업 실시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신규	중기

1-1.	장애인편의시설 현장조사 및 DB구축
-------------	----------------------------

■ 필요성 및 목적

- 장애인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시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함
-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나 유모차 등이 불편 없이 찾아갈 수 있는 음식점, 숙박업소, 문화·관광시설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매체가 전무함
- 장애인 등 편의법 규정에 따라 적합성 승인된 건축물을 현장조사한 후 입력된 데이터베이스를 수원시민들에게 앱이나 시청 홈페이지에 제공함으로써 공중이용시설 이용 등 사회생활에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정책 내용

- 수원지역의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설을 모니터링 하기 위하여 장애인 2명이 수원지역의 음식점 등 장애인 등 편의법 규정에 따라 승인된 건축물을 현장조사를 실시함
- 현장 조사된 내용에 편의시설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스마트 앱 또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수원시민들에게 공유하고자 함
 - 2019년 7월부터 경기도에 의해 시행되는 신규 정책임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표	편의시설 갖춰진 업소 현장조사	300개소	400개소	500개소	600개소
예산	계	28,625	29,770	30,960	32,198
	국비	-	-	-	-
	도비	8,587	8,931	9,288	9,659
	시비	20,038	20,839	21,672	22,539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과제구분		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존/신규	단/중/장기	담당부서	담당자		
기존 확대	단기	주무부서	장애인복지과	허유리 주무관	031-228-2207
		협조부서	-	-	-

1-2.	수원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운영
-------------	----------------------------

■ **필요성 및 목적**

- 편의시설 전문 인력을 두어 건축행위 시 도면검토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수원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업무 대행
 - 편의시설 관련 기술자문, 실태조사, 교육·홍보 등을 추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및 인식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침

■ **관련 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 **정책 내용**

- 수원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도면검토, 사용승인)
 - 편의시설 사후점검 및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운영관련 교육
 - 장애인편의시설 종합상담센터 운영 및 홍보사업 확대(교육, 설치매뉴얼 배포 등)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표	수원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운영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예산	계	231,128	240,373	249,988	259,987
	국비	-	-	-	-
	도비	19,500	19,500	19,500	19,500
	시비	211,628	220,873	230,488	240,487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과제구분		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존/신규	단/중/장기	담당부서		담당자	
기존	단기	주무부서	장애인복지과	허유리 주무관	031-228-2207
		협조부서	-	-	-

1-3.	편의시설 사후점검 확대
-------------	---------------------

■ 필요성 및 목적

- 수원시는 장애인 편의시설 사후점검 실시를 통해 편의시설 제거를 방지하고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할 책무가 있음
- 편의시설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나 신고 이후 변경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편의시설에 대한 사후점검이 잘 되지 않고 있음
-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도모와 더불어 사후점검 시 건축주에게 점검안내를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효과를 증진시켜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3조(시정명령 등) 및 제24조(이행 강제금)

■ 정책 내용

- 규정에 따라 대상시설 사용승인 후 1년 이상 2년 이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실시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315개소(2019년 기준, 2017년 사용승인 건물)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표	편의시설 사후점검 확대	315개소	330개소	340개소	350개소
예산	계	231,128	240,373	249,988	259,987
	국비	-	-	-	-
	도비	19,500	19,500	19,500	19,500
	시비	211,628	220,873	230,488	240,487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과제구분		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존/신규	단/중/장기	담당부서		담당자	
기존 확대	단기	주무부서	장애인복지과	허유리 주무관	031-228-2207
		협조부서	-	-	

1-4.	공공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	-------------------------

■ **필요성 및 목적**

-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0조(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 협의)에 의거하여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업무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 나이, 성별, 장애의 유무,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원시 내 공공건축물에 유니버설디자인을 확대·적용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0조(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 협의)

■ **정책 내용**

- 공공건축물 설계 검토 시, 이동 및 사용공간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표	공공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1	1	1	1
예산	계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국비				
	도비				
	시비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과제구분		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존/신규	단/중/장기	담당부서	담당자	
기존	단기	주무부서	도시디자인과	031-228-3439
확대		협조부서	-	

1-5.	시각약자를 배려한 안내사인 설치
-------------	--------------------------

■ **필요성 및 목적**

- 종합적인 디자인 계획·설치를 통해 시각약자의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0조(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 협의)

■ **정책 내용**

- 시각약자를 배려한 안내사인 설치
 - 장식적인 요소 배제, 가독성 확보
 - 일관성 있는 서체·색상·형태 적용
 - 동선·시야를 고려한 적절한 안내사인 유형·크기·위치·수량 선정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표	시각약자를 배려한 안내사인 설치	2개	2개	2개	2개
예산	계	40,000	40,000	40,000	40,000
	국비	-	-	-	-
	도비	-	-	-	-
	시비	40,000	40,000	40,000	40,000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과제구분		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존/신규	단/중/장기	담당부서	담당자	
기존	단기	주무부서	도시디자인과	최하영 주무관
		협조부서	-	-
				031-228-3439
				-

1-6.	유니버설디자인 모니터링 사업 실시
-------------	---------------------------

■ **필요성 및 목적**

- 장애인, 노인, 영유아 동반자 등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의미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은 무장애도시 환경조성이 강조되면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그러나 유니버설 디자인이 설치된 이후 모니터링 하는 체계가 부재하다보니 처음과 다르게 변형되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그리하여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경기도지속가능발전목표(G-SDGS) 목표 11(누구나 행복한 삶의 질을 누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조성한다)에 의거하여 향후 공공시설 유니버설디자인을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 계획을 발표함
- 이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유지·확대하기 위하여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먼저 유니버설 디자인 모니터링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함

■ **정책 내용**

- 경기도 지역 내 유니버설디자인 모니터링 사업 실시(시범~확대)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30년까지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가 제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임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표	유니버설디자인 모니터링 사업	-	시범 실시	시범 실시	확대
예산	계	-	30,000	30,000	30,000
	국비	-	-	-	-
	도비	-	30,000	30,000	30,000
	시비	-	-	-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과제구분		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존/신규	단/중/장기	담당부서	담당자		
신규	중기	주무부서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슬기 팀장	031-8008-8092
		협조부서	-	-	

2. 교통·이동 장애 해소를 위한 정책

- 교통·이동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수원시 중장기 정책목표는 ‘원하는 곳을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는 환경기반의 확대’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세부적인 정책과제로 13개의 정책을 제안함
 - 대중교통과의 세부 정책은 ‘특별교통수단 확대(2-1)’와 ‘저상버스 도입 확대(2-2)’를 기존 확대 정책으로 제안함
 - 도시교통과의 정책으로는 ‘도로 등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 의무화(2-3)’,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 설치 확대 및 관리방안 마련(2-7)’,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2-9)’,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2-13)’ 정책을 제안함
 - 장애인복지과의 정책으로는 ‘전동휠체어 급속 충전기 관리시스템 구축(2-4)’와 ‘보행 로드맵 실시(2-11)’을 제안함
 - 시청과 구청의 사회복지과에서 수행해야 할 정책으로는 ‘수동·전동 휠체어 긴급 출동수리서비스 실시(2-5)’, ‘장애인 보장구 수리(2-6)’,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관리 확대(2-8)’, ‘장애인보장구(의료급여) 지원(2-10)’을 제안함

〈표 6-3〉 교통·이동 장애 해소를 위한 정책

정책명	담당부서	신규/기존	단/중/장기
원하는 곳을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는 환경기반의 확대			
2-1. 특별교통수단 확대	대중교통과	기존 확대	단기
2-2. 저상버스 도입 확대	대중교통과	기존 확대	단기
2-3. 도로 등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 의무화	도시교통과	기존 확대	중기
2-4. 전동휠체어 급속 충전기 관리시스템 구축	장애인복지과	신규	중기
2-5. 수동·전동 휠체어 긴급 출동수리 서비스 실시	4개 구 사회복지과	신규	중기
2-6. 장애인 보장구 수리	4개 구 사회복지과	기존	단기
2-7.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 설치 확대 및 관리방안 마련	도시교통과	기존 확대	단기
2-8.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관리 확대	4개 구 사회복지과	기존 확대	단기
2-9.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도시교통과	기존	단기
2-10. 장애인보장구(의료급여) 지원	사회복지과	기존	단기
2-11. 보행 로드맵 제작 및 배포	장애인복지과	신규	중기
2-12.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확대 및 유지·보수	수원시도시안전통합센터	기존	단기
2-13.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도시교통과	기존	중기

2-1.	특별교통수단 확대
-------------	------------------

■ 필요성 및 목적

- 수원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기준에 따른 장애인콜택시의 법정대수는 매년 초과하여 확대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동편의를 위해 수원시에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지원정책에서 1순위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정책 내용

-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을 통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교통약자 통행권 보장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표	특별교통수단 확대	16대	16대	4대	10대
예산	계	720,000	752,000	196,000	510,000
	국비	-	-	-	-
	도비	216,000	225,600	58,800	153,000
	시비	504,000	526,400	137,200	357,000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과제구분		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존/신규	단/중/장기	담당부서	담당자	
기존 확대	단기	주무부서	대중교통과	031-228-3323
		협조부서	-	
			김익국 주무관	
			-	

2-2.	저상버스 도입 확대
-------------	-------------------

■ **필요성 및 목적**

- 수원시는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수단인 저상버스를 운영하고 있음
- 2018년 저상버스 도입률은 25.4%로 전국 평균(23.4%)과 경기도(12.7%)보다 높음
- 그러나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증진하기 위해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 **정책 내용**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제고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확대
- 운수업체 수요파악을 통한 저상버스 지속 도입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표	저상버스 확대	50대	35대	32대	31대
예산	계	4,598,400	3,218,880	2,942,970	2,851,000
	국비	2,299,200	1,609,440	1,471,485	1,425,500
	도비	344,880	241,416	220,722	213,825
	시비	1,945,320	1,368,024	1,250,762	1,211,675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과제구분		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존/신규	단/중/장기	담당부서	담당자	
기존 확대	단기	주무부서	대중교통과	최은정 주무관
		협조부서	-	-

2-3.	도로 등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 의무화
-------------	--------------------------------

■ 필요성 및 목적

- 수원시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국 지자체 최초로 「수원시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조례에 대한 강제력이 미약하여 실제로 보행권과 관련된 사전·사후 점검에 대한 의무화가 되지 않아 최근 완공되는 도로, 여객시설 등에 이동편의시설이 다수 부적합하게 설치됨
- 이동편의시설 불편과 관련된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원시민의 도로편의성을 위하여 이에 대한 사전·사후점검을 의무화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 정책 내용

-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의 의무화를 위한 조례 개정
- 도로 등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 의무화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표	센터의 사전·사후점검 의무화를 위한 조례개정 및 의무화	1	1	1	1
예산	계	160,000	180,000	200,000	220,000
	국비	0	0	0	0
	도비	0	0	0	0
	시비	160,000	180,000	200,000	220,000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과제구분		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존/신규	단/중/장기	담당부서		담당자		
기존 확대	중기	주무부서	도시교통과	박상현 주무관		031-228-2868
		협조부서	-	-		

2-4. 전동휠체어 급속 충전기 관리시스템 구축

■ 필요성 및 목적

- 이동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 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이 필요하며, 이동수단으로 전동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충전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임
- 이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 주도로 전동 보장구 충전기 설치를 확산하고 있으나, 설치 위치정보 제공 미흡, 충전기 고장 및 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이용이 불편함
- 따라서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확산과 더불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 편의성 증가 및 관리 효율화를 증진시키고자 함

■ 정책 내용

-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및 사후관리
 - 현재 27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2019년 하반기 28대가 추가 설치될 예정
 - 사후관리는 정기점검 및 A/S 연락체계 유지
- 홈페이지 급속충전기 설치장소 안내 및 장애인 단체 등을 통한 홍보 실시, 모바일서비스 활용방법 강구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표	전동휠체어 급속 충전기 관리시스템 구축	55대	61대	67대	73대
예산	계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국비	-	-	-	-
	도비	-	-	-	-
	시비	-	-	-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과제구분		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존/신규	단/중/장기	담당부서		담당자	
신규	중기	주무부서	장애인복지과	허유리 주무관	031-228-2207
		협조부서	-	-	-

2-5.	수동·전동 휠체어 긴급 출동수리 서비스 실시
-------------	---------------------------------

■ 필요성 및 목적

- 장애인 및 노인들이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중에 고장, 배터리 방전 등으로 인해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함
- 이를 대처하기 위하여 긴급 출동수리서비스를 준비하여 이동용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노인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함

■ 정책 내용

- 수동·전동 휠체어 긴급 출동수리 서비스 실시
 - 긴급 출동수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선정 및 운영(직원 및 차량)
 - 긴급 출동수리서비스 제공 범위 결정
 -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이용자 및 주 사용범위 사전 조사
 - 긴급 출동수리서비스 기관 운영위원회 구성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표	수동전동 휠체어 긴급 출동 수리서비스 실시	10대	10대	10대	10대
예산	계	4,000	4,000	4,000	4,000
	국비				
	도비				
	시비	4,000	4,000	4,000	4,000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과제구분		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존/신규	단/중/장기	담당부서	담당자		
신규	중기	주무부서	장안구 사회복지과	유기현 주무관	031-228-5311
			권선구 사회복지과	이민정 주무관	031-228-6258
			팔달구 사회복지과	최혜원 주무관	031-228-7314
			영통구 사회복지과	정은경 주무관	031-228-8864
		협조부서	-	-	-

2-6.	장애인 보장구 수리
-------------	-------------------

■ 필요성 및 목적

-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 저소득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보장구를 수리하고자 함
- 수급장애인과 비수급장애인의 차등 지원으로 사회적 형평성 제고

■ 관련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 및 재활치료)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 정책 내용

-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장구 수리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 수리대상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의자 등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표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확대	277건	278건	279건	280건
예산	계	33,540	34,040	34,040	34,540
	국비	0	0	0	0
	도비	0	0	0	0
	시비	33,540	34,040	34,040	34,540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과제구분		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존/신규	단/중/장기	담당부서	담당자		
기존	단기	주무부서	장안구 사회복지과	유기현 주무관	031-228-5311
			권선구 사회복지과	이민정 주무관	031-228-6258
			팔달구 사회복지과	최혜원 주무관	031-228-7314
			영통구 사회복지과	정은경 주무관	031-228-8864
		협조부서	-	-	-

2-7.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 설치 확대 및 관리방안 마련
-------------	------------------------------------

■ 필요성 및 목적

- 「주차장법」 제6조제2항 및 「수원시 주차장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단속·강제 규정이 전무하여 관리가 되지 않음
-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은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 법적 설치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주차장에 교통약자 우선주차 구획으로 설치해야 함
- 공공시설물 주차장의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의 자율적 확대를 권장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주차장법」 제6조제2항
- 「수원시 주차장 조례」 제18조의2

■ 정책 내용

-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의 자율적 확대 및 단속·강제 근거 법령 마련
- 수원시 교통약자 주차장 표준화를 위해 시범적으로 수원시청 및 기타 관공서에 교통약자 주차장을 도입 및 관리·운영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표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 설치 확대 및 관리방안 마련	주차구획 3%	주차구획 3%	주차구획 4%	주차구획 5%
예산	계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국비				
	도비				
	시비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과제구분		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존/신규	단/중/장기	담당부서		담당자	
기존 확대	단기	주무부서	도시교통과	이민우 주무관	031-228-2698
		협조부서	-	-	-

2-8.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관리 확대
-------------	----------------------------

■ 필요성 및 목적

-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하여 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제5항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수원시 주차장 조례」 제14조

■ 정책 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면수 확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인력 및 장비 확보
- 과태료 징수율 제고
- 장애인주차구역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14,100건	14,700건	15,300건	15,900건
예산	계	4,000	4,000	4,500	4,500
	국비	0	0	0	0
	도비	0	0	0	0
	시비	4,000	4,000	4,500	4,500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과제구분		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존/신규	단/중/장기	담당부서	담당자		
기존 확대	단기	주무부서	장안구 사회복지과	배현재 주무관	031-228-7256
			권선구 사회복지과	노상욱 주무관	031-228-6315
			팔달구 사회복지과	박미연 주무관	031-228-5240
			영동구 사회복지과	김영식 주무관	031-228-8866
		협조부서	장애인복지과	이영애 주무관	031-228-3336

2-9.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	----------------------------------

■ 필요성 및 목적

-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현재 수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수원시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는 해마다 증가하는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으며, 도로, 여객시설 및 교통수단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관련 근거

-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제4조(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정책 내용

-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지속적·효율적 운영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표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	-	-	-
예산	계	160,000	180,000	200,000	220,000
	국비	0	0	0	0
	도비	0	0	0	0
	시비	160,000	180,000	200,000	220,000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과제구분		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존/신규	단/중/장기	담당부서		담당자	
기존	단기	주무부서	도시교통과	박상현 주무관	031-228-2868
		협조부서	-	-	

2-10.	장애인보장구(의료급여) 지원
-------	-----------------

■ 필요성 및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활동 및 이동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관련 근거

- 「의료급여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4조 및 제5조

■ 정책 내용

- 의료급여 수급자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장애유형에 따른 보장구(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구입비용 지원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표	장애인보장구 지원건수	400	420	430	440
예산	계	500,000	530,000	550,000	570,000
	국비	400,000	424,000	440,000	456,000
	도비	70,000	74,200	77,000	79,800
	시비	30,000	31,800	33,000	34,200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과제구분		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존/신규	단/중/장기	담당부서		담당자	
기존	단기	주무부서	사회복지과	김상미 주무관	031-228-3969
		협조부서			

2-11.	보행 로드맵 제작 및 배포
--------------	-----------------------

■ 필요성 및 목적

- 수원시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함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행 로드맵을 제작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정책 내용

- 수원시장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와 수원시에서 편의시설 및 보행 등이 편리한 길을 알려주는 보행 로드맵 어플 및 홈페이지 운영
 - 예시) 휠체어로 가기 편한 길, 유모차가 이동하기 편한길 등을 알려주면 이와 관련된 편의시설 정보까지 함께 제공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표	보행 로드맵 제작 및 배포	-	10,000	10,000	10,000
예산	계	-	-	-	-
	국비	-	-	-	-
	도비	-	-	-	-
	시비	-	10,000	10,000	10,000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과제구분		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존/신규	단/중/장기	담당부서		담당자	
신규	중기	주무부서	장애인복지과	허유리 주무관	031-228-2207
		협조부서			

2-12.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확대 및 유지·보수
--------------	--------------------------------

■ 필요성 및 목적

- 시각장애인들의 보편적 교통복지를 제공하고, 경제활동 지원 및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확대하고, 기존의 음향신호기를 유지·보수하고자 함

■ 정책 내용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확대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유지·보수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유지·보수	실행	실행	실행	실행
	확대	5대 확대	5대 확대	5대 확대	5대 확대
예산	계	75,000	75,000	75,000	75,000
	국비	-	-	-	-
	도비	-	-	-	-
	시비	75,000	75,000	75,000	75,000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과제구분		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존/신규	단/중/장기	담당부서	담당자	
기존	단기	주무부서	수원시도시안전 통합센터	장호철 주무관
		협조부서	-	-

2-13.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	--------------------------

■ **필요성 및 목적**

- 수원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9년 1월 8일 제정된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
- 시장은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에 의거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현재 수원시는 이를 근거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수원시 도시교통과 교통행정팀에서는 2017년 12월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본 계획의 시행시기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임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2) 여객시설에 대한 조사와 개선계획, 3)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제공과 개선계획, 4)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시켜야 함
- 이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의미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을 지속적으로 수립·시행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함

〈표 6-4〉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근거 및 내용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제7조(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이동편의 증진계획" 이라 한다) 수립 시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2. 여객시설에 대한 조사와 개선계획 3.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제공과 개선계획 4.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관련 근거

-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의 수립)

■ 정책 내용

-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및 시행
 - 2022년 수립, 2023년~2027년 시행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표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및 시행	-	-	수립	시행
예산	계			740,000	
	국비			-	
	도비			-	
	시비			740,000	

주 1 : 수립비용은 2017년 수립시 용역비를 기준으로 제시함

2 : 2023년 시행예산은 정책과제에 따라 상이해지므로 미기재함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과제구분		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존/신규	단/중/장기	담당부서		담당자	
기존	중기	주무부서	도시교통과	조양숙 주무관	031-228-2308
		협조부서	-	-	

3. 의사소통·정보 장애 해소를 위한 정책

- 의사소통·정보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목표는 ‘공감하고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기반의 확대’이며, 이를 위한 6개의 정책을 제안함
 - ‘대체의사소통 도구 개발 및 보급(3-1)’의 정책은 장애인복지과의 신규 정책이자 중기 정책으로 제안함
 - ‘수원시 주요 장소에 수어통역사 예약 배치제 확대(3-2)’ 정책은 장애인복지과의 기존 정책을 확대하는 중기 정책으로 제안함
 - ‘수어통역센터 운영(3-3)’은 장애인복지과의 기존 정책이자, 단기 정책으로 제안함
 - 언론담당관에서 시행해야 하는 ‘수원 iTV(수원시 공식뉴스채널) 뉴스에 수어 통역 삽입 확대(3-4)’하는 정책은 기존 정책을 확대하는 단기 정책으로 제안함
 - ‘시청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강화(3-5)’와 ‘시각장애인 및 정보소외 계층을 위한 정보화 교육 실시(3-6)’ 정책은 정보통신과에서 담당하는 단기 정책으로 제안함

〈표 6-5〉 의사소통·정보의 장애 해소를 위한 정책

정책명	담당부서	신규/기존	단/중/장기
공감하고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기반의 확대			
3-1. 대체의사소통 도구 개발 및 보급	장애인복지과	신규	중기
3-2. 수원시 주요 장소에 수어통역사 예약 배치제 확대	장애인복지과	기존 확대	중기
3-3. 수어통역센터 운영	장애인복지과	기존	단기
3-4. 수원 iTV(수원시 공식뉴스채널) 뉴스에 수어 통역 삽입 확대	언론담당관	기존 확대	단기
3-5. 수원시청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강화	정보통신과	기존	단기
3-6. 시각장애인 및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정보화 교육 실시	정보통신과	기존	단기

3-1. 대체의사소통 도구 개발 및 보급

■ 필요성 및 목적

- 공공기관을 비롯한 수원시 내 주요 기관의 특성에 맞는 대체의사소통 관련 책자를 제작·보급하여 장애인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구현하고자 함
- 장애인의 의사소통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여 차별 없는 자유로운 사회활동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 정책 내용

- 대체의사소통 도구 개발
 - 전문가와 함께 상징(symbol)과 글을 이용한 공공기관 및 주요기관별 맞춤 책자 개발
- 대체의사소통 장애 관련 시민 및 공무원 교육
- 대체의사소통 도구 보급 및 홍보
 - 시청, 구청, 행정복지센터, 경찰서,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개발된 책자를 비치하고 보급된 기관은 AAC존(Zone)임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시민들에게 홍보 및 정보 제공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표	AAC 도구 보급 기관	40개소	50개소	60개소	70개소
예산	계	4,000	4,000	4,000	4,000
	국비	0	0	0	0
	도비	0	0	0	0
	시비	4,000	4,000	4,000	4,000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과제구분		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존/신규	단/중/장기	담당부서		담당자	
신규	중기	주무부서	장애인복지과	이서희 주무관	031-228-2214
		협조부서	-	-	-

3-2.	수원시 주요 장소에 수어통역사 예약 배치제 확대
-------------	-----------------------------------

■ 필요성 및 목적

- 현재 수어통역센터에 근무하는 수어통역사의 수는 필요 수요에 비해 현저히 낮아 (2018년 기준 5명) 동행을 예약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 수원시 내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등의 주요 장소에 수어 통역사를 배치하여 복지수준 향상과 수어통역 민원 집중 현상 완화하고자 함

■ 정책 내용

- 수어통역 예약 서비스 확대
 - 수원지역 주요 관공서를 지정하고, 수어통역센터를 통하여 수어통역사와 일정 조정 후 해당 기관 동행 방문
 - 향후 민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예약배치(비상근)제도 확대 실시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표	수어통역 예약 서비스 확대	3명	3명	3명	3명
예산	계	322,132	322,132	322,132	322,132
	국비	-	-	-	-
	도비	322,132	322,132	322,132	322,132
	시비	-	-	-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과제구분		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존/신규	단/중/장기	담당부서	담당자		
기존 확대	중기	주무부서	장애인복지과	허유리 주무관	031-228-2207
		협조부서	-	-	-

3-3.	수어통역센터 운영
-------------	------------------

■ 필요성 및 목적

- 청각/언어 장애인이 수원시 전체 장애인의 14.1%를 차지하고 있으나 수어통역센터에서 수어통역사의 인력이 적어 예약시스템 등의 복지서비스를 온전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수어통역사 5명, 수어통역출장횟수 6,563건(수어통역센터 내부자료)
-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한 수어 통역 및 상담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진출을 도모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 58조2항(장애인복지시설)

■ 정책 내용

- 인력증원 및 역량 강화 교육
 - 전문 분야별 인력 증원 및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청각/언어장애인 상담지도 및 출장 수화통역 서비스 제공
- 수어 교육 및 보급 등 청각/언어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진행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표	수어통역센터 운영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예산	계	338,953	352,511	366,611	381,276
	국비	-	-	-	-
	도비	33,895	35,251	36,661	38,127
	시비	305,058	317,260	329,950	343,149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과제구분		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존/신규	단/중/장기	담당부서	담당자		
기존	단기	주무부서	장애인복지과	허유리 주무관	031-228-2207
		협조부서	-	-	-

3-4.	수원 iTV(수원시 공식뉴스채널) 뉴스에 수어 통역 삽입 확대
-------------	---

■ 필요성 및 목적

- 현재 수원시 정책 홍보 동영상은 수어 통역이 삽입되어있지 않아 시행하는 정책과 관련한 정보를 청각장애인이 접하기 어려움
- 수원 iTV에서 송출하고 있는 수원시 정책 뉴스를 언어/청각 장애인도 원활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뉴스를 제공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 정책 내용

- 수원 iTV 뉴스에 수어 삽입 제작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표	수어통역 뉴스 제작	20건	25건	30건	35건
예산	계	90	120	150	180
	국비	-	-	-	-
	도비	-	-	-	-
	시비	90	120	150	180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과제구분		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존/신규	단/중/장기	담당부서		담당자	
기존 확대	단기	주무부서	언론담당관	신영주 주무관	031-228-2516
		협조부서	-	-	

3-5.	수원시청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강화
-------------	---------------------------

■ 필요성 및 목적

- 장애인이나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정책 내용

- 수원시청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품질인증마크 획득
 - 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견고성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표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 획득	1회	1회	1회	1회
예산	계	2,000	2,000	2,000	2,000
	국비	-	-	-	-
	도비	-	-	-	-
	시비	2,000	2,000	2,000	2,000

주 :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 획득은 유지보수 비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연 200만원 정도 소요됨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과제구분		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존/신규	단/중/장기	담당부서	담당자		
기존	단기	주무부서	정보통신과	이정희 주무관	031-228-3305
		협조부서	-	-	

3-6.	시각장애인 및 정보소외 계층을 위한 정보화 교육 실시
-------------	--------------------------------------

■ 필요성 및 목적

- 수원시 시각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일반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보접근성 및 활용능력을 제고하고자 함
- 정보소외 계층(노인, 장애인, 주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수원시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5조
- 「수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15조

■ 정책 내용

- 시각장애인 대상 컴퓨터 교육 실시
- 정보소외 계층을 위한 정보화 교육 실시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표	정보화교육 수강생 (시각장애인, 정보소외 계층)	550명	550명	550명	550명
	계	45,000	45,000	45,000	45,000
예산	국비	-	-	-	-
	도비	-	-	-	-
	시비	15,000	15,000	15,000	15,000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과제구분		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존/신규	단/중/장기	담당부서		담당자	
기존	단기	주무부서	정보통신과	장혜수 주무관	031-228-2078

4. 차별인식 해소를 위한 정책

- 차별인식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목표는 ‘평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권리의식 제고’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4개의 정책을 제안함
 -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확대 및 내실화(4-1)’는 기존 정책을 확대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과의 중기 정책으로 제안함
 - ‘수원시 스마트-무장애 존(ZONE) 지정(4-2)’는 장애인복지과의 신규·장기 정책으로 제안함
 -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인과 함께하는 걷기대회(4-3)’ 정책은 장애인복지과의 단기 정책으로 제안함

〈표 6-6〉 차별인식 장애 해소를 위한 정책

정책명	담당부서	신규/기존	단/중/장기
평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권리의식 제고			
4-1.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확대(찾아가는 교육) 및 내실화	장애인복지과	기존 확대	중기
4-2. 수원시 스마트-무장애 존(Zone) 지정	장애인복지과	신규	장기
4-3.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인과 함께하는 걷기대회	장애인복지과	기존	단기

4-1.	장애 인식개선 교육확대(찾아가는 교육) 및 내실화
-------------	------------------------------------

■ **필요성 및 목적**

-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에 대한 바른 이해 및 긍정적 태도 형성을 통하여 장애인을 더불어 사는 사회인으로서의 인식을 유도하기 때문에 필수적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015년 12월 29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에 의거하여 장애 인식개선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함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그러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육을 내실화시키는 것도 필요함
 -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2017년 조사한 연구결과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때 실무자들은 ‘장애 인식 개선 교육 강사 섭외’, ‘장애 인식개선 교육 관련 정보 부족’ 등의 어려움이 나타남.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이 형식적이거나 1회성의 대규모 교육으로 끝나는 경우가 다수임
 -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1순위는 ‘교육자료 및 강사 인력풀 공유체계 구축’, 2순위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전담 강사 양성’ 및 ‘교육자료 및 강사 인력풀 공유체계 구축’이 가장 높게 도출됨(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17)

■ **관련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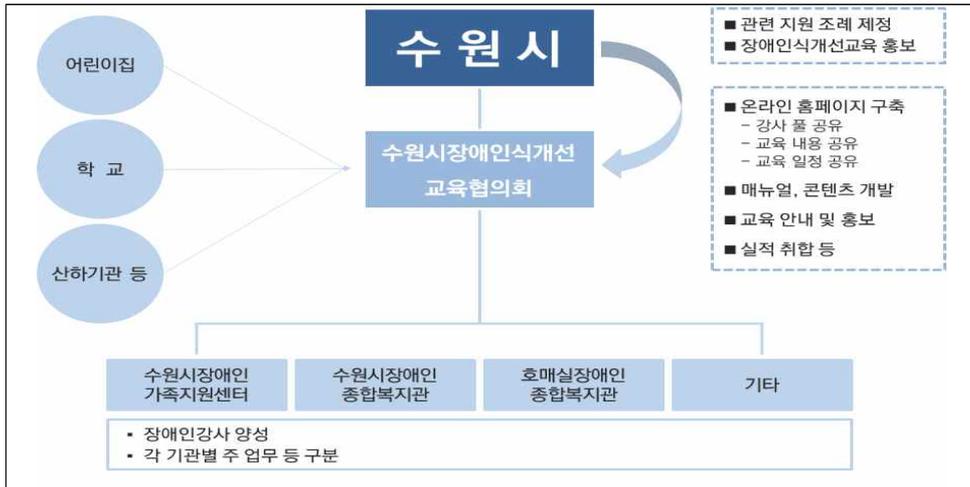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 **정책내용**

-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확대 및 내실화
 - 수원시 장애 인식개선 교육 내실화 관련 조례 제정
 - 수원시 장애 인식개선 교육 협의회 구성
 - 수원시 장애 인식개선 중장기 계획 수립 및 강사 인력풀 공유체계 구축

- 장애유형(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및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 내용 구성 (교육 내용 및 콘텐츠의 다변화)
- 수원시 공무원 및 산하기관 교육 이수 의무화

〈그림 6-6〉 수원시 장애 인식개선교육 협의회(안)



자료 :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2017). 수원시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태조사 보고서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표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확대 및 내실화	10회	10회	10회	10회
예산	계	12,000	12,000	12,000	12,000
	국비	-	-	-	-
	도비	-	-	-	-
	시비	12,000	12,000	12,000	12,000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과제구분		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존/신규	단/중/장	담당부서	담당자		
기존 확대	중기	주무부서	장애인복지과	이서희 주무관	031-228-2214
		협조부서			

4-2.	수원시 스마트-무장애 존(Zone) 지정
-------------	-------------------------------

■ 필요성 및 목적

- 무장애와 관련하여 수원시의 기존 정책과 신규 정책을 체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수원시 스마트시티와 연계하여 수원지역에 무장애 존을 지정하고자 함
- 장애인 및 비장애인, 전 대상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지정함으로써 상호 간의 이해를 돕고 장애인 사회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 제8조(차별금지 등)
-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제5조의 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무시절)

■ 정책 내용

- 무장애 존(zone) 조성 : 무장애 도시를 위한 선도 공간
 -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골목 및 행정동 지정
 - (도입정책) 홍보가 부족한 기존정책 홍보 및 신규 도입 예정인 정책 우선 시행
 - 각 영역별 우선 시행 순위가 높은 정책 위주로 도입
 - 사후점검을 비롯하여 지속적인 관리 필요 및 확대시행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표	스마트-무장애존 운영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예산	계	비예산	200,000천원	200,000천원	200,000천원
	국비	비예산	-	-	-
	도비	비예산	-	-	-
	시비	비예산	200,000천원	200,000천원	200,000천원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과제구분		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존/신규	단/중/장	담당부서	담당자		
신규	장기	주무부서	장애인복지과	이서희 주무관	031-228-2214
					허유리 주무관
		협조부서	정보통신과	김유자 주무관	031-228-3080
			건설정책과	송재호 주무관	031-228-2468
		도시디자인과	최하영 주무관	031-228-3439	

4-3.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인과 함께하는 걷기대회
------	-----------------------------------

■ 필요성 및 목적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걷기대회에 참여하여 장애인을 이해하고 올바른 인식을 성립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유도하고자 함
- 현재 수원시장애인복지관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걷기대회를 통해 인식개선을 확대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제1항

■ 정책 내용

- 연 1회 장애인 및 자원봉사자,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과 함께하는 걷기대회' 진행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표	참여 인원수	1,000명	1,000명	1,000명	1,000명
예산	계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국비	-	-	-	-
	도비	-	-	-	-
	시비	-	-	-	-

주 :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자체 후원금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비예산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과제구분		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존/신규	단/중/장기	담당부서	담당자		
기존	단기	주무부서	장애인복지과	안병옥 주무관	031-228-3212
		협조부서	-	-	

5. 무장애 환경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정책

- 무장애 환경개선을 위한 제도적 정책의 목표는 ‘무장애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및 내실화’이며, 이를 위해 3개의 정책을 제안함
 - 편의시설 및 수원시 중장기 계획, 정책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권영향평가 확대 시행(5-1)’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인권담당관의 기존 확대된 단기 정책임
 - 장애인복지과의 신규이자 단기 정책으로 ‘무장애도시 컨트롤타워 구축 및 1차 계획 모니터링(5-2)’ 정책을 제안함
 - 현재 단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무장애정책의 내실화 및 추진체계를 위하여 「수원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5-3) 제정을 장애인복지과의 신규 정책으로 제안함
 - ‘무장애도시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5-4)’의 정책은 장애인복지과의 신규 정책으로 제안함

〈표 6-7〉 무장애 환경개선을 위한 제도적 정책

정책명	담당부서	신규/기존	단/중/장기
무장애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및 내실화			
5-1. 인권영향평가 확대 시행	인권담당관	기존 확대	단기
5-2. 무장애도시 컨트롤타워 구축 및 1차 계획 모니터링	장애인복지과	신규	단기
5-3. 「수원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 제정	장애인복지과	신규	단기
5-4. 무장애도시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장애인복지과	신규	중기

5-1.	인권영향평가 확대 시행
-------------	---------------------

■ **필요성 및 목적**

- 인권정책의 평가제도이며 시민의 행정참여제도로서의 인권영향평가 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요구가 증가함
- 인권영향평가 확대 시행을 통해 시정 내 인권주류화 실현 및 시민참여 확대하고자 함
- 인권친화적 정책실현을 통해 인권도시를 구현하고자 함

■ **관련 법률 및 조례**

-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제9조(인권영향평가)

■ **정책 내용**

- 정책 수립·시행이 시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부정적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인권영향평가’을 확대 시행하고자 함
 -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은 시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 및 규칙, 시 또는 시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공공건축물 등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100건	100건	100건	100건
	정책 인권영향평가	5건	5건	5건	5건
	공공시설물 인권영향평가	7건	7건	7건	7건
예산	계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국비	-	-	-	-
	도비	-	-	-	-
	시비	-	-	-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과제구분		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존/신규	단/중/장기	담당부서		담당자	
기존 확대	단기	주무부서	인권담당관	심영미 인권담당관	031-228-2666
		협조부서	-	-	-

5-2. 무장애도시 컨트롤타워 구축 및 1차 계획 모니터링

■ 필요성 및 목적

- 현재 국내에서 무장애도시 조성이 강조되면서 관광, 복지, 디자인,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음
- 수원시 또한 무장애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제반환경들이 갖추어져 있으며, 언론담당관, 대중교통과, 도시교통과, 도시디자인과, 장애인복지과 등에서 정책을 시행 중에 있음
- 그러나 이를 컨트롤하는 주체가 부재하다보니 각 부서별로 무장애 정책들이 분절되어 연계되지 못하고 있으며, 도시전반에 필요한 영역과 정책을 개발하지 못 한다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장애인복지과에서 무장애도시 추진을 위해 수립한 1차 중장기 기본계획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함 (<그림 6-2>, <그림 6-3> 참조)
 - 정책의 실효성 및 이행도를 매년 점검하고 2차 중장기 계획수립 시 반영하고자 함

■ 정책 내용

- 무장애도시 관련 컨트롤타워 구축-장애인복지과
- 제1차 무장애도시 추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이행점검 모니터링
 - 1차 계획이라 함은 본 연구인 ‘수원시 무장애도시 추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2020~2023)’을 의미하며, 2023년에는 2차 계획 수립이 필요함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표	무장애도시 관련 컨트롤타워 구축	구축			
	제1차 계획 이행점검 모니터링 실시	연1회	연1회	연1회	연1회
	2차 무장애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수립
예산	계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국비	-	-	-	-
	도비	-	-	-	-
	시비	-	-	-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과제구분		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존/신규	단/중/장기	담당부서	담당자		
신규	단기	주무부서	장애인복지과	이서희 주무관	031-228-2214
		협조부서	-	-	-

5-3.	「수원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 제정
-------------	-----------------------------

■ 필요성 및 목적

- “수원시민이 불편함 없이 평등한 사회참여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도시”를 의미하는 무장애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수원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조례에서 무장애도시의 목적 및 정의, 수원시장의 책무, 협력체계,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무장애도시 추진위원회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 정책 내용

- 「수원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제정
- 무장애도시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수원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등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표	수원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 제정	제정	시행	시행	시행
	계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예산	국비	-	-	-	-
	도비	-	-	-	-
	시비	-	-	-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과제구분		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존/신규	단/중/장기	담당부서	담당자		
신규	단기	주무부서	장애인복지과	이서희 주무관	031-228-2214
		협조부서	-	-	-

5-4.	무장애도시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	-----------------------------

■ 필요성 및 목적

- 수원시 무장애 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과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무장애 도시 조성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
- 무장애도시 실무·인증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전에 관한 사항, 위원회로부터 검토 지시를 받은 사항, 무장애(barrier free)시설 인증 기준과 절차, 신청기관 인증 현지 확인 및 인증 심의에 관한 사항, 무장애 시설 인증 유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의결하고자 함

■ 정책 내용

- 무장애도시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추진위원회명, 구성, 임기, 기능 정립
 - 무장애도시 조성과 관련된 부서(관광과,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등) 포함
 - 행정동 단위별 추진위원회 구성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표	수원시 무장애 도시 조성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및 운영	2회 운영	2회 운영
	계		8,000	8,000	8,000
예산	국비	-	-	-	-
	도비	-	-	-	-
	시비	-	8,000	8,000	8,000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과제구분		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존/신규	단/중/장기	담당부서		담당자	
신규	중기	주무부서	장애인복지과	이서희 주무관	031-228-2214
		협조부서	-	-	-

| 참고문헌 |

〈국문 자료〉

- 경기도(2011),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디자인총괄추진단
- 경기도(2019),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심포지엄
- 관광약자접근성안내센터·제주특별자치도·제주관광공사(2016), 접근가능한 제주관광 이지제주
- 김용득(2018), 탈시설과 지역사회중심 복지서비스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자립과 상호의존을
 융합하는 커뮤니티 케어, 보건사회연구, Vol.38, No.3, pp.492-520
- 김용득·김고은·박광옥·배용호·윤상용·윤재영·이동석·이복실·이은기·허곤(2016), 장애인복지 :
 Inclusive Society를 위한 상상, 서울: EM커뮤니티
- 남승연·이나련·장미(2016),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례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노원구(2018), 노원구 민선7기 70대 과제, 노원구
- 박금식(2014),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관심 필요, 부산여성가족 No.20, pp.1-8
- 배용호(2006), 월간 환경과 조성, 2006, 9월 221호
- 변민수·남용현(2007), Barrier Free에 대한 이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2018),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한국장애인개발원
- 수원시(2017), 수원 시민의 정부 기본계획, 수원시
- _____ (2018), 수원시 2019년 사업설명서, 수원시
-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2017), 수원시 장애 인식개선교육 실태조사,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안상락·한경돈(2017), 유니버설디자인의 기초연구, 조형미디어학, Vol.20, No.1, pp.116-124
- 여성가족부(2009),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발전방향, 여성가족부
- _____ (2015), 여성친화도시 사업가이드, 여성가족부
- _____ (2017),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여성가족부
- 유동철·김경미·김동기·신유리(2013), 복지권 관점에서 본 한국 장애인 거주시설의 개선방안-자립
 과 돌봄 사이, 사회복지연구, Vol.44, No.2, pp.409-436
- 유희정·권순정·강순원·변종석(2017), 아동친화도 지표를 통해서 본 O시 아동친화도시 구축 방향
 성,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Vol.12, No.1, pp.159-192
- 이경아(2008), 공공디자인과 현대도시의 특성 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 Vol.8, No.1,
 pp.123-133
- 이돈일·배지나(2014), 인클루시브디자인 관점에서 본 공공매체 디자인에 관한 연구 : 대구 중구
 근대문화골목(제2코스) 지역 관광안내도를 중심으로, Vol.0, No.45, pp.309-320
- 이양숙·나건(2014), 공공디자인 4.0: 공공디자인의 확장과 진화,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20,

No.2, pp.437-446

이준우(2014), 장애특성을 반영한 도시계획시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순돌·윤희수(2014), WHO 고령친화도시 실현가능성 분석: 서울특별시 조례 분석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Vol.65, pp.109-130

조명희·공미혜(2014), 여성친화도시 사례분석, 여성연구논집, Vol.25, pp.19-47

주한영국문화원(2010), 배려를 통한 디자인 향상, 주한영국문화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지은구·이원주·김민주(2013), 한국형 고령친화도시 점검척도 개발연구, 사회과학연구, Vol.29,

No.3, pp.459-489,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진주시(2014),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 및 무장애시설 인증기준 수립 연구, 진주시

최성호·은덕수(2010), 후쿠오카 나나쿠마선 지하철 공간의 인클루시브 디자인 사례연구, 한국디자
인지식학회, Vol.16, No.0. pp.120-129

최윤진·박병은(2017), 장애인편의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및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상품
문화디자인학회 논문집, Vol.48, pp.119-128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 장기요양제도
개편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장애인개발원(2007), 일본 사이타마 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설계 가이드 북, 한국장애인개발
원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2007), 편의시설인증관련 해외견학보고서: 일본, 프랑스, 독일의 인증관련
기관방문 및 시설견학 중심으로,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홍승애(2012), 아동·청소년친화도시 평가지표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법률〉

「경기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경기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경기도 체육시설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대구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수원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수원시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수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여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진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Accessibility for Ontarians with Disabilities Act, RSO, 2005.

〈영문 자료〉

- Abbott, S., and McConkey, R., (2006) The barriers to social inclusion as perceived by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Vol.10, No.3, pp.275-287
- Brusnahan, L. L. S. Creating Circles of Natural Social Supports: Impact on Adult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Quality of Life, *DADD Online Journal*, pp.166-182
- CABE, (2006) *The Principles of inclusive design*, CABE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9) *National Center on Birth Defects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Division of Human Development and Disability,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City of BOSTON (2017), *Age-friendly Boston action plan 2017*
- Davis, K., (2005) Creating a circle of support, *The Reporter*, Vol.10, No.2, pp.3-5
- Erickson, L. D., Call, V. R. and Brown, R. B., (2012) SOS—satisfied or stuck, why older rural residents stay put: Aging in place or stuck in place in rural Utah, *Rural Sociology*, Vol.77, No.3, pp.408-434.
- Greater London Authority City Hall, (2014) *Accessible london : Achieving an inclusive environment - Supplementary planning guidance*,
- Greenfield, E. A., Scharlach, A. E., Lehning, A. J., Davitt, J. K. and Graham, C. L., (2013) A tale of two community initiatives for promoting aging in plac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national implementation of NORC programs and villages,

- The Gerontologist, Vol.53, No.6, pp.928-938
- Grimmer. K., Kay. D., Foot. J. and Pastakia. K., (2015) Consumer views about aging in place, Clinical interventions in aging, Vol.10. pp.1803-1811
- JUSTIA, (1999) Olmstead v. L. C., 527 U.S. 581, 2019년 1월 검색, <https://supreme.justia.com/cases /federal/us/527/581d>
- Mace, R.L., Hardie, G.J. and Place, J.P., (1996) Accessible environments: toward universal design,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The Center for Universal Design
- Makharadze, T., (2009) Social integration of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Georgia: Lessons from Poland and the USA. International Social Work, Vol.53, No.1, pp.1-13
- Masuda, N., Shimomura, Y., Yamamoto, S., Abe, D., and Sonoyama, M, (1997) Study on Barrier-Free Design in Open Spaces in Public Use Areas
- Persson, H., Åhman, H., Yngling, A. A. and Gulliksen, J., (2015) Universal design, inclusive design, accessible design, design for all: different concepts—one goal? On the concept of accessibility—historical, methodological and philosophical aspects, Universal Access in the Information Society, Vol.14, No.4, pp.505-526
- Pynoos, J., Nishita, C., Cicero, C., and Caraviello, R., (2008) Aging in place, housing, and the law. Elder, Vol.16, pp.77-105
- Resourcing families, (2015) Circles of support : A manual for getting started, Resourcing families
- Siller, J., (1969) The general form of the Disability Factors Scales series(DFS=G), Unpublished manuscript,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Education, New York
- Snow, J. (1994) What's really worth doing and how to do it, Inclusion Press, 1994
- Vasunilashorn. S., Steinman.B.A., Liebig. P.S. and Pynoos. J, (2012), Aging in place : evolution of a research topic whose time has come, Journal of Aging Research, 2012
- WHO, (2001)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WHO
- _____, (2007) Global age friendly cities : A Guide, WHO
- Wiles. J. L., Leibing. A., Guberman. N., Reeve. J. and Allen. R. E. S, (2011) The meaning of "Aging in place" to older people, The gerontologist Vol.52, No.3, pp.357-366
- Williams, L., (2000) Long Term Care after Olmstead v. LC: Will the Potential of the ADA's Integration Mandate Be Achieved. J. Contemp. Health L. & Pol'y, 17, 205

〈참고사이트〉

-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지회 (<http://sw24.co.kr/main/index.html>)
- 경남도민신문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55494>)
- 경인방송 (<http://www.ifm.kr/post/214528>)
- 공유허브 (http://sharehub.kr/sharestory/news_view.do?storySeq=1083)
- 광주광역시 북구청 (<http://bukgu.gwangju.kr/>)
- 국도교통부 통계누리 (<http://stat.molit.go.kr>)
- 굿모닝충청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2833>)
-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26f7959531854690b8cabdc503de2ca6>)
- 노원구청 (<http://www.nowon.kr/dpt/dpt.jsp?mid=661201>)
- 뉴스 와이어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703109>)
- 뉴스 줌 (<http://news.zum.com/articles/23689680>)
- 뉴스스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31206_0009082540)
- 대구관광 (<http://www.wheeltour.or.kr/main>)
- 디자인경기 (<http://design.gg.go.kr>)
- 머니투데이 (news.mt.co.kr/mtview.php?no=2016042611158215167&type=1)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https://opengov.seoul.go.kr/mediahub/8312800>)
- 서울시 포스트, 서울씨 (<https://post.naver.com/myProfile.nhn?memberNo=183099>)
- 소방방재신문 (<http://m.fpn119.co.kr/77613>)
- 수원도시공사 한아름콜센터 (<https://www.suwonudc.co.kr/swcall/mainPage.do>)
- 수원시 (<http://www.suwon.go.kr>)
-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http://suwonudcenter.co.kr/main/index.php>)
-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http://swfamily.or.kr/index.html>)
- 에이블뉴스a (<http://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13235>)
- 에이블뉴스b (<http://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36&NewsCode=001420181120200642860170>)
- 예천뉴스 (<http://m.ycn24.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650>)
- 용인시 (<https://www.yongin.go.kr>)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B%B0%B0%EB%A6%AC%EC%96%B4_%ED)

%94%84%EB%A6%AC)

유니버설디자인센터 (<https://projects.ncsu.edu/ncsu/design/cud>)

유니세프한국위원회 (<https://www.unicef.or.kr>)

일등방송 (http://www.ibnews.or.kr/sub_read.html?uid=45943)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2989035>)

한국장애인뉴스 (<http://www.hkd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601>)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http://27.101.213.4/index.jsp>)

휴게소 가족사랑화장실 (<https://blog.naver.com/v15rala/221307864000>)

Beacon Hill Village (<https://www.beaconhillvillage.org>)

Big-i (<http://www.big-i.jp/hotel/>)

CDC (<https://www.cdc.gov/>)

National Aging In Place Council (<http://www.ageinplace.org>)

National Institute on Aging (<https://www.nia.nih.gov>)

Mayor of London (<https://www.london.gov.uk>)

| 저자 약력 |

한연주

사회복지정책 전공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원(현)

E-mail : joanna1118@suwon.re.kr

주요 논문 및 보고서

「수원시 발달장애인 생활실태조사 연구」(2016,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장애인정책 5개년 기본계획 연구」(2017, 수원시)

「수원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2017,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장애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모형 개발 연구」(2018,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방안 연구」(2019, 수원시정연구원)

